



2022.10.

국회예산정책처 | 예산안 분석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Analysis by Committee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예산안분석시리즈 II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총괄 | 최병권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서세욱 사업평가심의관
이현종 예산분석총괄과장
박주연 산업예산분석과장
김현중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전용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김애선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유다연 예산분석관
정성영 예산분석관

지원 | 강숙자 행정실무원
최희현 자료분석지원요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의 :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 02) 6788-3771 | s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예산안분석시리즈 II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환경노동위원회 】

2022. 10.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22. 10. 21.)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지난 9월 2일 총수입 625.9조원, 총지출 639.0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코로나로 인해 확장된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 지출 재구조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년 본예산과 비교하여 GDP 대비 관리 재정수지비율은 -4.4%에서 -2.6%로, 국가채무비율은 50%에서 49.8%로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고용지표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가재정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예산안 심의기관인 국회는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거나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사업 등에 대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부문으로 예산을 재배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괄 분석」 3권, 「위원회별 분석」 12권,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3권, 「성인지 예산서 분석」 1권 등 기존 4개 분석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1권 및 「예산안 주요 사업 평가」 1권 등 2개 분석을 추가하여 총 21권을 발간하였습니다.

「총괄 분석」에서는 재정건전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중심으로 재정총량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면서,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등 지원 사업, 국방 분야 부문별 예산안 분석,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업 등 주요 정책 사업과 상임위 결산시정요구사항 및 정부성과평가와 예산안의 연계, 임대형민자사업(BTL)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개별사업 단위로 각 부처의 주요 증액 또는 현안 사업에 대한 효과성·필요성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에서는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금융공공기관 정책금융 예산안 분석 등 주요 내용과 금융·환경분야 등의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안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성인지 대상사업으로서의 적합성과 성과지표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았으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대상사업들이 실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예산안 주요 사업 평가」에서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국회 심사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예·결산 심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환경부]

I. 예산안 개요

1. 현 황	5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1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3

II. 주요 현안 분석

1.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사업	16
1-1.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실제 수요를 고려한 예산 규모 조정 필요	17
1-2.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의 집행 부진 문제를 고려한 적정 규모 예산 편성 필요	23
2.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등	27
3. 무공해차 보급 사업의 계획물량의 적정성 및 예산의 집행가능성 검토 필요	39

III. 개별 사업 분석

1. 녹색신산업 사업화 지원 사업의 신규 추진 필요성 검토	45
2.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투자여력을 고려하여 확대된 펀드 조성 규모 검토 필요	52
3.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 관련 사업 분석	56
3-1.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의 계획 구체화 및 면밀한 사업 관리 필요	58
3-2.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의 계획 구체화 필요	64
4. 유기성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 시범사업의 실시설계 추진을 위한 면밀한 사업 관리 필요 등	70
5.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 관리 강화 및 수돗물 안전 관련 대책 이행 철저 필요	78
6. 환경책임투자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시 녹색채권 발행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추계 필요 등	84
7.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면밀한 사업 관리 필요	94
8.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사업의 예산 규모 및 집행가능성 검토 필요 ..	101
9. 국립공원 기반시설 전면개선 사업 대상 선정기준 및 향후 추진계획의 적절성 검토 필요	106
10.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 사업의 적정 예산 편성 필요	113
11. 입찰 담합 조정결정금 수익을 고려한 4대강 사업 부채 상환계획 마련 방안 검토 필요	119

[고용노동부]

I. 예산안 개요

1. 현 황	129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34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36

II. 주요 현안 분석

1.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분석	139
1-1. 조기취업성공수당 편성 재검토 필요	141
1-2.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개편사업 효과를 고려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필요	151
2. 직업안정기관운영 사업 신규 증액사업 분석	155
2-1. 통합센터 구축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157
2-2. 업종별 스마트 취업지원센터 타 사업 연계를 통한 효과적인 운영 필요	162

III. 개별 사업 분석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실제 채용실적을 반영한 지원 인원 조정 필요	166
2.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개편 사업 검토	170
2-1. 청년일경험지원사업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172
2-2. 청년도전지원사업 기관 인센티브 감액 필요	177
3. 내일배움카드 사업 집행실적을 감안한 사업규모 조정 필요	181
3-1.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사업 집행실적을 고려한 목표인원 적정성 검토 및 특별훈련수당 지급요건 강화 필요	182
3-2.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 부진한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사업 규모 축소 필요	189
4. 고령자인재은행 타부처 사업과의 중복문제 및 성과 부진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필요	192
5.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차별화된 사업운영계획 마련 및 국고보조비율 적정성 검토 필요	197
6. 기업직업훈련카드 사업 시범사업 효과를 면밀히 검토 후 사업 추진 필요	203
7.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신규사업 분석	208
7-1. 스마트 안전장비 발굴·확산 사업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210
7-2. 휴게시설 설치지원 단년도 한시사업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214
8.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운영방안 재검토 필요	220

9.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227
10. 노동전환지원금 사업 저조한 수요를 감안하여 예산 감액 필요	231

[기상청]

I. 예산안 개요

1. 현 황	237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38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39

II. 개별 사업 분석

1.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신축 사업 지연에 따른 예산 조정 검토 필요 ..	241
2. 도로기상관측망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성과 환류체계 마련 필요 및 장비별 단가 증액에 따른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248
3. 단기 기상예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254
4.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합리적 목표 설정 및 사용료 인상 시기 구체화 필요	261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1

현황

가. 총수입 · 총지출

환경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은 일반회계, 4개 특별회계(환경개선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및 5개 기금(한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구성된다.

환경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2조 3,665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729억원(7.9%)이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53억원, 환경개선특별회계 1조 2,542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7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743억원, 한강수계관리기금 5,361억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391억원, 금강수계관리기금 1,347억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980억원, 석면피해구제기금 224억원이다.

[2023년도 예산안 환경부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1,903,049	1,168,696	1,168,696	1,336,133	167,437	14.3
- 일반회계	6,881	3,185	3,185	5,278	2,093	65.7
- 환경개선특별회계	1,732,871	1,150,452	1,150,452	1,254,183	103,731	9.0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213	500	500	575	75	15.0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3,223	1,749	1,749	1,749	0	0.0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48,861	12,810	12,810	74,348	61,538	480.4
기 금	991,601	1,024,868	1,024,868	1,030,358	5,490	0.5
- 한강수계관리기금	513,369	530,350	530,350	536,112	5,762	1.1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31,649	252,520	252,520	239,054	△13,466	△5.3
- 금강수계관리기금	132,551	131,993	131,993	134,704	2,711	2.1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98,209	95,070	95,070	98,045	2,975	3.1
- 석면피해구제기금	15,823	14,935	14,935	22,443	7,508	50.3
합 계	2,894,650	2,193,564	2,193,564	2,366,491	172,927	7.9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환경부

환경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12조 9,023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7,204억원(5.9%)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1조 6,519억원, 환경개선특별회계 5조 3,971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85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조 4,780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조 2,808억원, 한강수계관리기금 5,635억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372억원, 금강수계관리기금 1,308억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914억원, 석면피해구제기금 331억원이다.

[2023년도 예산안 환경부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9,767,519	11,570,045	11,158,608	11,846,292	687,684	6.2
- 일반회계	829,750	1,621,743	1,609,134	1,651,939	42,805	2.7
- 환경개선특별회계	6,773,190	6,422,845	6,258,137	5,397,057	△861,080	△13.8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3,979	42,563	42,563	38,495	△4,068	△9.6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46,918	617,923	617,923	1,477,968	860,045	139.2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573,682	2,864,971	2,630,851	3,280,833	649,982	24.7
기 금	1,000,247	1,014,051	1,023,303	1,056,016	32,713	3.2
- 한강수계관리기금	539,858	529,973	529,973	563,532	33,559	6.3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38,263	244,368	244,368	237,213	△7,155	△2.9
- 금강수계관리기금	116,141	126,905	126,905	130,807	3,902	3.1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79,992	89,137	89,137	91,396	2,259	2.5
- 석면피해구제기금	25,993	23,668	32,920	33,068	148	0.4
합 계	10,767,766	12,584,096	12,181,911	12,902,308	720,397	5.9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환경부

나. 세입·세출예산안

환경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4개 특별회계(환경개선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된다.

환경부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6조 8,141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544억원(0.8%)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3억원, 환경개선특별회계 6조 7,321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7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743억원이다.

[2023년도 환경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6,881	3,185	3,185	5,278	2,093	65.7
환경개선특별회계	7,499,150	6,906,170	6,741,462	6,732,132	△9,330	△0.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213	500	500	575	75	15.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3,223	1,749	1,749	1,749	0	0.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48,861	12,810	12,810	74,348	61,538	480.4
합 계	7,669,328	6,924,414	6,759,706	6,814,082	54,376	0.8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환경부

환경부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18조 6,493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조 4,662억원(8.5%)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조 1,199억원, 환경개선특별회계 6조 7,321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85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조 4,780억원, 에너지및지원사업특별회계 3조 2,808억원이다.

[2023년도 환경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6,174,609	7,377,606	7,150,289	7,119,888	△30,401	△0.4
환경개선특별회계	7,209,401	6,906,170	6,741,462	6,732,132	△9,330	△0.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3,979	42,563	42,563	38,495	△4,068	△9.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46,918	617,923	617,923	1,477,968	860,045	139.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573,682	2,864,971	2,630,851	3,280,833	649,982	24.7
합 계	15,548,589	17,809,233	17,183,088	18,649,316	1,466,228	8.5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환경부

다. 기금운용계획안

환경부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한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구성된다.

환경부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조 3,073억원으로 전년 수정계획안 대비 243억원(1.9%) 증가하였다. 기금별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6,825억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482억원, 금강수계관리기금 1,816억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1,510억원, 석면피해구제기금 439억원이다.

[2023년도 환경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한강수계관리기금	681,736	676,338	676,338	682,477	6,139	0.9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44,126	253,520	253,520	248,206	△5,314	△2.1
금강수계관리기금	161,803	173,849	173,849	181,648	7,799	4.5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131,765	142,130	142,130	151,038	8,908	6.3
석면피해구제기금	40,115	32,119	37,119	43,894	6,775	18.2
합 계	1,259,545	1,277,956	1,282,956	1,307,263	24,307	1.9

주: 1) 기금은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1. 총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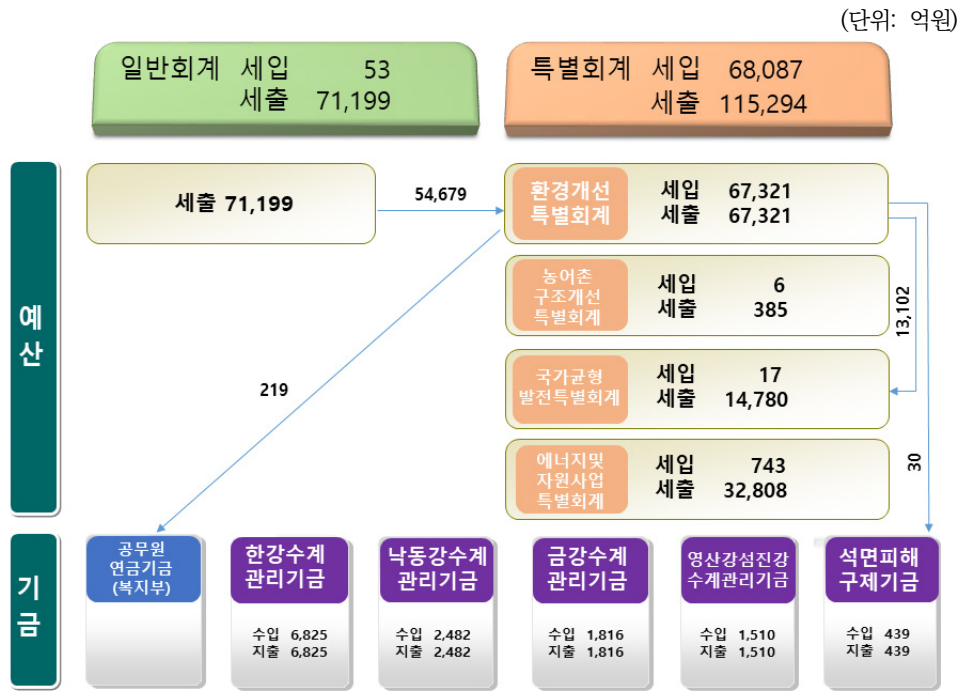
자료: 환경부

라. 재정구조

2023년도 예산안의 환경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의 경우 환경개선특별회계로 5조 4,679억원이 전출된다.

환경개선특별회계의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1조 3,102억원,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30억원, 공무원연금기금으로 219억원이 전출된다.



주: 총계 기준
자료: 환경부

2023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홍수·도시침수 등 재해·재난·사고예방,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및 수질개선을 위한 물환경·수자원 부문 예산이 확대(2022년 5조 8,943억원→2023년 5조 9,431억원)되었고, ② 무공해차 보급 확산과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환경보건·화학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한 기후대기·환경안전 부문 예산이 확대(2022년 3조 9,004억원→2023년 4조 4,943억원)되었으며, ③ 생태계 보전·복원, 야생동물 질병 관리체계 강화 등을 위한 자연환경 부문 예산 또한 일부 확대(2022년 8,318억원→2023년 9,417억원) 되었으나, ④ 폐기물 발생 최소화와 순환경제로의 전환, 녹색산업 육성 및 녹색금융 활성화 등을 위한 자원순환·환경경제 부문 예산은 일부 감액(2022년 1조 523억원→2023년 1조 242억원) 되었다.

2023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환경부는 2023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 시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4등급 경유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나, 예산상 계획 물량과 실제 수요조사 결과에 차이가 있고 사업 참여유인 또한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수요에 맞춰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와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등 충분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은 수요 부족으로 인한 예산의 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여건 및 집행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급 계획물량을 현실화하고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환경부는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지원 받는 업체가 온실가스 배출현황이나 특성에 맞춰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높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및 저탄소 청정

연료 전환 지원 사업 추진이 일부 지연되고 예산의 실집행 실적이 다소 부진한 측면이 있으므로, 환경부는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무공해차 보급 사업은 원자재 수급문제로 인한 공급 차질과 실제 수요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예산의 집행 및 실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환경부는 2023년 예산안에 편성된 예산 및 물량의 적정성 및 집행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환경부는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녹색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녹색신산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신규 내역 사업을 추진하는 필요성 및 실효성을 검토하고, 기존 사업화 지원 사업 내용을 정비하여 지원 분야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의 2023년도 신규사업은 총 5개 사업, 128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은 상습침수 지역인 서울 도림천 일대의 홍수예방을 위해 도림천·대방천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대심도 지하방수로 를 설치하여 홍수량을 분산시키는 사업이다.

환경개선특별회계 사업 중 물·대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기자재 국산화 기술개발사업(R&D)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물·대기 환경관리 핵심품목에 대해 자체 생산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환경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2개)	금호강 명품하천 조성	2,000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	3,031
환경개선 특별회계 (3개)	물·대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기자재 국산화 기술개발사업(R&D)	5,000
	생태계기반탄소흡수원조성·관리기술개발사업 (R&D)	2,055
	범부처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사업(R&D)	700
합 계		12,786

자료: 환경부

2023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국가하천정비, 하수처리장 설치, 무공해차 보급사업 및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등이 있다.

① 국가하천정비사업은 집중호우 등 대규모 홍수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제방 정비 등 치수 안전도 확보를 위하여 증액되었고, ②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은 생활하수 적정 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확충 및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2023년도 준공소요 등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③ 무공해차 보급사업과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은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 및 충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증액되었다.

[환경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2 ¹⁾		2023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4개)	국가하천정비	410,028	410,028	501,030	91,002	22.2
	충주댐치수능력증대사업	15,000	15,000	23,986	8,986	59.9
	댐 안전성강화(Ⅱ단계) 사업	12,798	12,798	17,979	5,181	40.5
	댐-하천 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 구축(정보화)	634	634	5,370	4,736	747.0
환경개선 특별회계 (22개)	하수처리장 설치	496,418	496,418	741,773	245,355	49.4
	미래환경산업육성용자	211,444	211,444	278,893	67,449	31.9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225,694	225,681	286,419	60,725	26.9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	36,644	36,388	79,730	43,086	117.6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선별 인프라 확충	48,096	48,096	73,691	25,595	53.2
	수자원/수재해 위성 개발 (R&D)	7,500	7,500	25,473	17,973	239.6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29,449	29,449	46,861	17,412	59.1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운영	38,361	24,361	53,823	15,462	40.3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71,181	70,980	84,856	13,675	19.2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134,962	134,962	146,771	11,809	8.7
	한국환경공단 출연	177,964	177,964	188,613	10,649	6.0
	탄소중립그린 국제개발협력 (ODA)	4,478	4,478	12,357	7,879	175.9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	4,200	4,200	9,723	5,523	131.5
	기후위기대응 홍수방어능력 혁신기술개발(R&D)	3,000	3,000	8,510	5,510	183.7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 스화 시설 설치 시범사업	1,200	1,200	6,699	5,499	458.3
	자원에너지 회수형 하폐수처 리 공정기술개발사업(R&D)	2,800	2,800	7,175	4,375	156.3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 저감·관리 기술개발(R&D)	5,100	5,100	9,200	4,100	80.4
	미래 발생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 기술개발사업(R&D)	4,100	4,100	8,050	3,950	96.3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2 ¹⁾		2023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가뭄대응 물관리 혁신기술 개발(R&D)	2,800	2,800	5,944	3,144	112.3
	화학사고 예측·예방 고도화 기술개발사업(R&D)	2,226	2,226	4,974	2,748	123.5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R&D)	4,492	4,492	6,730	2,238	49.8
	환경분쟁조정정보화시스템운영(정보화)	53	53	83	30	56.6
에너지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개)	무공해차 보급사업	2,407,761	2,182,761	2,740,224	332,463	13.8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420,244	420,244	518,856	98,612	23.5
국가균형 발전특별 회계 (2개)	노후상수도정비(제주)	11,483	11,483	17,764	6,281	54.7
	하수도시설 설치(제주)	400	400	1,040	640	160.0
한강수계 관리기금 (3개)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19,987	19,987	34,049	14,062	70.4
	환경기초시설설치	64,397	64,397	75,864	11,467	17.8
	비점오염저감사업	5,212	5,212	13,796	8,584	164.7
금강수계 관리기금 (1개)	비점오염 저감사업	2,965	2,965	4,393	1,428	48.2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 기금 (1개)	비점오염 저감사업	1,645	1,645	2,246	601	36.5
석면피해 구제기금 (1개)	석면피해구제급여	18,185	27,437	27,669	9,484	52.2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환경부

1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사업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¹⁾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²⁾ 등에 따라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건설기계의 엔진교체와 저감장치 부착 등 도로 및 비도로 이동오염원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내역사업을 비롯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³⁾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⁴⁾ 등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검사 관리 및 자동차배출가스관리시스템 운영 사업 등 수송 분야에 관한 종합적인 대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을 통해 대기질 수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633-302

2)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생략.

1의2.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2. 생략.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4.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

5.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① 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9. 생략

10.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에 필요한 시설비의 지원

4)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의 배출가스에 관한 자료의 수집·관리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계한 전산망(이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재편 등을 위해 감액 조정한 2022년 추경예산 4,645억 7,700만원 대비 400억 4,200만원(8.6%) 증액된 5,046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640,553	509,464	464,577	504,619	40,042	8.6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환경부

1-1.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실제 수요를 고려한 예산 규모 조정 필요

가. 현 황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사업⁵⁾의 내역사업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자동차, 사업장 등 배출원별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을 통해 대기질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환경부는 동 내역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이동오염원(도로 및 비도로)의 배출가스 저감을 목적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DPF) 부착, PM-NO_x 동시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의 엔진교체와 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 예산안부터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등 조기폐차 사업의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동 내역사업의 예산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4334억 4,800만원 대비 370억 3,200만원(8.5%) 증액된 4,70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다.

5)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633-302

[2023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640,553	509,464	464,577	504,619	40,042	8.6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617,357	478,198	433,448	470,480	37,032	8.5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환경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4등급 경유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나, 예산상 계획 물량과 실제 수요조사 결과에 차이가 있고 사업 참여유인 또한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수요에 맞춰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와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등 충분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2022년까지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덤프, 펌프, 믹서트럭)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하지만 2022년 8월 17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⁶⁾이 개정(2023.1.1. 시행)됨에 따라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⁷⁾와 지게차, 굴착기 등 비도로용 건설기계가 조기폐차 등 예산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는바, 환경부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연저감장치(DPF)가

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①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22. 8. 17.>

1. 자동차: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중 별표 17 제1호마목부터 아목까지 및 제2호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2. 건설기계: 별표 17 제4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7) (5등급 경유차) '05.12.31. 이전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Euro3 이하)

(4등급 경유차) '06.1.1.~'09.8.31.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Euro4)

미장착된 4등급 경유차와 비도로용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한편, 5등급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을 2023년까지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⁸⁾

[2023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내역사업 지원 현황(예시)]

(단위: 억원)

구 분			2022 (추경)	2023 (예산안)	지원 물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소계	3,360	3,986.5	
		5등급 ¹⁾	3,360	2,000	· 350,000대 → 250,000대
		4등급	-	1,800	· 90,000대('23년 신규)
		비도로용 건설기계	-	186.5	· 10,000대('23년 신규)
	DPF 부착		330	247.5	· 20,000대 → 15,000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443.5	396	· 4,480대 → 4,000대
	DPF		6.6	3.3	· 100대 → 50대
LPG 전환	화물차		150	50 ²⁾	· 15,000대 → 10,000대

주: 1)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펌프·믹서트럭)를 포함한 수치임

2) 화물차 LPG 전환 지원 사업은 지원 단가가 2022년 추경예산 기준 200만원에서 2023년도 예산안 기준 100만원으로 감액 조정되었음

자료: 환경부

환경부가 제출한 배출가스 등급별 자동차 등록현황('22.7월)에 따르면, 전국 경유차 총 986만대 중 5등급 차량은 약 114만대, 4등급 차량은 약 116만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전체 4~5등급 경유차 230만대 중 매연저감장치(DPF)가 장착되지 않은 채 실제로 운행되고 있는 차량(보험가입 기준)은 5등급 약 48만대, 4등급 약 84만대로 총 132만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등급별 배출가스 기준(참고)]

배출가스 등급	적용 기준	해당 조문 (별표17 제2호 각목)	배출기준 적용 시기
5등급	Euro3 이전	가~라 목	~'05.12.31.
4등급	Euro4	마 목	'06.1.1.~'09.8.31.
3등급	Euro5 이후	바~아 목	'09.9.1.~

자료: 환경부

8) 한편, 환경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서 경유차 대상 저감장치부착(DPF) 지원 사업과 건설기계 대상 DPF 부착 및 엔진교체 사업,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등은 사업 여건 및 수요 현황을 고려하여 지원 물량을 축소 편성하였다.

[4~5등급 경유차 상세현황]

(단위: 대)

등급	지역	합계	매연저감장치 등 장착	미장착		
				계	보험가입	보험미가입
4·5등급 합계		2,300,406	673,421	1,626,985	1,315,642	311,343
5등급	계	1,140,167	363,488	776,679	479,894	296,785
	수도권	397,567	216,973	180,594	46,357	134,237
	수도권 외	742,600	146,515	596,085	433,537	162,548
4등급	계	1,160,239	309,933	850,306	835,748	14,558
	수도권	441,774	116,460	325,314	318,957	6,357
	수도권 외	718,465	193,473	524,992	516,791	8,201

자료: 환경부

4등급 경유차의 경우, 대기 중 직접 배출 및 2차 생성⁹⁾을 포함한 초미세먼지가 5등급 경유차의 절반 수준으로 배출되나,¹⁰⁾ 온실가스는 5등급 차량과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되는바, 환경부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대기오염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4만대 4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는 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교체 등 제한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던 노후 건설기계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에 대해서도 2023년부터는 조기폐차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재편하였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통해 조기폐차 대상 확대를 추진하면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4등급 경유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 대상 조기폐차 사업의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등급 경유차 지원 물량은 9만대, 비도로용 건설기계 지원 물량은 1만대 등 총 10만대를 신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9)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이 대기 중에서 광화학반응하여 생성되는 초미세먼지를 의미한다.

10) 환경부에 따르면, 5등급 경유차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1대당 연간 8.7kg, 4등급 경유차는 4.1kg, 3등급 경유차는 1.6kg으로 제시하고 있다.

[2022년 및 2023년 조기폐차 지원 단가 및 대수]

(단위: 천원, 대)

구분	년도	지원 단가 (국비+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원율	지원대수
5등급 경유차	'22년	1,600	960	640	60%	340,000
	'23년	1,600	800	800	50%	250,000
4등급 경유차	'23년	4,000	2,000	2,000	50%	90,000
비도로용 건설기계	'23년	3,730	1,865	1,865	50%	10,000

자료: 환경부

그러나 실제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가 제출한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참여요청 대수는 64,210대, 비도로용 건설기계 참여요청 대수는 4,494대로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지원 물량과는 차이가 있는 실정이다.¹¹⁾

[2023년 4등급 경유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단가 및 대수]

(단위: 대, 천원, %)

구분		4등급 경유차 운행대수 ¹⁾	시범사업 참여요청 대수 및 예산(국비)			
			신청대수	지원단가	전체예산	운행대수 대비 신청비율
4등급 경유차	총계	844,493	64,210	2,000	128,420,000	7.6
	수도권	323,846	32,200	2,000	64,400,000	9.9
	수도권 외	520,647	32,010	2,000	64,020,000	6.1
구분		건설기계 (‘04 이전) 운행대수	시범사업 참여요청 대수 및 예산(국비)			
			신청대수	지원단가	전체예산	운행대수 대비 신청비율
건설기계 (지게차, 굴삭기)	총계	85,854	4,494	1,865	8,381,310	5.2
	수도권	24,965	2,420	1,865	4,513,300	9.7
	수도권 외	60,889	2,074	1,865	3,868,010	3.4

주: 1) 4등급 경유차 운행대수는 2022년 5월 기준

자료: 환경부

특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확대되었으나, 4등급 경유차에 대해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

11)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추경예산을 통해 60%로 상향되었던 국고보조율이 2023년부터 50%로 조정됨에 따라 지방비 확보가 어려운 지자체들이 신규 추진하는 4등급 조기폐차 물량 확대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조¹²⁾ 등에 근거하여 5등급 차량에 적용되는 운행 제한을 비롯한 별도의 규제 조항이나 조기폐차 의무사항이 없는 상황이고, 조기폐차 사업에 대한 신청 또한 4등급 경유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 소유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환경부는 이동오염원을 대상으로 한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도 예산안을 통해 조기폐차 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4등급 경유차와 비도로용 건설기계 소유자가 조기폐차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2023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4등급 경유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 대상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예산의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수요에 맞도록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와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등 충분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경유자동차의 운행 제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지역 및 운행 제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
2.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특정경유자동차
3. 제2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1-2.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의 집행 부진 문제를 고려한 적정 규모 예산 편성 필요

가. 현 황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사업¹³⁾의 내역사업인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을 통해 도심 건설현장의 경유굴착기 배출가스 및 소음저감을 목적으로 전기굴착기 보급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예산안에 편성된 동 내역사업 예산은 20억원으로 2022년 제2회 추경예산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되었다.

[2023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640,553	509,464	464,577	504,619	40,042	8.6
전기굴착기 보급	2,200	2,000	2,000	2,000	0	0.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은 수요 부족으로 인한 예산의 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여건 및 집행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급 계획물량을 현실화하고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기굴착기 보급 내역사업을 신규 추진하면서 총 100대의 전기굴착기를 시범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예산 10억원을 편성하였고, 2021년에는 보급 물량을 확대하여 400대를 대상으로 총 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동 내역사업은 시범사업 추진 초기부터 전기굴착기에 대한 실수요 부족으로 인해 예산의 실질적 집행 실적이 부진하였는바,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22년 예산에서는 보급 계획물량을 200대로 감액 조정하였으며, 2023년도 예산안에서도 올해와 동일한 규모로 물량 및 예산을 편성하였다.

13)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633-302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목적	- 국민생활과 밀접한 도심 건설현장의 경유굴착기 배출가스 및 소음저감을 위한 전기굴착기 보급 지원				
사업 기간	- 2020 ~ 계속				
사업 주체	- (시행주체/실집행주체) 환경부, 지자체				
지원형태	- (지원조건) 전기굴착기 신규 구매·등록 - (보조율) 국비 50%, 지방비 50%				
사업 규모	(단위: 대,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안)
	예산	1,000	4,000	2,000	2,000
	물량	100	400	200	200

자료: 환경부

비록 환경부가 2022년 동 내역사업의 예산을 2021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액 조정하였으나, 8월말 기준 부처 단위 집행률이 41%, 사업시행주체인 지자체의 실집행률이 20.7%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으로 남은 기간 동안 충분한 수요가 확보되지 못할 경우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2020~2022년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환경부				지자체						
	본예산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C)	집행액 (D)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D/C)
2020	-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	600	300	10.0
2021	4,000	2,200	2,200	100.0	2,200	600	2,800	298	398	2,104	10.6
2022	2,000	2,000	820	41.0	820	398	1,218	252	미정	미정	20.7

주: 2022년은 8월말 기준

자료: 환경부

이에 더해,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의 연도별 보급 계획물량(지자체 교부액 기준) 대비 실적을 확인한 결과, 2020년의 경우 전체 계획물량 100대 중 12대가 지원되었고, 2021년은 조정된 계획물량과 전년도 이월물량을 합한 전체 계획물량 280대

중 41대(14.6%)만이 지원되었으며, 2022년에는 8월말 기준 전체 계획물량 122대 중 28대(23.0%)가 지원되는 등 실제 보급 실적 또한 부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0~2022년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 계획물량 대비 보급 실적]

(단위: 대)

구분	2020		2021				2022			
	계획	실집행	계획		전년도 이월	실집행	계획		전년도 이월	실집행
	본예산		본예산	조정			본예산	조정		
합계	100	12	400	220	60	41	200	82	40	28
서울	0	0	35	35	0	1	5	0	2	2
울산	0	0	15	5	0	0	5	4	0	4
경기	10	4	45	10	2	8	31	10	0	5
강원	0	0	10	10	0	2	5	4	4	1
충북	0	0	0	0	0	0	10	5	0	0
충남	0	0	45	5	0	2	18	10	0	3
전북	90	8	125	53	58	23	69	20	21	8
전남	0	0	0	0	0	0	14	0	0	0
경북	0	0	35	35	0	1	18	10	5	4
경남	0	0	65	65	0	3	25	19	8	1
제주	0	0	25	2	0	1	0	0	0	0

주: 2022년은 8월말 기준

자료: 환경부

이와 같이, 동 내역사업의 경우, 전기굴착기의 상용화 및 보급이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있어 ① 실제 전기굴착기의 성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② 지금까지 상용화된 전기굴착기 종류가 제한적¹⁴⁾이고 소규모 작업장에서 주로 활용되어 건설 분야 등 다양한 수요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구매의사를 밝혔던 실사용자들이 구매를 보류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실수요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전기굴착기 사업에 대한 실제 수요 현황이나 사업 추진여건, 예산 집행 현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2023년 예산안에서도

14) 환경부는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2020년에는 1개사에서 2종(1톤, 3.5톤)의 전기굴착기가 생산되었으나, 2021년 11월 3개사·3종(1톤, 1.9톤, 3.5톤)으로 확대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다양한 현장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와 동일한 규모로 계획물량 및 예산을 편성한 측면이 있다.¹⁵⁾

따라서 환경부는 전기굴착기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 현황, 사업 추진여건, 예산 집행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급 계획물량을 현실화하고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내역사업이 굴착기 등 비도로용 건설기계로부터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점에서 사업 효과성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¹⁶⁾ 2020년 추경예산을 통해 동 내역사업을 신규 추진한 이래 지원 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계속사업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사업의 추진방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¹⁷⁾

15) 환경부는 2023년 예산안을 통해 노후 경유굴착기의 조기폐차 지원 사업이 신설되고, 대형제작사에서 전기굴착기 출시를 계획하고 있어 상용화 장비 종류가 늘어나 전기굴착기 보급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6) 환경부에 따르면, 소형(6톤 미만) 노후 굴착기 1대를 최신 경유굴착기로 전환하였을 때(△149.3kg) 보다 전기굴착기로 전환하였을 때(△228.9kg) 연간 질소산화물(NOx) 감축 효과가 1.53배 더 높다고 설명하였다.

[굴착기 전환 시 미세먼지 감축 효과]

(단위: kg/대·년)				
구 분	PM	SOx	NOx	VOC
Tier1 → Stage-5(경유)	15.9	0.0	149.3	35.0
Tier1 → 전기	16.0	0.1	228.9	36.8

자료: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의 2019년 통계자료

17) 환경부는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을 위한 기술·정책방향 정립 연구」 용역(‘22.8.~12.)을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무공해건설기계의 보급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며,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 등 지원사업의 정책방향 수립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가. 현 황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¹⁾²⁾은 기후변화로 위협받는 지구와 인류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목적으로 세계 각국이 비준한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한 제도운영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도 예산안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1,220억 5,000만원 대비 396억 500만원(32.4%) 증액된 1,616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	51,100	122,050	122,050	161,655	39,605	32.4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	43,446	116,081	116,081	148,231	32,150	27.7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5,959	4,961	4,961	8,983	4,022	81.1

주: 1) 기금은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 내역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³⁾ 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는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또는 사업장)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설비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기후대응기금 6131-600

2) 기후대응기금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서, 기후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계획안 심의는 기획재정부위원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3) 배출권거래제는 다년간 계획기간 안에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서는 사업장 간의 거래를 허용하는 등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제도이다.

의 설치비용을 국고로 지원(내내역사업명: 온실가스 감축 통합 지원)하고 있다.⁴⁾

특히, 환경부는 2020년 12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684개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 총 26억 800만톤을 할당하였는바, ①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등에 따라 제3차 계획기간 동안 온실가스 감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과, ②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이 기존 3%에서 10%로 상향 조정되는 등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23년도 예산안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 대상 및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다.

또한, 환경부는 2022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통합 지원 내내역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열공급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사용하는 연료를 유연탄에서 저탄소 청정연료(LNG, 바이오매스 등)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설비 전환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예산안에서는 지원 단가를 조정(200억원 → 162.5억원)하고 개소수(1개소 → 2개소)를 확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 내역사업의 2023년 예산안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안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 87,902백만원 - 민간보조(73개소): 80,402백만원 - 지자체 보조(15개소): 7,500백만원	◦ 122,592백만원 - 민간보조(115,092백만원): 113개소 × 930백만원 × 보조율* = 105,092백만원 * (국고보조율)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대기업 30% - 지자체 보조(7,500백만원): 15 개소 × 1,000백만원 × 50% = 7,500백만원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 10,000백만원 - 1개소 × 20,000백만원 × 50%	◦ 16,250백만원 - 2개소 × 16,250백만원 × 50%

자료: 환경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한 감축설비 설치 지원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업 유형에 따라 대기업 30%,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70%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감축설비 설치 지원 사업은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율은 50%이다.

나. 분석의견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환경부는 동 사업을 통해 지원 받는 업체가 온실가스 배출현황이나 특성에 맞춰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높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21.12)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사업에서 실제로 지원하는 설비 유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감축설비 유형에는 탄소무배출설비, 폐에너지 회수·이용설비, 폐기물 열분해시설, 탄소포집설비, 연료 전환 설비, 전처리장치, 인버터 및 인버터제어형전동기, 고효율기기 등이 있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설비 유형]

지원 설비	지원 범위
1. 탄소무배출설비	◦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탄소무배출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설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2. 폐에너지 회수·이용 설비	◦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또는 폐압)을 회수·이용하여 열 또는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 폐열회수 보일러, 폐압 터빈발전 등
3. 폐기물 열분해시설	◦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연료화(가스, 유류)하기 위한 설비
4. 탄소포집설비	◦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포집하는 설비
5. 연료 전환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새로운 연료로 대체하는 설비 - 보일러, 건조설비, 버너, 로 등 ※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사업으로 지원

지원 설비	지원 범위
6. 전처리장치	◦ 원료 등의 전처리로 후단 공정의 에너지소비량을 절감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설비 - 파쇄기, 선별기 등
7. 인버터 및 인버터 제어형전동기	◦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장치 또는 인버터 제어형 전동기로 전력을 절감하는 설비 - 버터 제어형 공기압축기 등
8. 고효율 기기	◦ 기존설비의 개선을 통해 효율이 향상되거나 기존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 LED조명, 모터, Pump, Fan, 교반기, 변압기, 고효율 버너 등
9. 불소가스 저감설비	◦ 전자산업 등에서 열, 플라스마 등을 활용하여 FC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설비
10. 공정개선	◦ 온실가스 배출공정의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로 1~9번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
11. 에너지관리시스템	◦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관리를 위한 계측기, 제어장비, 모니터링장비 등 시스템 구축 장치 ※ 다른 감축설비와 병행 설치할 경우 지원 가능
12. 기타	◦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신청을 통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설비

자료: 환경부

그러나 최근 4년간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사업을 통해 설치된 감축설비 유형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인버터 및 인버터제어형 전동기나 고효율기기 등 일부 설비 유형에 국한되어 지원됨에 따라 동 사업의 효과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2019년의 경우 동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총 11개 설비(민간업체 및 지자체 포함) 중 5개 설비는 인버터 및 인버터제어형 전동기, 6개 설비는 고효율기기가 설치되었고, 2020년에는 일부 설비(3개)가 폐에너지회수·이용설비로 설치되었으나, 대다수의 설비(18개)가 고효율기기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 물량이 확대된 2021년의 경우에도 총 79개 설비 중 47개가 고효율기기, 22개가 인버터 및 인버터제어형 전동기로 설치되는 등 특정 유형의 설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⁵⁾

5) 환경부에 따르면, 과거 2020년까지는 동 사업의 지원 대상을 '폐기물' 분야 업종에 한정하여 사업을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실적(2019~2021년)]

(단위: 건수)

지원 설비	2019		2020		2021	
	민간	지자체	민간	지자체	민간	지자체
소 계	6	5	6	21	50	29
1. 탄소무배출설비	-	-	-	-	-	-
2. 폐에너지회수·이용설비	-	-	2	1	5	-
3. 폐기물열분해시설	-	-	-	-	-	-
4. 탄소포집설비	-	-	-	-	-	1
5. 연료전환	-	-	-	-	2	-
6. 전처리장치	-	-	-	-	1	-
7. 인버터및인버터제어형전동기	3	2	4	2	21	1
8. 고효율기기	3	3	-	18	20	27
9. 불소가스저감설비	-	-	-	-	-	-
10. 공정개선	-	-	-	-	1	-
11. 에너지관리시스템	-	-	-	-	-	-
12. 기타	-	-	-	-	-	-

자료: 환경부

비록, 탄소중립 관련 정책 추진에 따라 동 사업의 물량 및 예산이 크게 확대된 2022년의 경우, 과거 연도에 비해 탄소무배출설비나 폐에너지 회수·이용 설비, 탄소포집설비, 공정개선 등 기존에는 실적이 저조하였던 타 유형의 설비가 설치되는 등 일부 개선된 측면이 있으나, 전체 125개 중 87개 설비(69.6%)를 인버터 및 고효율기기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하였고, 지원 한도(최대 3억원)가 낮아 사업 참여업체가 저비용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설비(인버터, 고효율기기 등)를 중심으로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최대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다양한 설비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21년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여전히 인버터와 고효율기기를 중심으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 실적(2022.9월)]

(단위: 건수, 백만원)

구 분	민간		지자체		합계	
	설비	금액	설비	금액	설비	금액
합 계	125	77,056	29	7,500	154	84,556
탄소무배출설비	11	11,533	-	-	11	11,533
폐에너지 회수·이용 설비	12	7,812	-	-	12	7,812
탄소포집설비	1	6,000	-	-	1	6,000
연료 전환	7	28,498	-	-	7	28,498
전처리장치	1	261	-	-	1	261
인버터(전동기 포함)	44	9,897	6	581	50	10,478
고효율 기기	43	11,197	22	6,737	65	17,934
불소가스 저감설비	1	777	-	-	1	777
공정개선	5	1,081	1	182	6	1,263

자료: 환경부

이에 대해, 환경부는 동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설비 유형별 지원 비율이나 규모에 대해서는 미리 정하지 않고 있으며, 업체들의 실제 수요에 맞춰 사업 신청을 받은 후 사업계획의 적정성이나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환경부는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에서 동 사업을 통해 지원 가능한 설비 기준을 투자회수기간 3년 이상인 설비로 제시하고 있는데, 업체들은 인버터나 고효율기기 등 상대적으로 소액을 투자하여 단기간 내에 투자비용회수가 가능한 종류의 감축설비를 선호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지원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는 개별 업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설비별 저감효과를 살펴보면, 인버터나 고효율기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높은 설비 유형이 존재하는바, 각 설비별로 달성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다른 설비에 비해 설치·관리 및 감축량 산정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특정 유형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사업 운영방식으로 판단된다.

[온실가스 감축 설비별 온실가스 저감효과]

(단위: 백만원, 톤CO₂/년, 톤CO₂/백만원)

구 분	지원액(A)	감축량(B)	저감효과(B/A)
계	77,055	199,590	2.6
탄소무배출설비	11,533	10,343	0.9
폐에너지 회수·이용설비	7,812	10,034	1.3
탄소포집설비	6,000	31,462	5.2
연료전환	28,498	91,687	3.2
전처리장치	261	1,751	6.7
인버터 및 인버터제어형 전동기	9,897	18,606	1.9
고효율기기	11,197	17,331	1.5
불소가스저감설비	777	16,179	20.8
공정개선	1,081	2,197	2.0

주: 온실가스 저감효과는 2022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상 온실가스 감축량을 연간 지원예산으로 나눈 수치임

자료: 환경부

따라서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및 컨설팅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바탕으로 동 사업을 통해 지원 받는 업체가 온실가스 배출현황이나 특성에 맞춰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높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사업 및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사업은 사업 추진이 일부 지연되고 예산의 집행 실적도 다소 부진한 측면이 있으므로, 환경부는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2022년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 사업 중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사업과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사업 등 세부 내역사업별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①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사업**의 경우,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한 민간보조사업은 2022년 9월 현재 1~5차 공모(1.7.~6.30.)를 완료하여 당초 2022년도에 편성된 예산(804억원)의 95.8%(771억원)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대상 선정 과정에서 일부 사업 요건을 미충족하거나 계획이 변경된 사업에서 발생한 33억원의

공모 잔액에 대해서는 10~11월 중으로 추가 공모를 실시하여 연말까지 역무대행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전액 교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2022년 9월 기준 한국환경공단의 실집행액은 약 310억원(45.1%)이고 12월말 기준 약 181억원 규모의 이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예산의 실집행이 일부 부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⁶⁾⁷⁾

다음으로, ②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사업**의 경우, 2022년 3월에 대상 사업자(000에너지)가 선정되었으나 사업 규모 축소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22.9.1.)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된 측면이 있으며, 2022년 10월 현재 사업계획 변경 후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 중으로 11월이 되어서야 업체 선정·착공 및 실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내역사업에 편성된 예산(100억원)의 실집행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6) 다만,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2022년 지원 대상은 2021년에 이미 선정되어 9월 기준 보조사업 예산 75억원이 전액 교부된 상황이며, 환경부는 연말까지 약 85% 수준까지 실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7) 참고로,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사업의 연도별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지원 물량이 확대된 2021년의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과 지자체를 합한 예산현액 222억 9,700만원 중 72.5%인 161억 7,000만원이 실집행되는 등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이 다소 부진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9~2021년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유형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기관등)						
		본예산	추경(A)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이월액	불용액
2019	민간보조	1,293	1,293	1,293	1,293	127	1,420	430	30.3	195	795
	지자체	2,820	2,820	801	801	-	801	326	40.7	464	10
2020	민간보조	1,293	1,293	1,293	1,293	195	1,488	1,143	76.8	345	-
	지자체	2,820	2,820	2,820	2,820	738	3,558	3,449	96.9	-	108
2021	민간보조	14,700	14,700	14,700	14,700	345	15,045	10,919	72.6	3,162	964
	지자체	7,500	7,500	7,252	7,252	-	7,252	5,251	72.4	406	1,595

자료: 환경부

[2022년도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 사업의 내역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2년 예산	'22년 선정결과 (1~5차)	'22년 집행현황				
			교부액 (9월)	예산현액 (9월)	실집행 9월	보조사업자	
						이월액	불용액
계	97,902	94,555	73,201	76,769	34,408	18,455	750
① 감축설비 지원	87,902	84,555	73,201	76,769	34,408	18,455	750
- 민간보조	80,402	77,055	65,701	68,863	31,049	18,080	-
- 지자체보조	7,500	7,500	7,500	7,906	3,359	375	750
② 청정연료 전환 (민간)	10,000	10,000	10,000	10,000	0	0	0

주: 보조사업자 이월액 및 불용액은 연도말 예상액 기준

자료: 환경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환경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사업의 대상을 2022년 88개소(민간업체 73개소, 지자체 15개소)에서 2023년 128개소(민간업체 113개소, 지자체 15개소)로,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사업 또한 2022년 1개소에서 2023년 2개소로 확대 편성한다는 계획인 바, 보조사업자 단위에서 나타난 실집행 부진 문제가 이어지게 될 경우 계획물량 및 예산이 확대된 2023년에도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⁸⁾

따라서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사업 및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사업의 지연 상황 및 관련 예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환경부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에 따라 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 중 감축목표에 미달성한 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할 수

8) 다만,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사업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3년 수요조사 결과 약 659억원 규모의 수요가 제출되었으며, 2022년 수요조사(21.8~9월) 시에는 296억원의 수요가 제출되었으나 2022년 실제 공모 시 총 824억원 규모의 사업 신청이 이루어지는 등 관련 사업 수요는 충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2023년부터는 대기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업체 및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⁹⁾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환경부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내역사업을 통해 제도 운영 및 관련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2021년부터 ‘목표관리업체 온실가스 감축 지원’ 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규모의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공정개선 및 설비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등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관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목표관리업체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의 2023년 예산안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미달성한 중소·중견기업의 연평균 개소수(60개소)의 절반인 30개소를 대상으로 업체당 평균 1억원(국고보조율 50%)씩 총 15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며, 이에 더해 관리업체가 목표량 외에 추가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확보할 경우 이를 정부가 구매하는 예산 12억원 등 총 27억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목표관리업체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22년 예산		'23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700	◦ 감축설비 지원 1,500백만원 - 30개소 × 100백만원 × 0.5 ◦ 목표량 이외 추가 감축량 정부구매 1,200백만원 - 120만tCO₂ × 1천원	2,700	◦ 감축설비 지원 1,500백만원 - 30개소 × 100백만원 × 0.5 ◦ 목표량 이외 추가 감축량 정부구매 1,200백만원 - 120만tCO₂ × 1천원

자료: 환경부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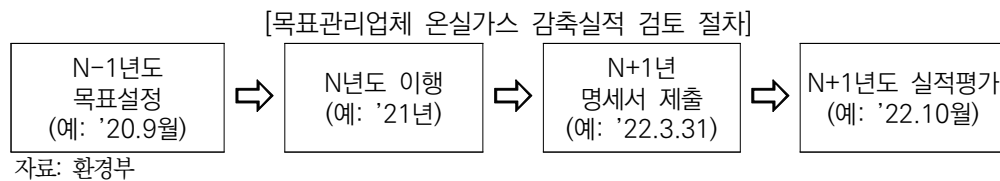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기간 내에 달성하여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관리업체와 협의하여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기준 및 계획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란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총량이 5만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업체이거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만5천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말한다.

한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6항¹⁰⁾ 및 제83조¹¹⁾에 따르면, 정부는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특히,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토 절차를 살펴보면, N-1년도에 정부와 관리업체가 협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N년도에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한 이후 N+1년도에 온실가스 감축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실적 평가를 통해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환경부는 2021년부터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감축설비 설치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보조금 예산을 지원 받은 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달성하였는지의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나, 만약 보조금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관리업체의 경우, 개선명령을 불이행하고 과태료를 부과받더라도 정부 보조금 지원 예산(개소당 국비 평균 5,000만원)에 비해 과태료 금액(1,000만원 이하)이 크지 않으므로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⑥ 정부는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개선명령에 따른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세서를 제출(같은 항 후단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27조제6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21년 목표관리제 대상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업체별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업체명	지원사업	2021년 지원예산	감축목표 달성여부
합 계			1,492	2022년 10월말 최종평가 예정
1	진흥주물	변압기 설치	530	
2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설치	150	
3	선일다이하스	변압기 설치	89	
4	로움코리아	변압기 설치	99	
5	LB세미콘 주식회사	냉각탑 폐열회수 시스템 설치	70	
6		인버터 설치	5	
7		고효율냉동기설치	92	
8	유성기업 영동공장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설치	90	
9	호스트웨이아이디씨	간접냉방 열교환기 설치	30	
10	종근당 천안공장	인버터 설치	91	
11		저녹스버너 설치	29	
12		자연냉열기 설치	40	
13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146	
14	동화지애플	인버터 설치	39	
15	한국기초소재(주)	변압기 설치	94	
16	면사랑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설치	42	
17	한영특수강	배기가스 열교환기 설치	99	
18	이건에너지	소각로 개선사업	235	

자료: 환경부

따라서 환경부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에 따라 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 중 감축목표에 미달성한 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감축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 예산을 지원받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업체의 경우, 추후 사업 지원이 제한되도록 지원 대상 선정평가 시 감점 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정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¹⁾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²⁾ 등에 의거하여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차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무공해 친환경차를 보급하고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2년까지 무공해차 유형에 따라 전기자동차와 수소차를 분리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을 별도로 수행하고 있으나, 2023년도 예산안부터는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무공해차 보급 사업과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을 분리하여 편성하였다.

무공해차 보급 사업³⁾의 2023년도 예산안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2조 1,827억 6,100만원 대비 5,574억 6,300만원(25.5%) 증액된 2조 7,402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무공해차 보급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무공해차 보급	1,258,635	2,407,761	2,182,761	2,740,224	557,463	25.5
전기자동차 보급	1,027,463	1,719,000	1,719,000	2,093,000	374,000	21.8
수소차 보급	229,010	679,505	454,505	633,400	178,895	39.4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환경부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3) 코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633-311

나. 분석의견

무공해차 보급 사업은 원자재 수급문제로 인한 공급 차질과 실제 수요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예산의 집행 및 실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환경부는 2023년 예산안에 편성된 예산 및 물량의 적정성 및 집행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등 탄소중립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2030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보급 목표를 기존 300만대에서 450만대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3년 예산안에서는 2022년에 비해 전기자동차와 수소차 지원 물량을 확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전기차(전기이륜차 제외)의 경우, 전기승용차 215,200대, 전기승합차 3,000대, 전기화물차 55,100대를, 수소차의 경우, 수소승용차 16,000대, 수소승합차 700대, 수소화물차 100대, 수소청소차 120대에 대한 구매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⁴⁾

[2023년도 무공해차 보급 사업 세부 편성내역]

(단위: 대, 백만원)

구분		2022		2023		비고
		물량	단가	물량	단가	
전기차	승용차	164,500	6	215,200	5	지자체·민간보조
	승합차	2,000	70	3,000	70	지자체보조
	화물차	41,000	14	48,000	14	지자체보조(소형)
				100	50	지자체보조(중형)
수소차	승용차	17,650	22.5	16,000	22.5	민간보조(소형)
						지자체보조
	승합차	300	150	400	210	저상(시내버스)
						고상(광역버스)
	화물차	40	200	300	260	지자체보조
	청소차	6	250	100	250	지자체보조
		4	720	120	720	지자체보조

주: 전기승용차는 지자체보조사업과 민간경상보조사업 보급계획 대수를 합한 숫자임

자료: 환경부

4)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승용차 기준)은 차종별로 성능 및 주행거리 등을 평가하여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수소차 보조금(승용차 기준)은 단일 차종에 지원되고 있어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무공해차 보급 사업의 경우, 매년 관련 예산 규모 및 보급 계획 물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보급 실적 부진 등으로 인해 예산의 집행 및 실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2023년 예산안에 편성된 예산 및 물량의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공해차 보급사업 연도별 재정규모]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예산안
재정규모	594,128	1,058,100	1,390,700	2,182,761	2,740,224
전년 대비 증가율	-	78.1	31.4	57.0	25.5

주: 2019~2022년은 최종 추경예산 기준, 2023년은 예산안 기준

자료: 환경부

구체적으로, 전기자동차 및 수소차 보급 사업을 합한 부처 단위 불용액 규모(결산 기준)를 살펴보면, 2019년 45억원, 2020년 791억 4,200만원에서 2021년은 1,120억 1,000만원으로 부처 단위 불용액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2년의 경우, 수소차 보급 사업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2회 추경예산을 통해 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으나, 조정된 예산 규모가 2,250억원 수준으로 별도의 감액 조정을 취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 불용액 규모가 전년 대비 더욱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무공해차 보급 사업 예산 집행(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교부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2019	537,000	594,128	589,628	4,500	616,345	449,303	102,740	64,301	72.9
2020	962,600	1,058,100	978,958	79,142	1,080,199	723,050	190,448	136,841	66.9
2021	1,390,700	1,390,700	1,258,635	112,010	1,496,266	1,230,194	126,699	139,373	82.2
2022	2,407,761	2,182,761	1,157,650	미정	1,275,572	740,067	미정	미정	미정

자료: 환경부

다음으로, 무공해차 보급 사업의 실적행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사업시행 주체(지자체, 민간) 단위의 실적행률은 2019년 72.9%에서 2020년 66.9%로 하락 하였으나 2021년 82.2%로 확인되는 등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동 사업의 부처 단위 불용액 규모가 확대된 것에 비례하여 사업시행주체 단위의 이월 액·불용액 또한 2019년 1,670억원, 2020년 3,273억원, 2021년 2,661억원 등으로 예산의 실적행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바, 적극적인 수요 발굴과 함께 철저한 집행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무공해차 유형별 실제 보급 실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차종의 다변화 및 전기차 성능개선에 따른 주행거리 확대 등으로 인해 전기자동차의 보급 실적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수소차의 보급 실적이 저조한 측면이 있는 상황으로 2023년에는 수소차 수요 발굴 및 실적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2017~2022년 무공해차 보급 현황]

(단위: 대)

차종	연도	보급계획 물량	전년이월 물량	추경증가 물량	총 보급계획 물량	실제 보급물량 (출고기준)	다음연도 이월물량
전기 승용차	2017	14,100	5,519	-	19,619	13,826	5,197
	2018	20,150	5,197	6,535	31,882	31,696	1,480
	2019	42,000	1,336	-	43,336	33,423	5,482
	2020	36,085	5,482	-	41,567	31,329	1,164
	2021	70,255	1,164		71,419	71,517	3,880
	2022.9	164,500	3,880		168,380	87,667	-
전기버스	2017	100	65	-	165	99	24
	2018	150	24	35	209	121	145
	2019	300	145	197	642	551	125
	2020	2,149	125	-	2,274	1,016	1,181
	2021	934	1,181		2,115	1,290	646
	2022.9	2,000	646		2,646	1,214	-

(단위: 대)

차종	연도	보급계획 물량	전년이월 물량	추경증가 물량	총 보급계획 물량	실제 보급물량 (출고기준)	다음연도 이월물량
전기 화물차	2019	1,000	-	155	1,282	1,089	670
	2020	10,590	670	5,500	16,760	14,320	1,864
	2021	27,578	1,864		29,442	27,566	1,283
	2022.9	41,000	1,283		42,283	30,957	-
수소연료 전지차	2017	130	14	-	144	51	85
	2018	159	104	500	763	712	51
	2019	4,000	51	1,467	5,518	4,179	1,155
	2020	10,100	1,155	-	11,255	5,783	1,876
	2021	15,000	1,876	-	16,876	8,473	291
	2022.9	27,650	291	△10,000	17,941	7,313	-
수소버스	2018	-	-	-	-	2	-
	2019	35	-	2	37	15	21
	2020	180	21	△100	101	60	23
	2021	180	23	-	203	54	89
	2022.9	340	89	-	429	78	
수소트럭	2021	5	-	-	5	5	-
	2022.9	6	-	-	6	-	-

주: 1. 실제 보급물량은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기준

2. 보급계획은 연도 중 내역조정 등이 반영된 물량 현황으로 예산 기준과 다를 수 있음

자료: 환경부

구체적으로, 각 연도별 수소차(승용차 기준) 보급 현황을 살펴보면, 보급 계획 물량이 대폭 확대된 2020년은 총 보급계획 물량 11,255대 중 5,783대가 보급되었고, 2021년은 16,876대 중 8,473대가 보급되었으며, 2022년의 경우,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장기화 등을 고려하여 수소차 보급 물량을 감액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월말 기준 총 보급계획 물량 17,941대 중 7,313대만이 보급되는 등 수소차의 계획물량 대비 실제 보급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부는 수소승용차는 올해와 유사한 규모로 계획 물량을 편성하였고, 수소버스(저상, 고상)와 수소화물차, 수소폐기물청소차의 경우 상용화 초

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대비 2023년 지원 물량을 확대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인 바, 충분한 수요가 확보되지 못할 경우 관련 예산의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소차 보급 사업의 물량 및 예산 편성내역(2022~2023)]

(단위: 대, 백만원)

구분		2022			2023(안)		
		물량	단가	예산	물량	단가	예산
수소차	승용차	17,650	22.5	397,125	16,000	22.5	360,000
	승합차	300	150	45,000	400	210	84,000
		40	200	8,000	300	260	78,000
	화물차	6	250	1,500	100	250	25,000
	청소차	4	720	2,880	120	720	86,400
합 계		18,000		454,505	16,920		633,400

주: 2022년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환경부

이와 같이,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사업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및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등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보급 목표 및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수급문제로 인한 공급 차질과 실제 수요 부족 등으로 인한 예산의 집행 및 실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환경부는 2023년 예산안에 편성된 예산 및 물량의 적정성 및 집행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수소차 출시(계획) 현황]

구분	승용	시내버스	광역버스	화물
사진				
차종명	넥소	일렉시티 FCEV	유니버스 FCEV	엑시언트
연료용량	6.3kg	35kg	35kg	42kg
주행거리	609km	474km	-	-
출시	'18년 3월	'19년(시범), '20년(양산)~	'22년 10월~	'21.11월(시범), '22.7월~(양산) '22.12월~(청소차, +특장)

자료: 환경부

III

개별 사업 분석

1

녹색신산업 사업화 지원 사업의 신규 추진 필요성 검토

가. 현 황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¹⁾은 개발이 완료된 우수 환경기술의 성공적인 사업화 및 상용화를 위한 컨설팅·사업화자금·투자유치 지원을 통해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환경분야에 유망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655억 8,700만원 대비 54억 3,000만원 증액(8.3%)된 710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89,749	65,587	65,587	71,017	5,430	8.3
사업화 지원	34,500	36,450	36,450	36,450	0	0.0
녹색신산업 사업화 지원	-	-	-	1,600	1,600	순증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환경부는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녹색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사업화를 기 지원하고 있으므로, 녹색신산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신규 내역사업을 추진하는 필요성 및 실효성을 검토하고, 기존 사업화 지원 사업 내용을 정비하여 지원 분야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531-307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이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 발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1.9),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21.10) 등에 따라 녹색산업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녹색산업 생태계 구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2023년 예산안을 통해 “녹색신산업 사업화 지원” 내역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동 내역사업의 지원 분야로 바이오가스, 자원순환, 기후테크, 환경AI·ICT, 초순수 등 5대 분야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녹색산업체를 대상으로 분야별 1~2개 기업에 연간 최대 2.5억원 등 총 16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도 녹색신산업 사업화 지원 사업 개요]

- (지원대상) 녹색 신산업 관련 기술을 보유한 녹색산업체
- (지원규모) 1,600백만원(5개 분야 × 1~2개사 × 250백만원)
※ 기업당 연간 최대 2.5억원, 최대 2년간 지속 지원
- (지원내용) 시제품 제작, 성능평가, 제품설비의 인검증 및 홍보, 기술사업화 촉진 컨설팅, 해외시장 진출 등 자금 지원
- (추진체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모,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사업 지원 및 사후 관리

신청·접수 (통합공고)	➡	자격검토/ 서면평가	➡	발표 및 토론식 심층평가	➡	최종선정
주관기관 (중소기업)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선정위원회 →환경부

지원분야	지원대상 기술/사업(예시)
바이오가스	고순도 정제·수소화 등 요소 기술별 규격화, 설치·시설 개선, 바이오가스 해외진출 지원 등
자원순환	미래폐자원 전과정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플라스틱 재질별 재생원료 상용화, 유기금속 회수 기술개발사업화실증화 등
기후테크	온실가스 배출 저감 설비 설계·시공, 기후변화영향 분석·평가 서비스 제공 및 관련 설비 설계·시공 등
환경AI·ICT	환경기초시설, 장비·시설관망 등을 지능형 AI·ICT 전환, 국내 폐기물 성상을 고려한 광학선별 센서, 사물 포착인지 후 종류·재질·형태 인식을 위한 빅데이터·알고리즘 기술개발 등
초순수 및 물부품	초순수 생산플랜트 공정별 운영기술 국산화, 초순수 플랫폼 구축 등

자료: 환경부

그러나 환경부는 동일한 세부사업 내 “사업화 지원” 내역사업을 통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와 제품화, 시장진출 등 녹색산업체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사업화 지원” 내역사업의 예산은 364억 5,000만원 규모로 2023년도 예산안에서도 동일한 규모의 예산액이 편성되었다.²⁾

특히,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관리지침」(22.1)과 동 사업의 안내서 및 공고문에 제시된 지원 분야를 살펴보면, 청정대기, 자원순환, 스마트 물, 기후대응(에너지 전환 포함), 일반 환경 등 녹색산업 전 분야를 지원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재생에너지나 자원순환 등 환경부가 2023년 예산안을 통해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신산업 사업화 지원” 사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원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환경부는 “녹색신산업 사업화 지원” 사업을 통해 ① 자원순환 분야의 경우, 플라스틱 재질별 재생원료 상용화와 유기금속 회수 사업화·실증화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나 이는 “사업화 지원” 내역사업의 세부분야 중 자원순환 분야에

2) “사업화 지원” 내역사업은 중소환경기업의 사업화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환경부는 사업화 촉진을 위한 컨설팅과 기술도입, 시제품 제작 및 인·검증 등 제품화 단계에 더해 시장진출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원 종료 후 3년간 사업화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후컨설팅·후속사업 인센티브 등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화 지원 사업의 프로그램별 지원 개요]

프로그램		지원내용	지원한도(기간)	비고
사업화 촉진	① 컨설팅	◦ 사업화 전략 컨설팅 - 사업화(수출) 전략, 판로 개척 등 ◦ 기술컨설팅 - 인검증·인허가, 특허 전략, 공정·성능 개선 등 ◦ 경영컨설팅 - 인사, 조직, 자원관리(ERP), 경영전략 등	최대 0.5억 원 (6개월 이내)	2~3개 프로그램 대상 최대 3억원 (8개월 이내)
	② 기술도입	◦ 기술이전 지도 - 비영리기관 도입기술의 최적화	최대 1억 원 (6개월 이내)	
제품화	③ 시제품 제작	◦ 시제품 제작·개선, 공인기관 성능평가 소요자금	최대 2억 원 (8개월 이내)	
	④ 인·검증	◦ 판매 필수인증 또는 과제 관련 정부 인·검 증 취득비용 - 녹색인증, 신기술인증, 환경표지, 우수조달 등	최대 1억 원 (6개월 이내)	
⑤ 시장진출		◦ 홍보·마케팅 소요자금 - 홍보물 제작, 전시회 참가, 광고 등 ◦ 자금유치 컨설팅 - 민간 투자유치, IPO, 정책자금 등	최대 0.5억 원 (6개월 이내)	

자료: 환경부

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며, ② 온실가스 배출 저감 설비 설계·시공, 기후변화영향 분석·평가 서비스 제공 및 관련 설비 설계·시공 등을 지원하는 기후테크 분야의 경우에도 기존 “사업화 지원” 내역사업의 기후대응 분야에서 이미 다루고 있는 사업으로 보인다.

[사업화 지원 사업과 녹색신산업 사업화 지원 사업의 지원 분야 중복사례(예시)]

분야	세부 분야	주요 사업화 내용(예시)
청정대기	측정·감시	IoT 기반 대기환경 측정 및 배출시설 관리 시스템, 인공지능 대기질 예측 시스템, 실시간 실내·외 대기질 측정장치, 사업장 배출 대기오염물질 측정장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측정장치 등
	산업 분야 배출 저감	대중형사업장 배출 대기오염물질 스마트 집진설비, 복합오염물질 처리용 촉매 필터, 비산배출 유해대기오염물질 회수처리장치, 소규모 사업장 VOCs 회수처리장치 등
	수송 분야 배출 저감	자동차, 농기계, 건설기계, 선박 등의 오염물질 배출 후처리장치 등
	실내 공기정화	지능형 공기정화 시스템, 다중이용시설 및 지하공간 스마트 공기정화시스템, 가정용 공기청정기, 실내오염물질 다중복합 흡착필터 등
	실외 공기정화	IoT 기반 버스정류장, 터널 및 도심 밀집지역 공기정화시스템 등
자원순환	폐기물 저감	IoT기반 폐기물 처리(선별, 소각, 감량화, 고형화, 압축, 용융 등) 시스템, 지능형 폐기물 관리 시스템 등
	유용자원 전환	폐기물 중 유용물질 회수, 전처리, 재생, 재활용, 원료화 및 제제조 등
	탈 플라스틱	폐플라스틱 재가공·재사용, 화학적 재활용 및 친환경 플라스틱(바이오 플라스틱 등) 생산
스마트 물	정수 및 하폐수 고도처리	지능형 상·하수도 운영·관리, 정수장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제거, 하폐수 고도처리 등
	수질 관리	ICT기반 하천 오염 감시, 수질 예측, 녹조 제어 관리 등
	지능형 물 관리 및 재이용	스마트 워터 시티, 스마트 워터 그리드 등 ICT 기반 스마트 물관리, 해수담수화,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
	토양·지하수	오염 토양 정화·복원, ICT 기반 지하수 오염분석 및 원인자별 정화, 지하수질 관리 등

분야	세부 분야	주요 사업화 내용(예시)
기후대응	기후변화 분석·평가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용
	탄소 포집, 저장, 이용(CCUS)	에너지 다소비 산업 분야의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및 활용
	Non-CO2 온실가스 저감	Non-CO2 온실가스(N₂O, CH₄, F-Gas) 포집, 정제, 활용 및 분해처리
	탄소흡수	산림, 갯벌, 습지, 생태공원 등 생태 기반 탄소흡수 기능 강화
	에너지 전환	(폐기물에너지) 고열량의 가연성폐기물의 연료화(기체, 액체, 고체) 및 에너지화 (수열에너지) 물과 대기 중 온도차를 이용한 수열에너지 활용 건물 냉·난방, 농가 열원 공급 등 (바이오에너지) 유기성폐기물, 폐목재 등 생물 유래 바이오매스로부터 바이오디젤, 바이오오일,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부탄올 등 생산 (기타) 수소, 암모니아 및 바이오가스의 포집·운반·공급·이용
일반환경	저탄소 공정·제품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소재, 공정, 제품 ※ 환경기술에 한함
	생태계 복원	육상, 하천, 습지, 도시생태계 등 생태계 복원, 스마트 기술 기반 생태계 관리 및 서비스 활용
	생물자원 활용	생물자원을 활용한 유용 소재 발굴·생산·제품화
	소음·진동 관리	소음·진동 방지·저감, 차음·방진 성능 향상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	빛공해, 유해화학물질, 환경유해인자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 저감 및 위해성 관리

자료: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바탕으로 재정리

이에 더해, 환경부는 2020년 제3회 추경예산부터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내 역사업³⁾을 통해 2022년까지 지원기업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유망 녹색기업의 사업화와 연구개발을 패키지 형태로 통합 지원하고 있는데,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사업의 공고문에 제시된 지원 분야 또한 녹색신산업 사업화 지원 사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야를 일부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다.

3)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사업은 2022년부터 기후대응기금 내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되었으며, 2022년 예산은 375억원, 2023년도 예산안에는 225억원이 편성되었다.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사업의 지원 분야]

구 분	세부분야	관련 기술(예시)
청정대기분야	대기오염 저감 소재·부품·장비	저에너지형 대기오염방지시설, 에어필터, 환경촉매, 대기/굴뚝/실내환경 계측측정장비, 공기청정 건물공조, 공기질 개선 플랫폼 기술, 친환경 자동차 등
자원순환분야 (탈플라스틱 포함)	플라스틱 개선·대체, 폐기물 자원화, 소재·부품·장비	탄소전환 재활용 제품기술, 플라스틱 대체 및 재활용 기술, 폐자원 에너지화, 폐기물 감량 및 친환경적 처리기술, 유용자원 회수 및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 등
스마트물분야	상·하수도, 비점오염, 통합 물관리, 소재·부품·장비	기후변화 적응 물관리 기술,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담수플랜트, 자연재해 대응시스템, 통합수자원관리, 수계 수질평가/관리, 고도 수처리, 누수방지 및 절수 기술 등
기후대응분야	온실가스 저감, 저탄소 서비스·제품, 에너지 전환 기술 등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CCS 및 CCU, Non-CO2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저장, 수소, 수열에너지 등 환경분야 에너지 전환 기술 등
녹색 융·복합 분야	융합형 환경기술, 생물모방 및 생물소재 등	디지털, IoT, AI, 스마트그리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환경산업, 생물생태 특성을 고려한 생태모방기술, 생물자원 활용한 환경친화제품 등

자료: 환경부, 2022년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사업안내서('21.12)

즉, 환경부가 기 추진하고 있는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 및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사업에서 녹색산업 전반에 걸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녹색신산업을 구분하여 별도의 신규 내역사업으로 편성하고 예산을 지원할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업당 지원 예산 측면을 살펴보면, 기존의 “사업화 지원 사업”은 기업당 연간 최대 3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사업에서는 사업화에 7.5억원, 연구개발에 2.5억원 등 연간 최대 1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⁴⁾ 동 신규 내역사업은 최대 2.5억원으로 지원액 규모에 차이가 있어 기업들의 수요 확보에도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⁵⁾

4) 다만,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사업은 2022년 지원 기업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신규과제를 선정하지 않고 기 선정된 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사업화 지원 사업과 녹색신산업 사업화 지원 사업의 업체별 평균 지원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안)
사업화 지원 내역사업	예산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평균	252.4	250.0	232.3	미정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사업 ¹⁾	예산	최대 7.5억원	최대 7.5억원	최대 7.5억원	최대 7.5억원
	평균	698.2	720.9	진행 중	미정
녹색신산업 사업화 지원 내역사업	예산	-	-	-	최대 2.5억원
	평균	-	-	-	미정

주: 1)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사업은 사업화 지원 예산 기준 수치임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정리

따라서 환경부는 별도의 신규 내역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는 녹색산업에서 녹색신산업 분야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 추진 중인 사업 내용을 정비하고 지원 분야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환경부에 따르면, 기존의 “사업화 지원” 내역사업은 당해연도에 일회성으로 예산을 지원받으나, 신규 내역사업의 경우 최대 2년간 연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가. 현 황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사업¹⁾²⁾은 투자 회수기간이 길고 민간의 자발적 투자유치가 어려운 환경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선도적 투자를 통해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환경기업의 성장과 국내 우수 환경기술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출자사업이다. 환경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2022년 예산 200억원 대비 250억원 증액(125.0%)된 450억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30,000	20,000	20,000	45,000	25,000	125.0

주: 1) 기금은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환경부는 현재까지 조성된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의 자펀드 투자여력 규모를 감안하여 2023년 예산안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펀드 조성 규모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는 국고와 민간투자를 합하여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모태펀드(Fund of Fund)³⁾로, 2년 이상 투자 및 5년 이상 존속 하에 투자·회수하여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기후대응기금 6232-600

2) 기후대응기금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서, 기후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계획안 심의는 기획재정부위원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3) 모태펀드란 여러 투자자(출자자)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하나의 펀드(母펀드)를 조성한 후, 다시 개별투자펀드(子펀드)에 출자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국내 환경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⁴⁾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의 운용 방식을 살펴보면, 매년 환경부가 모태펀드 관리 기관인 한국벤처투자에 펀드예산을 출자한 후, 투자 운용사를 선정하여 세부 투자 계획을 설정하고, 민간 투자금 모집 등을 거쳐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2019년부터 매년 2개 펀드에 대한 출자 예산을 편성하였고, 2023년 예산안에서도 환경분야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녹색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개 펀드 조성·운용을 위한 예산 총 450억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사업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22년 예산		'23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0,000	- 일반출자금(460-01) : 20,000 -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1개 × 20,000 = 20,000	45,000	- 일반출자금(460-01) : 45,000 -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2개 × 22,500 = 45,000

자료: 환경부

동 사업의 경우, 2017년 제1호 펀드가 결성된 이후 초기에는 운용사 선정 지연, 민간자본 유치와 투자조합 결성 지연 등의 문제로 인해 투자실적 확보가 부진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회의 예·결산 심사과정에서 투자실적 저조 문제 해결에 관한 시정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⁵⁾

이에 환경부는 사업 관리방식을 개선하고 펀드의 투자대상을 확대⁶⁾하는 등 투자실적 제고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동 사업을 통해 조성된 펀드별 투자 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8월 기준 총 결성액 2,465억원 중 총 64개 기업(중복투자 제외)에 1,667억 4,300만원(정부출자+민간출자)이 투자되는 등 투자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4) 현재 환경부는 2년 이상 투자, 5년 이상 존속 하에서 운용사 및 출자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투자·회수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5)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사업 관련 시정요구사항(2019~2020회계연도)]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별 투자 실적 현황(2017~2022)]

(단위: 백만원, %)

펀드	연도	결성액(결성일)	투자 업체수	투자액	투자율	투자기간	투자기간 경과율
1호	2017	420억원('17.12월) (정부 200, 민간 220)	13	39,219	93.4	'17.12월~ '20.12월	100.0
2호	2018	191.2억원('19.4월) (정부 130, 민간 61.2)	10	13,552	70.9	'19.4월~ '23.4월	83.5
3호	2019	217억원('20.3월) (정부 130, 민간 87)	6	11,000	50.7	'20.3월~ '24.3월	62.5
4호	2019	215억원('19.12월) (정부 150, 민간 65)	7	19,050	88.6	'19.12월~ '23.12월	66.8
5호	2020	200억원('20.11월) (정부 100, 민간 100)	11	19,187	95.9	'20.11월~ '24.11월	45.0
6호	2020	154억원('20.5월) (정부 100, 민간 54)	10	14,701	95.5	'20.5월~ '24.5월	56.6
7호	2021	285억원('21.8월) (정부 150, 민간 135)	8	15,533	54.5	'21.8~ '25.8월	25.3
8호	2021	353억원('21.8월) (정부 150, 민간 203)	6	34,501	97.7	'21.8월~ '23.8월	50.6
9호	2022	430억원('22.9월) (정부 268.4, 민간 161.6)	-	-	-	'22.9월~ '26.9월	-
합계		2,465억원	64 (총투자기업)	166,743			

주: 2022년 8월 기준

자료: 환경부

구 분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사항
2019회계연도	미세먼지 특화펀드 등의 투 자유치 실적 제고	- 환경부는 적절한 예산편성 및 철저한 사업관리 를 통해 미세먼지 특화펀드의 실제 투자 지연에 따른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020회계연도	펀드 투자실적 제고방안 마 련 필요	- 환경부는 매년 신규 펀드 조성에 앞서 기존 결 성펀드의 투자실적을 우선적으로 제고하기 위 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 6) 환경부에 따르면, 기존 펀드의 주목적 투자분야 범위를 기존의 환경산업에서 환경산업과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전환과 관련된 미래환경산업 분야까지 확대하고,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인정 범위를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2022년 8월 기준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의 자펀드 총 투자여력, 즉 펀드 결성액 중 미집행액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38억 9,700만원, 2019년 104억 9,300만원, 2021년 130억 6,200만원 등 274억 5,200만원의 투자여력이 남아있다. 2022년 추진한 9호 펀드 또한 9월 20일자에 펀드가 결성됨에 따라 향후 3년 9개월의 투자 잔여기간 동안 400억원 규모의 투자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결성되어 투자가 진행 중인 자펀드 투자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구성된 펀드 규모(A)	미래환경산업	42,000	19,120	21,700	20,000	63,800	43,000	209,620
	미세먼지	-	-	21,500	15,400	-	-	36,900
투자된 금액(B)		39,219	13,552	30,050	33,888	50,033	-	166,742
잔존 금액(C=A-B)		2,781	5,568	13,149	1,512	13,767	-	36,777
운용비용(D) ¹⁾		3,372	1,671	2,656	1,529	705	3,000	12,933
투자잔여기간 ²⁾			4개월	1년 3개월	1년 11개월	2년 8개월	3년 9개월	
투자여력(C-D)		-	3,897	10,493	-	13,062	40,000	67,452

주: 1) 펀드운용 시 운용사에게 관리보수 등으로 운용비용 발생(약 10% 내외)

2) 2023.1.1. 기준

자료: 환경부

따라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동 사업을 통해 조성된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연간 투자액이 평균 345억원 규모인 점, 환경분야는 탄소중립, 플라스틱 재활용 등 신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부는 2023년 예산안 증액분(250억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집중호우의 강도 및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침수 취약지역, 하천 중 제방 정비가 미진한 지역의 침수 및 홍수 피해가 빈번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¹⁾ 특히 여름철 단기간 동안 대부분의 강수가 집중되는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댐, 제방, 하구둑, 홍수조절지 등 관련 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 홍수방어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도심지의 경우 상당 부분이 아스팔트와 시멘트로 이루어진 건물, 도로 등으로 덮여 있어 강수가 땅속으로 침투하지 못하고 지표면을 따라 직접 유출되며, 반 지하 주택, 상가, 터널, 주차장 등 지하와 저지대에 위치한 시설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22년 8월초에 내린 100년 빈도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대규모 침수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²⁾ 정부는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22.8.23.)을 발표하여 ① 도시침수지도·하천범람지도 및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AI 홍수예보체계를 구축하고, ② 도시침수 취약구역에 대한 하수도 개량 사업 및 도심지의 침수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대심도 지하저류시설 설치를 지원하며, ③ 하천 주변의 공간에 물을 임시 저장할 수 있는 강변저류지 설치 및 국가하천의 제방 정비율 향상을 지원하고, 도심지 지류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방수로 설치를 지원하는 등 도시침수 및 홍수예방을 위한 사업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통해 “수해 대응체계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고 있으며, 하천범람 예방과 관련해서는 도립천 일대에 지하방수로를 설치하는 “도립천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국립기상과학원, 「한반도 100년의 기후변화」, 2018.8., 기상청, 「한국 기후변화평가보고서 2020: 기후변화 과학적 근거」, 2020.7.

2) 2022.8.8.~8.12. 사이에 서울·경기북부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4명(서울 8명, 경기 4명, 강원 2명), 실종 4명(경기 2명, 강원 2명), 부상 25명(서울 2명, 경기 23명)이었으며, 8.13.~8.14. 충청 및 남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실종 2명(충남), 부상 1명(충남)이 발생하였다(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관리일일상황」, 2022.8.17.).

일대 침수방지 사업”, 도시침수 예방과 관련해서는 강남역과 광화문 등 상습침수지역에 대심도 빗물터널(지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하수관로정비 사업의 내역사업)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22.8) 중 2023년 주요 신규사업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사업 구분	추진내용	총사업비	2023년 예산안	비고
도시침수 인프라	대심도 빗물터널 (지하저류시설)	강남역 빗물터널	3,500	32	’27년 완공
		광화문 빗물터널	2,500	23	’27년 완공
하천범람 인프라	지하방수로	도림천 지하방수로	3,000	30	’27년 완공

자료: 환경부

3-1.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의 계획 구체화 및 면밀한 사업 관리 필요

가. 현 황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³⁾은 상습 침수지역인 도림천 일대의 홍수량 분산을 위해 지류인 도림천의 물을 본류인 한강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대심도 지하방수로 설치함으로써 홍수로 인한 침수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환경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서 대심도 지하방수로 설치를 위한 설계비 30억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2023년도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	-	-	-	3,031	3,031	순증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환경부

도림천 유역은 도림천과 그 지류하천인 대방천, 봉천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천의 특성상 상류부 관악산의 영향으로 경사가 급하여 집중호우 시 홍수가 빠르게 유입됨에 따라 하천 하류부는 홍수에 취약한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림천 유역은 과거 3차례 집중호우로 관악구 미성동·신사동, 동작구 상도동 등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으며, 2022년 8월에는 3시간 강우량 기준 100년 빈도 이상의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

3) 코드: 일반회계 5338-309

[과거 홍수피해 현황 및 원인]

구 분		2001	2010	2011	2022 ¹⁾
강우기간		7.15. 집중호우	9.21. 집중호우	7.27. 집중호우	8.8. 집중호우
강우량	3시간	303mm (100년 빈도 이상)	121mm (5년 빈도)	202mm (72년 빈도)	203mm (100년 빈도 이상)
	1시간	156mm (100년 빈도 이상)	74mm (8년 빈도)	94mm (31년 빈도)	84mm (20년 빈도)
피해 현황	침수세대	7,642	1,884	3,327	추산중
	피해액	17,365백만원	6,448백만원	4,916백만원	추산중
	사 망	8	-	-	3

주: 1) 관측지점: 서울 관악(신림동) '22.8.8. 20:00~23:00 기준(일강수량 305mm)(출처: 기상청)
자료: 환경부

이에, 환경부는 동 사업을 2023년 신규로 편성하고 2027년까지 3,000억원의 예산⁴⁾(국비 745억원)을 투입하여 도림천 방수로 및 대방천 방수로를 합하여 총 연장 5.2km의 지하방수로 설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2023년 예산안에서는 전체 설계비(기본 및 실시설계비) 예상액 121억 2,400만원 중 국비 지원분인 30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다.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 개요]

◦ 사업명 :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사업 ◦ 사업목적 : 기후변화 대응, 침수방지 ◦ 사업내용(시설규모, 위치 등) - 도림천 방수로 D=8.5m, 보라매공원~한강(샛강) L=3.0km - 대방천 방수로 D=4.0m, 장승배기역~한강(샛강) L=2.2km ◦ 총사업비: 3,000억원(보조율 25%, 국비 745억원, 시비 2,255억원) ◦ 사업시행주체: 서울특별시 ◦ 사업기간: '23~'27년 ◦ 2023년 예산안 산출내역:

4) 동 사업의 총사업비(3,000억원) 규모는 서울특별시에서 요구한 개략적인 총사업비 기준으로, 향후 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 총사업비 협의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참고로, 동 사업은 2022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22.8.24)에서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결정되었으며, 2022년 10월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예산		산출내역
3,031		◦ 실시설계비 : 3,031백만원(전체 설계비 12,124백만원*25%) - {순공사비*(기본설계요율+실시설계요율)}*조사비요율*25%(국고보조율) = {247,436백만원*(1.38%+2.67%)}*1.21*0.25

(단위: 백만원)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은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추진 중이므로, 환경부는 기본계획 수립 및 입찰방법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동 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사업시행주체인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서울시는 2022년 9월 30일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입찰공고를 추진하고, 2022년 11월초까지 사업수행능력 및 기술제안서 평가, 낙찰자 선정 및 계약절차를 완료한 후 2023년 5월내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동 사업의 설계 및 공사를 일괄입찰방법(turnkey)⁵⁾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동시에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절차를 병행하여 심의가 완료되면 2023년 6월 일괄입찰방법(turnkey)에 따른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을 발주⁶⁾하고 2023년 11월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한 후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일괄입찰(turnkey)이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 그 공사의 설계서 및 그 밖에 시공에 필요한 도면·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을 의미한다.

2023년 11월부터 우선시공분에 대한 착공 및 잔여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2024년 5월 실시설계를 최종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 추진절차]

타 당 성 조 사 및 기 본 계 획	용역 입찰공고	'22.09.30.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수행 (입찰안내서 작성 포함)	'22.11.15. ~ '23.05.15.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서울시 건설심의위원회)	용역 기간 중
	공기 적정성 심의 (서울시 건설심의위원회)	용역 기간 중
건 설 공 사	발주방침	'23.05.
	입찰공고(조달청)	'23.06.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23.07.~10.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23.11.
	우선시공분 착공 및 실시설계	'23.11.~'24.05.
	본공사 시행	'24.06.~'27.12.

자료: 서울특별시

그러나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6)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일괄입찰 방식으로 대형공사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입찰공고 진행 시 기본 설계와 실시설계 우선시공분에 대한 설계제안서를 함께 제출받게 되며, 입찰에 응모한 업체 중 적격자를 선정하여 설계 및 시공을 맡기는 한편, 적격자로 결정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먼저, ① 사업 추진방식과 관련하여, 환경부와 서울시는 일괄입찰(turnkey) 방식으로 도림천 대심도 지하방수로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환경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정된 절차 및 절차별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② 사업 규모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동 사업의 설계비 예상액 121억 2,400만원에 대한 국고지원액 30억 3,100만원을 전액 편성하였으나, 설계비를 비롯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업비 규모는 2023년 6월 기본계획 완료 후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과정에서 확정되는바,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 있어 동 사업의 신규 추진을 위해 2023년 예산안에 편성된 설계비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 총사업비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내역		예산요구 금액 (서울시)		비 고
총사업비			300,000		
공사비	소 계		247,436		
	1. 터널공사		120,423		
	2. 유입부공사		2,549		
	3. 유출부공사		569		
	4. 배수펌프장		1,427		
	5. 부대공사		24,994		(1+2+3+4)*20%
	6. 제경비		74,981		(1+2+3+4+5)*50%
	7. 부가세		22,494		(1+2+3+4+5+6)*10%
부대비	소 계		26,940		
	설 계 비	기본설계비	12,124	4,172	공사비*1.83%
		실시설계비		4,521	공사비*1.99%
		설계보상비(턴키)		3,431	공사비*1.4%
	감 리 비	공사감리비	14,816	3,144	공사비*1.27%
		설계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1,732	공사비*0.7%
		예비비		9,940	(공사+보상+설계비)*0.5%
보상비	소 계		25,657		

자료: 환경부

이에 더해, ③ 예산의 집행가능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업시행자인 서울시는 2023년 예산안에 편성한 설계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동 사업을 일괄입찰(turnkey) 방식, 특히 설계·시공병행방식(fast-track)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므로 기본설계에 소요되는 예산 외에 잔여 예산의 경우 우선시공분에 대한 실시설계 및 착공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동 사업의 입찰방법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방식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우선시공분에 대한 실시설계 및 착공 시 소요되는 예산 규모에 대해서도 2022년 10월 현재까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⁷⁾ 설계비 예상액 전체를 기준으로 편성한 2023년 예산안의 집행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2023년 예산안을 통해 신규 추진되는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은 사업 추진방식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동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 또한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영역이 완료되어야 구체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는 도림천 지하방수로 설치 사업이 적정 예산 규모로 편성되고 관련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7) 환경부 및 서울시에 따르면, 우선시공분은 수직구에 관한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정확한 사업 규모는 중앙건설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 심의 후 입찰안내서 작성 과정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3-2.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의 계획 구체화 필요

가. 현 황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⁸⁾은 하수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하수관 정비 및 지하 저류조 설치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대심도 하수저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도시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환경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서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비 중 일부인 54억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2023년도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하수관로정비	754,172	862,681	842,681	901,983	59,302	7.0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	-	-	5,435	5,435	순증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환경부

최근 집중강우의 강도 및 빈도가 증가하여 하수도의 빗물관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 증가로 인해 강우 시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하수도시설로는 집중강우에 따른 침수 문제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특히 고밀도로 개발된 도심지역의 경우, 하수관로 개량 공사나 저류시설 조성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

이에 환경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6,000억원(국비 1,500억원)을 투입하여 상습 침수지역인 강남역 일대와 광화문 일대를 합하여 총 연장 6.3km의 대심도 하수저류시설⁹⁾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며, 2023년 예산안에서는 강남역 및 광화문 일대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계비 총 217억 3,800만원 중 국고보조율(25%)¹⁰⁾에 해

8) 코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132-312

9) 지하 40m 이하의 대심도에 큰 저류조(터널)를 설치하여 도심지의 빗물을 일시에 저류하였다가 집중 호우가 끝나면 펌프장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배출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10) 환경부는 도심지역 침수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 사업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총사업비의 25%를 국고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며, 특히 서울 신월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 시 지원한 보조율을 근거로 2023년 예산안에서도 이와 동일한 보조율을 설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당하는 54억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 개요]

구분	세부내용
강남역 대심도 빗물터널 (지하저류시설)	◦ (사업내용) 하수관로 용량 초과 빗물을 지하에 일시 저류하는 시설 설치 ◦ (사업구간) 강남역~한강 ◦ (사업규모) 연장: 3.1km, 직경: 8.3m ◦ (총사업비) 3,500억원(국비 875억원(25%), 지방비 2,625억원 (75%)) ◦ (사업기간) '23 ~ '27
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 (지하저류시설)	◦ (사업내용) 하수관로 용량 초과 빗물을 지하에 일시 저류하는 시설 설치 ◦ (사업구간) 효자동~청계천 ◦ (사업규모) 연장: 3.2km, 직경: 5.5m ◦ (총사업비) 2,500억원(국비 625억원(25%), 지방비 1,875억원 (75%)) ◦ (사업기간) '23 ~ '27

나. 분석의견

환경부는 재난 예방을 위해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이 신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입찰방법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최근 발생한 서울 도심지역 침수피해는 기후변화에 따른 급속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기존에 설치된 하수관거나 저류시설 등의 설계용량¹¹⁾으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유량이 유입된 것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시간당 최대 110mm (50~100년 빈도)의 강우를 처리할 수 있는 대심도 지하저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도심지역 침수문제에 구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 사업을 신규 추진할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국회의 2023년 예산안 심의과정 중 동 사업의 규모와 사업 추진기간

11)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의 방재성능은 30년 빈도에 시간당 최대 95mm, 즉 재현기간 3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강우 확률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등과 관련하여 기존에 정부 및 지자체가 추진한 신월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례와의 비교 및 사업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사업 규모와 관련하여, 서울 신월 대심도 하수저류시설의 경우, 저류배수 터널(길이 3.6km, 관경 10m)과 유도터널(길이 1.1km, 관경 5.5m)을 설치하기 위해 산정된 총사업비는 1,372억원 규모이다.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별 비교표]

(단위: m, km, 억원)

구 분		신월	강남역일대	광화문일대
사업기간		2012~2020	2023~2027	2023~2027
사업구간		양천구 가로공원로~ 신월동~양천구 목동유수지	강남역~한강	효자동~청계천
사업 규모	직경	5.5~10	8.3	5.5
	길이	4.7	3.1	3.2
사업 예산	총사업비	1,372	3,500	2,500
	공사비	1,222	2,617	1,794
	설계비	45	128	90
	감리비	54	103	80
	보상비	30	635	526
	시설부대비	22	17	10
비 고		신월 총사업비 산출내역은 '12년 재원협의 기준	-	-

주: 2023년부터 추진예정인 강남역일대 및 광화문일대 사업의 사업예산 및 규모 등은 개략 산출되었으며,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등을 통해 사업계획 구체화 예정

자료: 환경부

그러나 2023년 예산안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강남역과 광화문 일대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의 경우, 신월 사업과 비교하였을 때 총 연장이나 직경 등 사업 규모가 유사한 수준이거나 다소 작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는 각각 2~3배 가량 확대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¹²⁾

12) 환경부에 따르면, 2023년 신규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과 관련해서는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에 따른 표준사업비를 기준으로 총사업비를 산정하였다는 입장이다.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별 총사업비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규모	계	공사비	설계비	공사감리비	보상비	시설부대비 ¹⁾
신월	총연장: 4.7km 직경: 5.5~10m	137,214	122,215	4,512	5,369	2,962	2,156
강남역	총연장: 3.1km 직경: 8.3m	350,000	261,704	12,793	10,324	63,445	1,734
광화문	총연장: 3.2km 직경: 5.5m	250,000	179,437	8,945	8,011	52,601	1,006

주: 1) 신월 대심도 사업은 설계보상비

자료: 환경부

다음으로, 사업 소요기간 측면에서 살펴보면, 서울 신월 사례의 경우 2012년 국고보조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이 추진된 이후 2020년 5월 사업 준공까지 약 8년이 소요되었으나, 환경부는 2023년 신규 추진하는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총 사업기간을 5년으로 제시하고 있다.

[서울 신월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 추진경과]

서울시 신월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 '10.09. : 신월동, 화곡동 일대 244ha 침수(주택 등 6,001개소)
- '10.12. : '11년도 신규 국고보조사업 반영
 - 양천구 하수저류시설, 강서구 하수저류시설 등
- '12.07. : 국고보조사업 사업계획 변경
 - 하수저류시설 2개소(양천, 강서)→대심도 하수저류시설 1개소(신월)
- '13.03. : 사업자 선정(턴키방식) 및 기본설계 착수
- '13.05. : 공사 시행(우선 시공분 착수)
- '14.01.~'14.12. : 실시설계
- '15.01. : 본공사 착공
- '17.07. : 전 구간 터널 굴착공사 완료
- '20.05. : 준공

자료: 환경부

환경부에 따르면, 신월 사례의 경우 인근 지역의 목동펌프장과 연계 운영하여 펌프장 설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으나, 2023년 신규 추진하는 강남역 및 광화문 일대 사업은 펌프장 신설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업 기간과 관련하여 2022년 10월 현재 대심도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은 서울시에서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있고, 2022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일괄입찰(turnkey)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 내에 우선시공분에 대한 착공과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며, 기존 신월 사업을 추진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기간을 단축하고 최적화된 공사 계획을 마련하는 등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제시한 총사업비는 개략적으로 산출된 사항이므로 설계비를 비롯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업비 규모는 2023년 6월 기본계획이 완료된 후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과정에서 확정되는바,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 있어 동 사업의 신규 추진을 위해 2023년 예산안에 편성된 설계비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경부와 서울시는 일괄입찰(turnkey) 방식으로 대심도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나, 실제 사업 추진방식은 기본계획 수립 후 진행되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¹³⁾를 거쳐야 확정되는바,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 중 동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를 비롯하여 기본·실시설계, 본공사 등 절차별 소요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동 사업은 도립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과 마찬가지로 2022년 8월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7호¹⁴⁾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형공사등”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1.29.>

1. 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2.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작성방법과 제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9., 2017.7.26.>

1.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일괄입찰로 발주할 공사와 그 밖의 공사로 구분하여 제출

2. 일괄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하기로 한 공사 중 대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는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제출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10월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앞두고 있어 동 사업에 대한 별도의 타당성조사 절차가 생략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재난 예방을 위해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이 신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입찰방법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14)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가. 현 황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 시범사업¹⁾은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등 상호보완적인 특성이 있는 둘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병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경부는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12억원 대비 54억 9,900만원(458.0%) 증액된 66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 시범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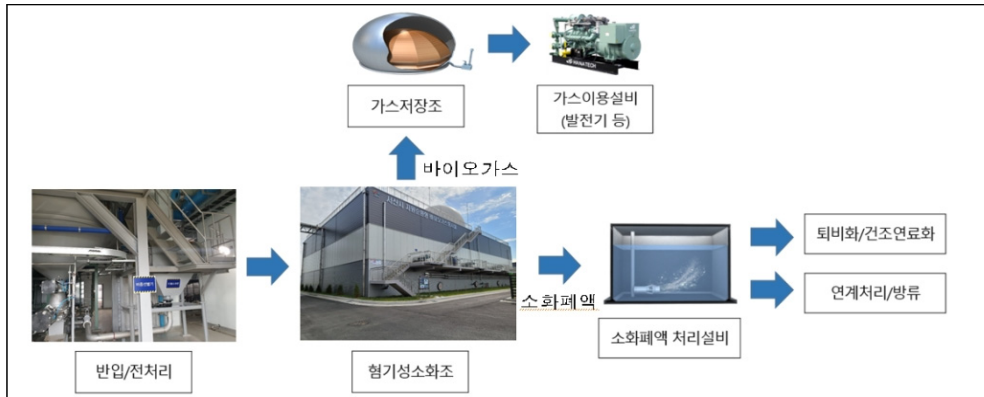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 시범사업	-	1,200	1,200	6,699	5,499	458.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환경부

바이오가스는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유기물이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혐기성 소화)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가스를 의미한다. 바이오가스는 일반적으로 메탄(50~65%), 이산화탄소(25~50%), 소량의 수소·황화수소 등으로 구성되나, 정제과정을 거치면 메탄 순도가 95% 이상인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를 도시가스 공급이나 발전, 난방 등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함으로써 폐자원을 처리함과 동시에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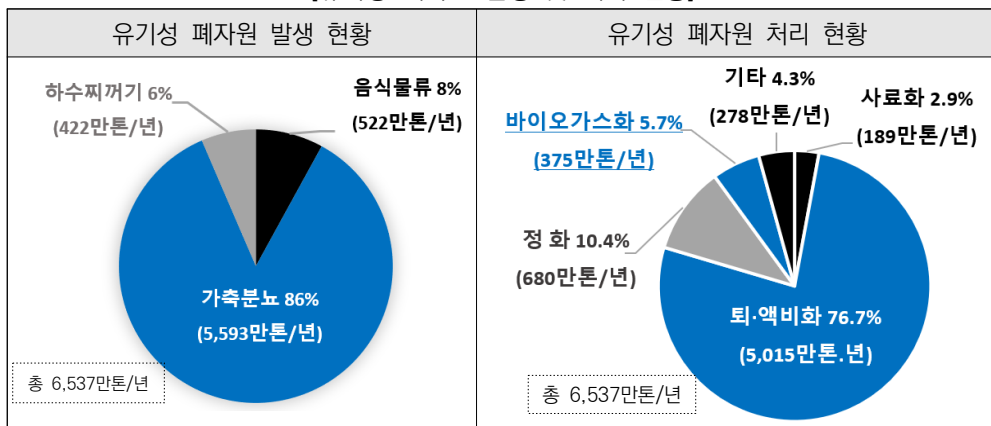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공정과정]



자료: 환경부

바이오가스화가 가능한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은 2010년 5,861만톤에서 2019년 기준 6,721만톤으로 지난 10년간 약 14.7%가 증가하였으나, 유기성 폐자원의 대부분은 퇴비·사료 생산(79.6%), 정화 처리(10.4%)에 활용되고 나머지 5.7% 가량만이 바이오가스 생산에 활용되고 있어 폐자원의 재활용 및 에너지화의 관점에서 자원 소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2)

[유기성 폐자원 발생 및 처리 현황]



주: 2019년 기준

자료: 환경부

2) 퇴비·사료화는 공정과정이 단순하고 설비가 저렴하여 그동안 주된 재활용 방식으로 유효하였으나, 경작지 감소에 따른 수요처 감소, 과다살포에 따른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그 활용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2022년 동 시범사업을 신규 편성하면서 상호보완적인 특성이 있는 둘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도 예산안에서는 ① 2022년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 4개소에 대한 타당성조사 완료 후 실시설계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 52억 9,900만원과, ② 신규 4개소에 대한 타당성조사비 12억원, ③ 바이오가스 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 배출량 및 처리량,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비 2억원 등 총 66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 시범사업 예산안 편성내역]

구분	세부내역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 사업	◦ 6,499백만원('22년 1,200백만원 대비 5,299백만원 증액) - (계속사업) 4개소 실시설계비 5,299백만원 * 개소당 평균 공사비 55,200백만원 × 실시설계비 4% × 보조율 평균 60% × 4개소 = 5,299백만원 - (신규사업) 4개소 사전 타당성 조사비 1,200백만원 * 사전 타당성 조사비 300백만원 × 신규 4개소 = 1,200백만원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ISP 수립	◦ 200백만원(신규) -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비 * 1식 × 200백만원 = 200백만원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2022년 신규 추진된 유기성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시범사업의 추진현황을 고려하면 2023년 예산안에 편성된 실시설계 추진에 일부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경부는 향후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예산으로 추진 중인 시범사업 대상으로 서울시+고양시, 청주시, 순천시, 구미시+칠곡군 등 4개 지역이 선정되었으며, 서울시+고양시와

순천시는 국비와 지방비 등 재정사업으로, 청주시와 구미시+칠곡군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2022년 시범사업 선정 대상 현황]

지자체	시설용량	생산량(Nm3/일)	바이오가스 활용
서울시 +고양시	350톤/일 (음식물 300톤/일 분뇨 50톤/일)	45,000	수소(5톤/일) 생산, 도시가스 외부 판매
청주시	430톤/일 (음식물 260톤/일, 하수 100톤/일, 분뇨 70톤/일)	35,000	친환경에너지타운 발전사업 공급, 수소에너지 발전, 주민 온수 공급(협의 완)
순천시	340톤/일 (음식물 140톤/일, 가축분뇨 60톤/일, 하수 80톤/일, 분뇨 60톤/일)	25,000	도시가스(12천Nm3/일) 인근 마을 공급 수소발전(44천KWh/일)
구미시 +칠곡군	475톤/일 (음식물 190톤/일, 하수 255톤/일, 분뇨 30톤/일)	34,089	도시가스(19천Nm3/일) 공급업체 협의 완

자료: 환경부

다만, 2022년 신규 시범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고려하면 2023년 예산안에 편성된 실시설계 추진에 일부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환경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고양시와 순천시 등 재정사업의 경우, 2022년 4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지자체 → 한국환경공단)하였고, 8월에는 타당성조사 용역 업체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으로 2023년 4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청주시와 구미시+칠곡군 등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64조 등에 근거하여 민간투자

적격성 심사 절차³⁾를 거쳐야 하는바, 각 지자체는 2022년 상반기에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적격성 심사를 의뢰하였고,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를 거쳐 이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적격성 심사 통과를 위한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⁴⁾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분석,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분석 등을 수행하는 민간투자적격성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2개월이므로, 적격성 심사가 2023년 상반기에 완료된다고 할지라도 이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에 소요되는 기간(약 7~8개월)을 고려할 경우 2023년 내에 실제 설계 착공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환경부가 계획한 2022년 시범사업 대상 중 일부 사업의 경우, 민간투자적격성 심사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전절차가 진행 중이고, 관련 절차가 완료되어야 2022년 예산을 통해 계획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추진이 가능한 상황인 바, 결과적으로 2023년 예산안에서 반영한 시범사업 4개소에 대한 설계 추진 및 관련 예산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⁵⁾

따라서 환경부는 2022년 신규 시범사업의 민간투자적격성 심사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3)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는 '1단계: 사업추진의 타당성판단'(decision to invest), '2단계: 민간투자 적격성판단'(decision to PFI) 및 '3단계: 민간투자실행대안 구축'으로 구성된다.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단계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1단계	- 사업추진의 타당성 판단: 공공 혹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이며, 예비타당성조사 혹은 타당성조사와 유사
2단계	-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해당 사업을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시행할 경우와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할 경우의 '투자가치성'(Value for Money, VfM)을 비교
3단계	- 민간투자실행대안 구축: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민간투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민자적격성 조사, KDI 외 다른 전문기관도 수행 가능”(22.7.7.)

5) 다만, 환경부는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4개 사업 모두 기존 하수처리장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향후 필요한 절차 추진이 가능하며, 민자사업의 경우 적격성 심사 통과 즉시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둘째, 환경부는 향후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신규 도입하는 경우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로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타 세부사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단독 시설에 대한 지원이 종료되면 사업을 일원화하여 동 사업을 중심으로 정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정·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동 사업을 통해 유기성폐자원에 대한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타 세부사업인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을 통해 유기성폐자원 단독 바이오가스화시설⁶⁾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에 포함된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지원 관련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예산에서는 단독 시설 11개소와 통합 시설 1개소 등 총 12개소에 약 199억원이 편성되었으며, 2023년도 예산안의 경우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총 12개소(단독 11개소, 통합 1개소)에 총 252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 내 바이오가스화시설 관련 예산 현황(2022~2023)]

(단위: 백만원)

구분	시·도	시·군·구	통합/단독	신규/계속	국비
2022	총계				19,879
	서울특별시	강동구	단독	계속	800
	부산광역시	-	단독	계속	1,600
	광주광역시	-	단독	신규	350
	경기도	시흥시	통합	계속	1,570
	경기도	용인시	단독	계속	1,900
	경기도	남양주시	단독	신규	200
	전라북도	부안군	단독	신규	300
	전라남도	무안군	단독	계속	800
	경상남도	창원시	단독	계속	1,627
	경상남도	남해군	단독	계속	1,500
	경상남도	창원시	단독	신규	391
	제주도	제주시	단독	계속	8,841

6)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에서 지원하는 바이오가스화 사업은 음식물만을 처리하는 단독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이다.

(단위: 백만원)

구분	시·도	시·군·구	통합/단독	신규/계속	국비
2023 (안)	총계				25,200
	서울특별시	강동구	단독	계속	1,400
	부산광역시	-	단독	계속	1,800
	광주광역시	-	단독	계속	700
	경기도	시흥시	통합	계속	2,500
	경기도	용인시	단독	계속	3,000
	경기도	남양주시	단독	계속	500
	경기도	구리시	단독	신규	300
	강원도	태백시	단독	계속	1,500
	전라북도	부안군	단독	계속	300
	전라남도	무안군	단독	계속	600
	경상남도	남해군	단독	계속	600
	제주도	제주시	단독	계속	12,000

자료: 환경부

환경부에 따르면, 동 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운영 시, ① 시설 내 소화가 잘되는 영양 조건이 형성되어 최적의 운전조건을 조성할 수 있으며, ② 각 개별시설을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함에 따라 폐자원 투입량 및 부지확보가 용이하고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여 총사업비 및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바이오가스 수율이 향상되는 등 기대효과가 우수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환경부가 시범적으로 추진한 서산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소요된 사업비를 살펴보면,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음식물 등 각각의 유기성폐자원을 처리하는 단독시설을 설치할 경우 필요한 건립비와 운영비 등 총사업비가 약 660억원 규모이나, 통합시설을 설치할 때 소요된 총사업비는 470억원으로 약 190억원(국비 기준 97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바이오가스 또한 기존 시설에서는 하루에 6,224m³를 생산할 수 있으나 통합 시설에서는 7,549m³ 가량을 생산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단독시설 vs. 통합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 절감효과(서산 사례)]

(단위: 톤/일, 억원, m³/일)

구분	기존시설	통합시설	비 고
시설용량	320		
건 립 비	630	470(25%↓)	보조금 지침의 표준단가 적용
운 영 비	30	24(20%↓)	(산출근거) 기존시설 비교
가스 생산량	6,224	7,549(21%↑)	(산출근거) 기존 시설 설계기준 및 통합시설 시운전결과 비교

자료: 환경부

이와 같이,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은 기존의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독 시설에 비해 사업비 절감 및 가스생산량 증대 등 상대적으로 우수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환경부가 별도의 사업에서 단독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경우 통합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취지나 방향성이 왜곡될 여지가 있으며,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도 일정 부분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다만, 환경부는 향후 단독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지원 중단할 계획이며, 민간투자사업으로 전문기관의 적격성판단 절차가 완료된 경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통합 시설 추진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협의 하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의 경우 신규 단독 바이오가스화 시설 4개소에 대한 지원 예산이 편성되었고, 2023년에도 민간투자사업 적격성판단이 완료된 1개소를 대상으로 단독 시설 관련 예산이 편성된 상황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향후 신규로 바이오가스화시설을 도입하는 경우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로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단독 시설에 대한 지원이 종료되면 사업을 일원화하여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을 중심으로 정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조정·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⁷⁾

7)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을 통해 설치된 기존의 단독 시설에 대해서도 타 지역의 시설과 통합·연계할 수 있는 사업 모형을 개발하는 방안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 관리 강화 및 수돗물 안전 관련 대책 이행 철저 필요

가. 현 황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¹⁾은 지방상수도에 IC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감시 체계와 관망관리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자체의 수도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는 등 수돗물 공급 전 과정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과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이 2022년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2023년도 예산안에서는 2022년 추경예산 2,503억 4,800만원 대비 2,192억 300만원(87.6%) 감액된 31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443,751	250,348	250,348	31,145	△219,203	△87.6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	-	-	22,679	22,679	순증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환경부는 수돗물 안전 및 위생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재 추진 중인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 사업과 2023년 추진할 예정인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단순히 사후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사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의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2019년 5월말 발생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많은 지자체에서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2031-326

적수 문제²⁾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국민의 먹는물 안전 위험에 대한 우려가 급증함에 따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수도물 공급과정 전 과정을 감시·예측할 수 있는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0년 7월 수도물 유출 유출사고가 발생하면서 정수장 위생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20년 9월 제1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수도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2021년 예산을 통해 정수장 내 활성탄여과지를 설치하고 방충시설을 보강하며 여과지 하부집수장치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 내역사업을 신규 편성하여 2022년까지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의 주요 내역사업 개요]

내역사업명	사업 개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 (사업목표) 수도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해 161개 지방상수도 관망에 ICT 기반의 감시·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주요기술) 재염소설비, 정밀여과장치, 자동수질측정장치, 자동드레인, 관세척 인프라, 실시간 수압계, 관로정보 인식체계, 원격점검시설 등 - (사업대상) 161개 지자체 - (추진기간) '20~'22년('20년부터 단계별' 착수하여 인프라 구축 추진) * '20년 44개, '21년 77개, '22년 40개 - (사업방식) 지자체 자본보조(특·광역시 50%, 시군 70%)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	- (목표·내용) 수도물 유출 발생 예방을 위해 방충시설 보완, 정수처리 효율 향상 등 시설 개선 추진 - (사업대상) 지자체(117개 정수장), 수자원공사(14개 정수장) - (추진기간) '21~'22년 - (사업방식) 지자체 자본보조(30%, 50%), 출자(30%)

자료: 환경부

그러나 최근 깔따구 등 소형생물의 급증으로 인해 정수장 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거나 정수과정 내에서 완벽히 제거하는 데에 한계가 따르고 있는바,³⁾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기 추진하고 있는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 사업에 더해,

2) 2019년 6월말 서울 영등포구 일대와 강원도 춘천시, 충북 청주시 등에서도 붉은 수도물 신고가 이어졌고, 7월 중순경 경북 포항시 일부 지역에서 검은 수도물 발생 신고가 접수되는 등 수도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3) 2022년에도 창원('22.7.7.)과 수원('22.7.11.) 지역의 수도꼭지에서 유충이 유출되는 문제가 재차 발생하였다.

2023년 예산안을 통해 약 227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 소형생물에 대한 물리적인 차단 설비를 도입함으로써 유충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소형생물에 대한 물리적 차단 기술을 도입하여 유충 유출 원천차단 ◦ (지원대상) 수도사업자(지자체) ◦ (지원조건) 자치단체자본보조(광역 30%, 기초 50%) ◦ (사업기간) 2023년 ◦ (소요예산) 총사업비 475억원(국고 227억원)

유충발생 방어체계 이중화 계획

구 분	위생관리개선사업('21~'22년)	소형생물 대응사업('23년)
추진 방향	외부공간 소형생물 침입차단 및 정수처리 효율 개선(1차방어)	최종 공급단계에 물리적 유출차단 (2차방어)
사업 내용	· 밀폐시설(덮개 및 격벽), 미세방충망 등 · 응집제 주입설비, 하부집수장치 개선 등	정수공정 유출부 스트레이너 및 여과망 설치, 송수관로 정밀여과장치 설치
모식도		

자료: 환경부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 사업은 정수장 외부로부터의 유입을 차단하고 정수처리효율 개선을 통해 유충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나, 이를 통해서는 최종 공급단계에서의 유출을 차단하기 어려우므로 2023년에는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사업을 신규 추진함으로써 정수공정 유출배관이나 수도관망 등 최종 공급단계에서의 물리적인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마이크로 스트레이너, 정수지 내 여과망, 정밀여과장치 등 3가지 종류의 차단설비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⁴⁾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장치 개요]

구 분	장치 설명	예 시
마이크로 스트레이너	활성탄지 또는 여과지 지별 유출배관에 설치하여 유충·이물질의 정수지 유입 원천 차단	
정수지 내 여과망	정수지 유입부에 큐브박스형 STS망을 설치하여 유충·이물질을 물리적으로 스크린하여 차단	
정밀여과장치	정수지에서 최종수용기 사이 관로에 필터가 포함된 하우징을 설치하여 유충·이물질 제거	

자료: 환경부

이와 같이, 2019년 붉은 수돗물 사태, 2020년 수돗물 유충 유출사고, 2022년 유충 유출사고 재발 등에 대응하여 먹는 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에서 동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나타난 유충 유출사고 등 위생관리 문제에 대해 정부가 사전 예방적인 관리 대책 및 사후 조치적인 대응에 관한 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지 않을 경우,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수도사업자의 관리부실 등으로 인한 유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재발할 것으로 판단된다.

- 4) 구체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레이너는 총 437개소, 여과망은 293개소, 정밀여과장치는 158개소를 대상으로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며, 2023년 동 사업을 신청하는 지자체 중 갈따구 유충민원이 발생한 정수장(1순위), 위생관리 점검('20~'22년) 시 갈따구 유충 및 미흡사항이 확인된 취약정수장(2순위), 입상 활성탄을 사용하는 정수장을 관리하는 지자체(3순위)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20년 수돗물 유충 유출사고가 발생한 이후 전국 정수장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조사를 실시('20.7.17.~7.26.)하였고, 2020년 9월 정수장 시설 및 운영 개선, 운영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대국민 소통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2021년부터는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을 위한 예산을 투입(2021~2022년, 국고 861억원)하여 유입 차단 및 정수처리 효율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제주(재발생)와 동두천, 창원 및 2022년 창원, 수원 사례 등 깔따구와 유충 등 소형생물 발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위생관리 종합대책의 핵심과제인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이 아직까지 진행 중인 점, 그리고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나 정책이 현장에서 정착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바,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행 중인 관련 제도와 정책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사전 예방적 측면에서 2022년 7월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⁵⁾하여 정수장에서 매일 1회 이상 유충 존재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유역(지방)환경청의 지도점검 업무수행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립('20.12)하였으며,⁶⁾ 정수장 활성탄지에서 소형생물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 성능평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21.12)하여 적정 관리되도록 유도하는 등 수도사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형생물 대응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신설하여 시행 중에 있다.

5)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일반수도사업자가 해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해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7. 12.>

1. 수도시설을 항상 청결히 하고 깔따구 유충 등 소형생물의 유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먹는물의 오염을 방지할 것
2. 수도시설의 주위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
3. 수도꼭지의 먹는물 유리잔류염소가 항상 0.1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는 0.4밀리그램/리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리잔류염소가 0.4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는 1.8밀리그램/리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생물의 유입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2. 7. 12.>

6) 환경부,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처리 지침」, 2020.12.

다만, 소형생물이 수돗물 수질기준에 없어 수도사업자의 법적 관리근거가 부족함에 따라 현재 WHO,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 깔따구 등 소형생물을 수질기준에 포함한 사례는 없으나,⁷⁾ 소형생물 감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 고시⁸⁾에 따른 먹는물 감시항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환경부는 수돗물 안전 및 위생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재 추진 중인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 사업과 2023년 추진할 예정인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단순히 사후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사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의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7) 일부 국가 또는 도시에서 가이드라인 또는 권고값 수준으로 설정한 사례는 있다.

- 남아프리카 공화국 : 깔따구류 (권고) 1개체/㎥, (최대) 4개체/㎥
- 중국 선진시 : 깔따구류 (권고) 50개체/㎥, (최대) 200개체/㎥

8) 「먹는물 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2-3호, 2022.1.5.)

가. 현 황

환경책임투자 활성화 지원 사업¹⁾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고 2050 탄소중립의 적기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녹색채권²⁾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등 녹색활동 관련 민간자본 발행 시 이자를 보전해주고, 환경정보 수요에 대응하고 환경책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책임투자자에게 공신력 있는 정보를 구축·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부는 2023년 예산안을 통해 163억 4,500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2023년도 환경책임투자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환경책임투자 활성화 지원	-	-	-	16,345	16,345	순증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환경부

‘탄소중립’이 국제적 차원의 이슈로 등장함에 따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비롯하여 경제적 측면에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향후 대규모의 자금이 녹색, 탄소중립과 관련된 경제활동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로 인한 피해와 부작용 또한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12월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여 녹색금융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였고, 2021년 12월에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531-317

2) 녹색채권은 환경개선 목적을 위한 ‘녹색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된 채권을 의미하며, 탄소감축, 건물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적인 활동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자금 지원 등 녹색산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이 한정됨.

는 특정 경제활동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 순환경제, 오염, 생물다양성 등 6대 환경목표에 기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녹색경제활동’으로 분류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였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념 및 주요내용]

□ (개념)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 순환경제, 오염,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의 분류
□ (구성) 2개 부문, 69개 경제활동 ◦ (녹색부문)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등 64개 경제활동 ◦ (전환부문)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한시적 인정) ※ LNG 발전, 블루수소 제조 등 5개 경제활동
□ (원칙) 녹색경제활동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환경개선에 기여하며 사전 예방적 환경 관리 및 사회적 공감대를 기본으로 다음 3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함 ① 환경목표에 기여할 것: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함 ②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 환경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DNSH : Do No Significant Harm) ③ 최소한의 보호장치: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함

항목	내용
활동기준	경제활동이 활동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인정기준	경제활동이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배제기준	경제활동이 심각한 환경피해 평가 기준에 따른 요건에 부합하는지 판단
보호기준	경제활동이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지 판단

주: 녹색활동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활동기준과 인정기준, 배제기준, 보호기준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자료: 환경부

특히, 환경부는 앞서 논의한 녹색분류체계가 실제로 금융 및 산업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적으로 친환경경제사회 기반 구축

사업 예산 중 일부를 활용하여 2022년 4월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범사업’³⁾을 추진 중이며, 동 시범사업을 통해 채권이나 PF, 대출 등과 같은 금융상품에 녹색분류체계가 적용될 수 있는지, 녹색분류체계의 실제 적용과정에서 보완·개선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⁴⁾

이에 더해, 환경부는 녹색금융은 높은 초기비용,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자들의 낮은 전문성, 일반금융에 비해 추가적인 절차·시간 소요 등의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는 판단 하에,⁵⁾ 2023년 예산안에서 환경책임투자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신규 편성하여 ① 녹색분류체계 기준에 따라 일반 기업과 금융기관 등이 발행한 녹색채권에 대한 이차보전과, ② 신용도가 낮아 채권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발생하는 금리 중 일부와 외부검토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① ‘녹색분류체계 적용 녹색채권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일반 기업(대기업 포함)과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녹색채권에 대한 이차를 보전함으로써 녹색금융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녹색채권의 환경개선 기여효과 등을 산출하여 본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2023년 예산안에서는 96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또한, ② 녹색경제활동의 일환으로 녹색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나 신용도가 낮아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녹색유동화증권 발행 시 일부 금리와 외부검토비용을 지원하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 중견·중소기업 지원 시범사업’을 신규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이에 대해서는 총 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3) 2022년 시범사업의 경우, 참여기업에 대한 외부검토비용(기업당 1,500만원), 녹색채권의 적합성 판단을 담당하는 전담기관에 대한 검토비용(기관당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4) 2022년 시범사업의 참여대상은 녹색채권 발행기관(은행, 일반기업), 전담기관(온실가스 검증기관, 환경컨설팅사), 외부검토기관(신용평가사, 회계법인)이며, 은행·일반기업 부문별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을 공모하여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약 1.3조원 규모의 채권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5)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발행과 관련하여, 기업 및 금융기관은 녹색채권이 일반채권에 비해 발행 기준이 엄격하고, 외부검토비용 등 제반 비용이 발생하므로 녹색채권 발행에 대한 이차지원이나 세제혜택 등과 같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2023년 시범사업 예산안 세부 편성내역]

구분	세부내용
녹색분류체계 적용 녹색채권 이자보전 지원 시범사업	◦ (대상) 녹색채권 발행 시범사업 참여 기업 ◦ (지원방식) 기업에서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차보전 ◦ (사업기간) 2023~2024년(2년) ◦ (지원규모) 3조 8,722억원* × 금리 지원 0.25%** × 지원을 100% = 9,680백만원 * 2018년~2021년 녹색채권 평균 발행금액 ** EU 등 세계 주요 시장의 녹색채권 그리니엄 수준(녹색채권 이자율이 일반채권에 비하여 0.2~0.3% 낮음, 옥스퍼드 주최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Goethe 대학 연구) - 건당 지원 한도를 설정하여 개별기업의 과도한 수혜를 방지하고 더 많은 발행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도 내 (Cap) 지원방식 도입(건당 3억원*) * (산출) [이자보전 9,680백만원 / 61건('21년 발행건수) = 159백만원] + [수수료 7,744 백만원 / 61건 = 127백만원] + 외부검토비용 약 1.4천만원 = 3억원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 발행 등 중견·중소기업 지원 시범사업	◦ (대상) 시범사업 참여 중소·중견기업 ◦ (사업기간) 2023~2024년(2년) ◦ (사업구조) 유동화증권 편입 기초자산으로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에 부합하는 자산 선별후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증권 발행 ◦ (지원규모) 총 4,000백만원 ① (GABS 기초자산 편입금리 지원) 1천억원 × 금리 지원 3.0%* = 3,000백만원 * 회사채 3년물 신용등급별[AAA vs. BBB-] 금리 차이 (5.951%≈6%) × 지원을 50% ② (중소·중견기업 외부검토비용) 50개사** × 녹색사모채 외부검토비용 지원(건당 20백만원) × 지원을 100% = 1,000백만원 ** 1천억원 규모의 GABS 발행시 약 50개 기업(기업당 10~30억원 정도의 회사채 발행)의 기초자산 편입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환경책임투자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환경부는 녹색채권과 관련한 국내·외 관련 시장동향과 금리 인상 추이, 2022년 연말까지의 녹색채권 발행 추이 등을 검토하여 녹색채권 발행액 규모를 재산정함으로써 동 사업을 통한 정부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녹색분류체계 적용 녹색채권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의 2023년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환경부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녹색채권 평균 발행액인 3조 8,722억원을 잠정적인 발행 규모로 산정하고, EU 등 세계 주요시장의 녹색채권 그리니엄(greenium)⁶⁾인 0.25%를 적용하여 연간 96억 8,000만원의 이차를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개별 기업의 과도한 수혜를 방지하고 더 많은 채권발행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도 내(Cap) 지원방식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제출한 ‘국내 녹색채권 발행 현황’에 따르면, 2018년 6,000억원 규모에서 2021년 12조 4,590억원 규모로 환경책임투자에 대한 관심도 증가 및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공표(20.12.29) 이후 국내 녹색채권 발행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 녹색채권 발행 현황(2018~2022.8월말)]

(단위: 억원, 개)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8	합계
발행액		6,000	14,700	9,600	124,590	46,810	201,700
종목수		3	18	10	119	59	209
발행기관		3	5	4	59	26	78
대기업 공공기관	발행기관	3	5	3	53	25	70
	금액	6,000	14,700	8,500	119,800	46,510	195,510
중견기업	발행기관			1	6	1	8
	금액			1,100	4,790	300	6,190

자료: 환경부

6) 그리니엄(greenium)이란 녹색채권의 발행 금리를 일반 채권보다 낮게 형성하여 녹색경제활동 및 녹색산업 관련 채권을 우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비록, 2022년의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⁷⁾함에 따라 8월말 기준 녹색채권 발행액이 총 4조 6,8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1% 수준으로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 참여기업의 채권 발행 예정금액(약 1조원) 등을 고려하면 2022년 연말 기준 녹색채권 발행액 규모는 6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3년의 경우에도 시장 금리의 변동성 등으로 인해 채권 발행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2050 탄소중립 정책 추진, 녹색투자 확대 등 관련 정책 및 시장동향을 고려하면 2023년도 예산안에서 산정한 규모인 3.9조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분기별 녹색채권 발행 규모(2021년 vs. 2022년)]

(단위: 억원, %)

구분	1분기 누적	2분기 누적	8월말 누적	연도말 누적
2021년	41,880	86,190	103,840	124,590
2022년	25,910	39,310	46,810	60,000 ¹⁾
전년대비(%)	61.9	45.6	45.1	48.2

주: 1) 2022년 연도말 누적은 예상 발행 규모임
자료: 환경부

따라서 환경부는 녹색채권과 관련한 국내·외 관련 시장동향과 금리 인상 추이, 2022년 연말까지의 녹색채권 발행 추이 등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녹색채권 발행액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함으로써 동 사업을 통한 정부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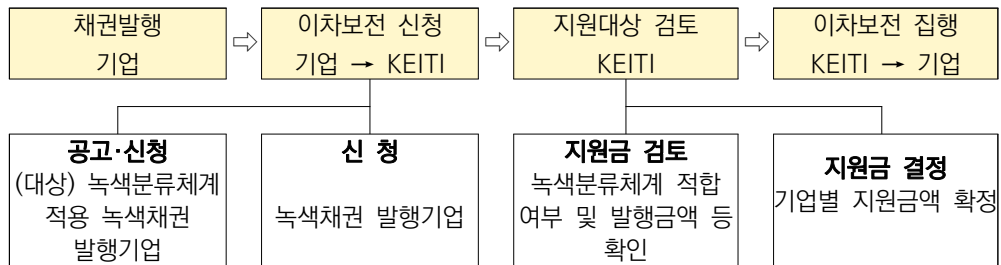
둘째, 환경부는 신규 추진하는 녹색분류체계 적용 녹색채권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과 기 추진 중인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 운영 시 금융기관에 대한 중복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2023년 신규 추진하는 녹색분류체계 적용 녹색채권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의 대상은 사업에 참여하여 녹색채권을 발행한 기업 및 금융기관으로, 기업 및 금융기

7)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 2021년 8월 0.75% → 2022년 2.50%(1.75% 증가)

관에서 녹색분류체계에 따라 녹색채권을 발행한 후 동 사업을 관리할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에 이차보전을 신청하면, 녹색분류체계 적합 여부와 채권 발행규모 등을 검토하여 대상별 지원 금액을 확정하여 지급하게 된다.

[녹색분류체계 적용 녹색채권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 추진절차]



자료: 환경부

이와 같이, 녹색채권 발행기관 및 동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에는 금융기관이 포함되는데, 금융기관의 경우 기후대응기금 중 환경부가 소관하는 별도 세부사업인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⁸⁾을 통해 녹색정책 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의 이차보전 지원 대상은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저감 등 녹색정책과 관련한 금융·대출상품을 출시하여 공모에 선정된 은행으로, 환경부는 은행에서 출시한 녹색금융상품의 금리와 일반 금융상품 금리간의 평균 이차차이 추정치를 지원하고 있다.⁹⁾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 개요 및 예산 산출내역]

- (지원대상) 탄소중립을 위한 대출상품 출시하여 공모에 선정된 은행
※ 2022년 선정기관: 산업은행('22.3월 선정, '20.4.1, 탄소스프레드 상품 출시), 신한은행 '22.6월 선정, '22.5, 상품 출시)
- (지원방식) 분기 단위로 각 은행에서 실제 기업에 대출한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사후정산 방식)
- (지원금액) 분기별 이차보전을 신청한 전체 금액 중 해당 은행에서 신청한 금액

8) 코드번호: 기후대응기금 6232-601

9)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의 2022년 예산 규모는 142억 5,000만원이며, 2023년 예산안에는 2023년 신규 이차보전액과 과년도(2022년) 이차보전 예상액을 합하여 총 24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안
◦ 5조(용자규모) × 0.57%(평균이자차이 추정치) × 50%(국비부담율) = 14,250백만원	◦ 2023년 신규 이차보전액 + 과년도 이차보전액 - 3.52조(용자규모) × 1.62%(평균이자차이 추정치) × 50%(국비부담율) × 6개월 + 과년도 이차보전 예상액(100억)¹⁾ = 24,250백만원

주: 1) 과거년도 이차보전 예상액은 '22.7월현재 대출예정액 약 2조원에 대한 '23년 이차보전예상액 100억으로 산정

자료: 환경부

비록, 대출·용자와 같은 금융상품과 채권은 그 특성이 다르긴 하지만 녹색정책 및 녹색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녹색분류체계 적용 녹색채권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과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이 일부 유사한 특성이 있으며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중복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경부에 따르면 녹색분류체계 적용 녹색채권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에서 금융기관이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은 녹색경제활동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으로 배분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금융기관에 지원한 이차보전 관련 예산이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으로 작용하도록 사업을 설계한다는 계획이나, 기존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을 통해 이차보전이 지원되는 금융상품의 지원 대상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업(대기업, 중소기업 포함)이 설치하는 온실가스 저감 설비 설·증설 등으로 실질적인 지원 대상 또한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환경부는 2023년 예산안을 통해 신규 추진하는 녹색분류체계 적용 녹색채권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과 기존에 운영 중인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중복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환경부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범사업 추진 시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동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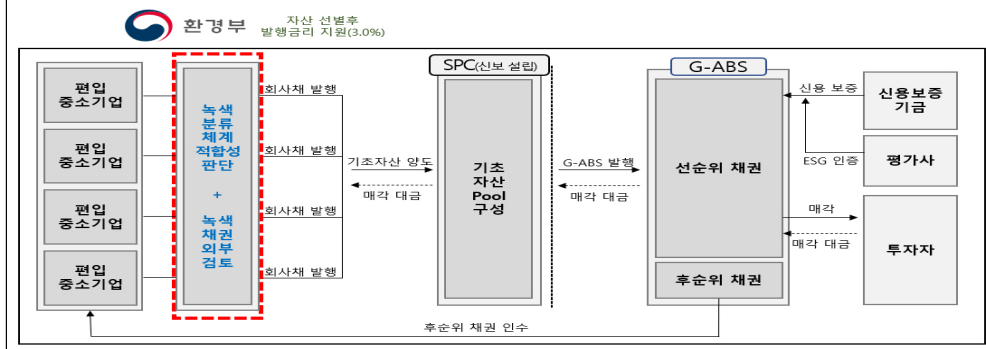
함으로써 시범사업의 효과성 및 타당성이 검증될 수 있도록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2023년 예산안을 통해 녹색채권 발행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사업과 함께 녹색자산유동화증권¹⁰⁾ 발행 후 기초자산 편입 시 적용되는 금리의 일부(50%)와 외부검토비용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시범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신용도가 낮아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므로, 녹색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사모채 발행 시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자산을 선별한 후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이 저리로 녹색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 중견·중소기업 지원 시범사업 개요]

- (개요)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범사업으로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자금 조달 촉진
 - 중소·중견기업의 신용도 보강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에서 유동화증권 발행
- (필요성) 녹색경제활동으로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나, 신용도가 낮아 채권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
- (대상) 중소·중견기업
- (사업기간) 2023~2024년(2년)
- (사업구조) 유동화증권 편입 기초자산으로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에 부합하는 자산 선별 후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증권 발행



자료: 환경부

10) 일반적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이란 부동산, 대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저당채권 및 기타 재산권 등 기업이나 은행이 보유한 유·무형의 유동화자산(underlying asset)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증권이며,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녹색분류체계에 해당하는 '녹색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을 의미한다.

최근 3년간 중소기업의 유동화증권 발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총 발행금액은 4조 8,060억원, 2021년은 5조 982억원, 2022년은 6월말 기준 2조 5,254억원 규모이며, 기업당 평균 발행 규모는 2020년 20.4억원, 2021년 24.8억원, 2022년 24.3억원으로 확인된 바, 유동화증권의 전반적인 발행 규모는 동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소·중견기업 유동화증권 발행 현황(2020~2022.6월말)]

(단위: 회, 억원, 개소, 억원/개소)

구분	2020	2021	2022. 6월말	합계
발행회수	21	24	14	59
발행금액	48,060	50,982	25,254	124,296
기초자산 대상 기업 수	2,360	2,061	1,037	5,458
기업당 평균 발행 규모	20.4	24.8	24.3	22.8

주: 기초자산에 편입되는 대상기업 세부 내역은 확인 불가

자료: 환경부

그러나 2022년 10월 현재까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녹색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따라 녹색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금용도 제한이나 외부검토, 사후보고 등 보다 엄격한 조건과 기준을 통과해야 하므로 동 시범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¹¹⁾

따라서 환경부는 2023년 신규 추진하는 동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온·오프라인 사업설명회 개최를 비롯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거나 사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시범사업의 효과성 및 타당성이 검증될 수 있도록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 11) 다만, 환경부가 기업은행을 통해 확인한 중소기업 대상 대출·투자 규모 실적에 따르면, 그린뉴딜 혁신품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지원 규모는 2020년 1.6조원, 2021년 2조원, 2022년 8월까지 1.8조원으로 환경부는 녹색분류체제와 관련한 유동화증권 수요 및 지원 가능한 규모를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녹색분류체제 경제활동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지원 실적(2020~2022.6월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1~8월
중소기업 지원금액	1.6조원	2.0조원	1.8조원

주: 1. 현행 은행 시스템상 녹색분류체제와 관련된 지원 실적은 확인 불가

2. 그린뉴딜 혁신품목은 84개 품목으로 이 중 77개 품목이 녹색분류체제에 포함

자료: 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면밀한 사업 관리 필요

가. 현 황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¹⁾²⁾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하여 환경분야에 대한 국외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국내기업에게 온실가스 감축사업비(설비 투자비, 운영비 등)를 투자하고, 확보된 감축실적을 정부가 획득하여 NDC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환경부는 2023년 예산안을 통해 103억 5,000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다.

[2023년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	-	-	10,350	10,350	순증

주: 1) 기금은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환경부

정부는 2021년 10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조정하면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2030년 기준 국외감축분 33.5백만톤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 분야에 대한 국외감축분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국제감축 시범사업을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별도의 신규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국제감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³⁾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2023년 예산안을 통해 온실가스 국제감축실적 확보 내역사업과 정부간 양자협력 체계 구축 내역사업에 총 10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기후대응기금 6131-610

2) 기후대응기금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서, 기후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계획안 심의는 기획재정부위원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3)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개념은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한 후 이를 통해 발생한 감축 실적을 이전받는 메커니즘으로, 폐기물 자원화, 태양광 보급, 친환경 모빌리티 교체, 산림흡수원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투자, 구매, 기술지원 등을 포괄한다.

는데, 먼저 ① 온실가스 국제감축실적 확보 내역사업에서는 국내기업이 추진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실적 확보 4개 사업에 21억원씩 총 84억원을 지원하고, 이에 더해 차후년도 사업 발굴을 위한 목적으로 4개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비 총 16억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② 정부간 양자협력 체계 구축 내역사업에서는 양자협정 협약 사전준비, 협약체결, 신규 감축사업 발굴, 감축사업 기술검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총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2023년 예산안 세부 편성내역]

내역사업	예산안	세부내용
감축실적 확보	10,000	- (감축실적 확보) 8,400백만원 = 4개 사업 × 2,100백만원 - (타당성조사) 1,600백만원 = 4개 사업 × 400백만원
정부간 양자협력 체계 구축	350	- (사무국 운영비용) 65백만원 = 사무국 운영 1식 × 65백만원 - (협약 사전준비) 44백만원 - (양자협약체결) 40백만원 - (공동위원회운영) 40백만원 - (신규 감축사업 발굴) 100백만원 - (감축사업 기술검토) 50백만원 = 2명 × 5개 사업 × 5백만원 - (검증결과 기술검토) 5백만원 = 1명 × 1개 사업 × 5백만원 - (국제감축사업 설명회) 6백만원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양자협정 체결을 비롯한 사업 추진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환경부는 향후 사업 지연요소가 발생하지 않고 관련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정부간 양자협정 등 국가간 협력을 통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ITMO: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파리협정 제 6.2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⁴⁾

[파리협정 제6조 주요내용]

- 제6.2조 협력적 접근법(cooperative approach) : 당사국 간의 자발적 협력 방식으로 국가간 이전 가능한 감축실적(ITMO) 발급 및 상응조정*(Corresponding Adjustment)

* 구매국과 판매국 간 이전된 감축분을 '상응'되게 조정(구매국 배출량에서 제외, 판매국 배출량에 합산)하여 구매국과 판매국 간 중복계산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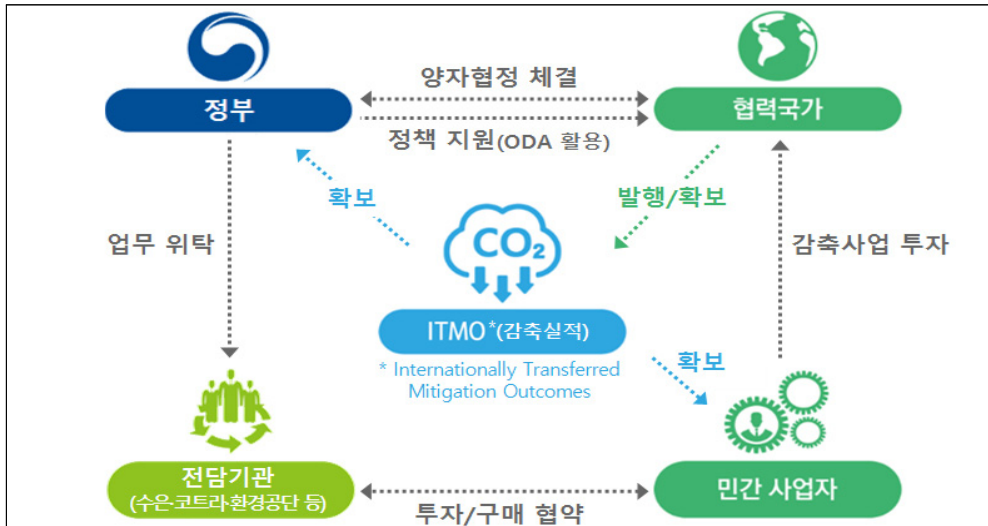
- 제6.4조 메커니즘 : 파리협정 당사국총회(CMA)가 지정한 감독기구에서 방법론, 사업 등을 승인하고 감축실적(6.4ER)을 인정·발급

* 제6.4조 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가 유치국가와 상응조정 실시

자료: 환경부

동 사업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사업수행자(공공·민간)는 방법론 개발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국내외 승인을 획득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수행 결과 발생한 감축실적을 이전받으며, 정부는 사업수행자에게 지원한 비용에 상응하는 감축실적을 확보하여 온실가스 국제감축량에 활용하는 구조이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메커니즘]



자료: 환경부

4) 국내법상으로는 정부가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 국제감축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국제감축실적을 국가 NDC 달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38조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각 부문별로 관장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환경부는 폐기물·물관리 부문의 국제감축사업을 소관하고 있는바, 2023년 예산안 편성 시 기존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타당성조사를 완료한 매립가스 포집 및 소각시설 지원 사업을 기준으로 표준 사업비를 산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환경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매립지 매립가스 회수 소각·발전 사업의 평균 공사기간은 2년, 운영기간은 10년이며, 시설투자비 52.3억원과 운영비 37억원을 투입하여 연간 약 47,000톤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확보하는 사업을 표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⁵⁾ 정부는 “감축실적 확보” 내역사업과 관련하여 시설투자비의 80%에 해당하는 약 42억원에 대하여 2년간(2023년 21억원, 2024년 21억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⁶⁾

[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표준사업비 산출근거]

구분		매립지 감축사업 분석 결과	표준 사업(안)
표준 사업	연평균 폐기물 매립량(천톤)	275~483	370
	사업 기간(년)	10	10
	시설 투자비(억원)	50~55	52.3
	운영비(O&M)(억원)	28~48	37
	총 온실가스 감축량(천tCO ₂ eq)	254~614	471
	연도별 감축량(tCO ₂ eq)	25~61	47
	수익(억원)	135~195	157
정부	정부지원비(억원, 80%이내)	40~44	41.9
	정부지원/총 사업비 비율(배분 비율, %)	40.8~52.7	47.2
	정부 감축실적 확보량(천tCO ₂ eq)	103~296	229
	연도별 정부 감축실적 확보량(천tCO₂eq)	10~30	23(22,905톤)
	톤당 감축비용(천원/tCO ₂ eq)	14~38	23(22,624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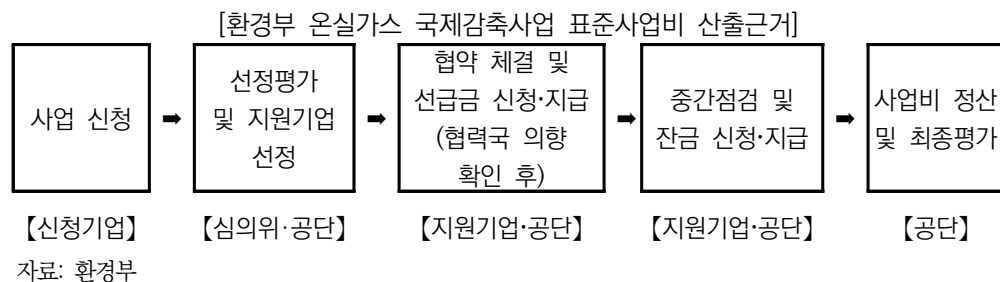
자료: 환경부

5) 실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발생하는 연도는 감축설비 설치 공사 및 협의체 승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정부지원금이 지급된 연도로부터 2년 후에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6) 본 분석에서는 타당성조사비에 비해 예산 규모가 큰 감축실적 확보 사업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절차상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간 협정이 체결되어야 하는바, 향후 동 사업의 지연요소가 발생하지 않고 관련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 관리지침」(22.3) 및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 공고문”을 살펴보면, 기업 등이 국제감축사업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 금액을 확정하고, 최종 선정된 기업은 동 사업의 관리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시범사업 추진 및 국제감축실적 분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후 사업 추진 시 확정된 지원 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하고, 향후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여 계속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해 잔금을 지급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예산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국 관련 부처로부터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른 양자협력 및 시범사업에 대한 협력의향이 확인되어야 하는바, 양자협정 체결 및 사업 추진가능성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다만,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국제감축 시범사업 공모 과정에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으로 4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특히 기후변화 양자협정을 기 체결한 국가인 베트남을 대상으로 한 바이오매스 연료전환 사업(2개)의 경우, 약 5개월이 소요되는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본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022년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 선정결과]

연번	시행국가	사업명	기업	지원유형
1	베트남	농업부산물 연료를 활용한 화석연료 사용 산업용 보일러의 연료대체 사업	한국남부발전	예타
2	베트남	왕겨 바이오매스 발전 및 부산물 자원순환망 구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주)TSP컨소시엄	
3	베트남	베트남 Khan Son 매립지 LFG 발전사업	(주)제일엔지니어링	
4	키르기스스탄	소수력 발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자료: 환경부

또한, 환경부는 인도네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로 한 국제감축사업의 경우, 이미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으므로 향후 양자협정이 체결된다면 곧바로 본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몽골 국제감축 시범사업’⁷⁾의 실제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5월 동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으나 2021년 12월 한-몽골 환경부 간 사업의향서 교환, 2022년 5월 최종적인 양자협정 체결까지 장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본사업이 지연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한-몽골 국제감축 시범사업 추진경과]

- ('20.9) 공단-울란바토르시간 “몽골 울란바토르시 매립장(NEDS) LFG 활용방안 수립 타당성조사” 업무협약 체결
- ('21.5) 폐기물 성상조사, 매립가스 성분 및 발생량 측정 등 타당성조사 완료
- ('21.10) 공단-울란바토르시간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1.11~'22.5) 매립지 가스연소시설(Flare stack) 설치 기본설계 완료
- ('21.11) COP26계기 한-몽 환경장관급 회의 통해 매립지 감축사업 논의
- ('21.12) 한-몽 환경부 양자협력 및 시범사업 추진 의향서 교환
- ('22.5.3) 한-몽 환경부 ‘파리협정 제6조 협력적 접근에 관한 이행약정’ 체결
- ('22.6.3) 공단, 공사, 울란바타르시간 기본설계 설명 및 향후 계획 화상 논의

자료: 환경부

7) 환경부는 2020년부터 몽골 울란바토르시 Narangiin Enger(NE)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포집·소각하여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확보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2년 8월말 기준 양자협정이 체결된 국가는 베트남('21.5월)이 유일하며 나머지 17개국의 경우 양자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양자협정 체결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외교부) 양자협정 추진현황]

구 분	국가명
既체결	베트남('21.5월)
추진 중 (17개국)	인니, 인도, 칠레, 태국, 몽골, 라오스, 우즈베크, 사우디,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 필리핀, 방글라데시, 미얀마, 스리랑카, 모로코, UAE

자료: 환경부

이와 같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양자협정 체결 및 사업 추진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존재하므로, 환경부는 사업 지연요소가 발생하지 않고 관련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⁸⁾

8) 예를 들어, 양자협정 체결 이전이라도 상대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사업의향서(LOI, Letter of Intend)를 받아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파리협정” 제6.4조 메커니즘에 따라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축사업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등 지원사업 형태를 다각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파리협정 당사국총회(CMA)의 감독기구에서 방법론·사업을 승인하고 감축실적(6.4ER) 인정받으며, 사업자가 상대국가와 상응조정 실시

가. 현 황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사업¹⁾²⁾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증가한 폐플라스틱의 안정적인 처리 및 자원순환을 위해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여 연료유, 석유화학제품의 원료 등을 생산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원(국고보조를 50%)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환경부는 2022년 기금운용계획 수정계획안 3억 5,000만원 대비 14억 5,000만원(414.3%) 증액된 18억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	1,000	350	1,800	1,450	414.3

주: 1) 기금은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환경부

“2021 환경통계연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폐플라스틱 폐기물은 하루에 1만2052톤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재활용된 물량은 하루 6,729톤, 재활용률은 55.8%에 그쳤으며, 나머지 잔재물은 시멘트 소성로로 투입되거나 단순 소각·매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폐플라스틱은 열분해³⁾ 처리 과정을 통해 열분해유를 생산할 수 있으며, 생산된 열분해유는 일반 연료나 석유화학제품의 원료, 수소 개질 등에 활용이 가능한 바, 환경부는 2021년 6월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처리 및 재활용 고도화를 통해 폐기물 분야의 탄소중립 추진을 지원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기후대응기금 6131-306

2) 기후대응기금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서, 기후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계획안 심의는 기획재정부위원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3) 열분해란 산소가 없거나 희박한 조건에서 직·간접적인 가열을 통해 가스, 오일 등으로 분해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한다는 목표 하에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규모를 현행 연간 1만톤에서 2025년 31만톤, 2030년에는 90만톤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⁴⁾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방안 내 열분해 처리 목표]

(단위: 만톤/년, 투입량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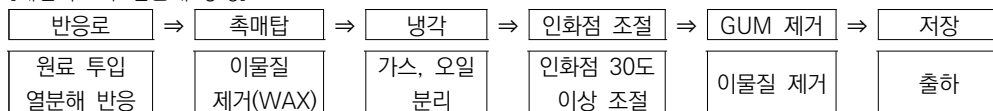
구 분	2020	2025	2030
계	1.1	31	90
지자체	-	4	20
석유/화학 업계	-	25	60
재활용 업계	1.1	3	10

주: 폐플라스틱 열분해 비중 목표: ('20년) 0.1% → ('25년) 3.6% → ('30년) 10%

자료: 환경부,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방안”, 2021.6.

특히, 환경부는 2022년부터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사업을 신규 추진함으로써 폐플라스틱 열분해시설을 설치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선도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 예산에서는 신규 4개소에 대한 타당성조사비 및 설계비 등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예산안에서는 올해 추진 중인 사업 중 1개소에 대한 공사비 일부(연부율 40%)인 13억원에 더해, 신규사업 2개소에 대한 설계비 5억원 등 총 18억원을 편성하였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공정]



자료: 환경부

4) 또한, 환경부는 2022년 3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로 제조한 열분해유가 원유를 대체하여 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소각시설로 규정된 열분해시설을 재활용시설로 변경하고 투입된 폐플라스틱 중량의 50% 이상이 열분해유로 회수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2023년도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사업 예산안 세부 편성내역]

구분	예산액	산출내역
2022년 예산	1,000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1,000백만원 - 신규사업(4개소): 4개소 × 500백만원(타당성조사비 및 설계비) × 50%(보조율) = 1,000백만원
2023년 예산안	1,800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1,000백만원 - 계속사업(1개소): 2,600백만원(공사비, 연부율 40%) × 50%(보조율) = 1,300백만원 - 신규사업(2개소): 2개소 × 500백만원(설계비) × 50%(보조율) = 500백만원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환경부가 2022년 신규 추진한 사업의 지자체별 추진현황 및 집행 부진상황을 고려할 경우, 2023년 예산안에 반영한 계속사업 공사비 및 신규사업 설계비 예산의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사업의 예산의 규모 및 집행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022년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사업을 신규 추진하면서 지자체 공모 및 전문가 평가단의 선정평가를 통해 총 4개 지자체를 선정(22.1월)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별로 공공열분해시설이 설치될 부지 선정 과정과 지방비 확보(추경)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들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2022년 예산에 편성한 타당성조사 및 설계비 예산의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2023년도 예산안 심의과정 중 동 사업 예산의 규모 및 집행가능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2022년 1월 황성군, 구미시, 춘천시(강원도), 인천 서구 등 4개 지자체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였다.⁵⁾

5) [지자체별 공공열분해시설 구축 계획]

구분	황성군	구미시	춘천시(강원도)	인천 서구
처리용량	0.1만톤/년	0.5만톤/년	0.5만톤/년	0.5만톤/년
총사업비(예산액)	120억원	150억원	150억원	150억원

자료: 환경부

그러나 사업 공모과정에서 각 지자체별 부지 확보 가능성이나 사업 추진계획 등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별로 별도의 부지선정 절차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이후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절차 등에 추가적인 기간이 소요되어 순차적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환경부는 2022년 9월 27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당초 지자체별로 2억 5,000만원씩 총 10억원으로 편성된 예산을 감액 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연내에 설계 용역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한 구미시와 횡성군은 각각 1억 5,000만원과 1억원으로 감액하였으며, 춘천시(강원도)와 인천 서구 등 2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만 추진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5,000만원으로 각각 감액 조정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2022년도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사업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당초 계획	수정 (‘22.9월)	교부액 (‘22.9월)	실집행액 (‘22.9월)	추진단계
합계	1,000	350	200	14	
횡성군	250	100	50	14	-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내 설치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22.6.~’23.1.)
구미시	250	150	50	-	- 환경자원화시설 부지내 설치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22.8.~’22.12.)
강원도 (춘천시)	250	50	50	-	- 소각시설이 위치한 환경공원 부지내 설치 - 예산 확보 후 타당성조사 추진 (‘22.10~’23.3.)
인천 서구	250	50	50	-	- 수도권매립지 내 기타 잔여부지 확보 완료(‘22.4) - 추경(‘22.9월) 이후 타당성조사 추진 (‘22.10~’23.3.)

자료: 환경부

그러나 2022년 6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1,400만원을 실집행한 횡성군을 제외하면 2022년 9월 기준 실집행액이 전무한 실정으로, 구

미시는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춘천시(강원도)와 인천 서구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인 바, 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감액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의 실집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환경부는 2023년 예산안을 통해 ① 구미시에 대해서는 공사비 일부(연부율 40%)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나, 실제로 2022년 12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이후 설계 공모절차 및 설계 완료까지 약 7~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설계가 완료된 이후 추진되는 공사 계약 발주 및 체결 일정(약 1~2개월) 등을 고려할 경우 2023년 10월이 되어서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2023년 예산안에 제시한 공사 연부율(40%) 및 공사비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경부는 ② 2023년 신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연초('23.1월)에 공모 절차를 거쳐 2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연내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⁶⁾

하지만 2022년 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2023년으로 이월되어 완료되는 상황인 바, 2023년 신규사업 또한 부지 확보 과정, 지방비 확보 절차를 비롯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과정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어 연내에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므로, 2023년 신규 사업(2개소)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관한 예산(수정계획안 기준 개소당 5,000만원)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⁷⁾

따라서 환경부가 2022년 신규 추진한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집행 부진상황을 고려할 경우, 2023년 예산안에 반영한 계속사업 공사비 및 신규사업 설계비 예산의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산의 규모 및 집행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환경부에 따르면, 2023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22.5) 결과, 목포시, 춘천시, 문경시, 순천시, 김해시 등 5개 지자체에서 사업 참여의사를 제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실제 공모과정에서 어느 지자체가 선정될 것인지,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가 부지 확보계획을 비롯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인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7) 다만, 2022년 9월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설계비가 삭감된 사업(춘천시, 인천 서구 2개소)은 2023년 상반기에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어 설계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2023년 신규사업(2개소)에 반영된 설계비(개소당 2억원)를 2022년 계속사업에 대한 설계비로 조정하여 편성하는 방안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립공원 기반시설 전면개선 사업 대상 선정기준 및 향후 추진계획의 적절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¹⁾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하는 21개 국립공원의 보호·보전,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국가지질공원 인증 등을 통하여 국민의 보건 및 여가생활 향상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추경예산 2,256억 8,100만원 대비 607억 3,800만원(26.9%) 증액된 2,864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	233,647	225,694	225,681	286,419	60,738	26.9
국립공원사업	230,664	217,212	217,199	284,953	67,754	31.2
- 공원시설사업	확인중	128,857	128,857	178,806	49,949	38.8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 사업을 통해 21개 국립공원 구역의 자연보호 및 공원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진입도로, 공원사무소, 대피소, 주차장, 공중화장실, 탐방안내소 등 기반시설의 신설 또는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립공원 탐방문화를 확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야영장이나 생태탐방원 등 체류인프라 조성 및 탐방로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2023년 예산안을 통해 기존에 운영 중인 국립공원 기반시설 중 건립연도가 오래되어 노후도가 심하고 관광객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시설을 대상으로 ‘전면개선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831-301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2023년 국립공원의 대표적인 기초편의시설 및 휴양·이용시설인 주차장과 야영장, 공중화장실, 탐방안내소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신규 조성 및 유지보수 사업(총 435억원)에 더해 ‘전면개선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① 주차장 전면개선 사업은 10개소에 176억 6,400만원, ② 야영장 전면개선 사업은 3개소에 30억원, ③ 공중화장실은 철거후 신축 사업 7개소에 44억 8,000만원 및 전면개선 사업 48개소에 192억원 등 총 236억 8,000만원, ④ 탐방안내소 전면개선 사업은 4개소에 37억 5,300만원 등 총 480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공원시설사업 중 주요사업 예산 세부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유형	구분	개소	2023 예산안	비고
국립공원사업 (공원시설사업)	주차장 정비	주차장 조성(기존)	2	500	
		주차장 정비(기존)	13	4,082	
		주차장 정비(전면개선)	10	17,664	
		소계	25	22,246	
	야영장 정비	야영장 조성(기존)	4	12,989	계속3, 신규1
		야영장 정비(기존)	29	16,885	
		야영장 정비(전면개선)	3	3,000	
		소계	36	32,874	
	공중화장실 정비	화장실 신축(기존)	4	1,839	계속4
		화장실 신축(전면개선)	7	4,480	
		화장실 정비(기존)	16	2,428	
		화장실 정비(전면개선)	48	19,200	
		소계	75	27,947	
	탐방안내소 정비	탐방안내소 신축(기존)	2	4,010	계속2
		탐방안내소 정비(기존)	4	767	
		탐방안내소 정비(전면개선)	4	3,753	
		소계	10	8,530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국립공원 기반시설 전면개선 사업은 각 유형별 대상 선정기준 및 향후 연도별 사업 추진계획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환경부는 2023년 예산을 통해 사업 추진이 시급히 필요한 대상에 한하여 예산을 투입하는 한편, 2024년 이후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의 조성연도나 노후화 정도, 현장여건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연도별 대상 시설, 물량 등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2023년 신규로 편성한 국립공원 기반시설 전면개선 사업의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계획²⁾에 기 반영된 범위 내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특히 주차장, 공중화장실에 대한 전면개선 사업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³⁾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신축하거나 전면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므로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적어 연내에 설계 및 공사가 가능한 사업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⁴⁾

이에 환경부는 주차장 전면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1개소당 설계비와 공사비, 시설부대비 및 대행수수료 등에 소요되는 평균 사업비 약 17.6억원을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의 경우, 철거 후 신축 사업은 개소당 6.4억원, 전면 리모델링은 개소당 4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야영장 사업과 탐방안내소는 사업 대상의 연차별 공정률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

2) 「자연공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공원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고 알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결정, 공원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철거·이전, 그 밖의 행위 제한 및 토지 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3) 환경부에 따르면, 전면개선 사업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계획 변경이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행정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건축허가 등 관련 개별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치면 추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4) 다만, 야영장과 탐방안내소는 각 사업 대상별로 연차별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안에는 설계비와 1차년도 사업비 일부가 편성되었다.

[2023년도 공원시설사업 중 주요사업 예산 세부 편성내역]

(단위: 개소, 백만원)

유형	구분	개소	평균 사업비 (2023년 반영분)	2023 예산안
주차장 정비	주차장 정비(전면개선)	10	1,766	17,664
야영장 정비	야영장 정비(전면개선)	3	1,000 ¹⁾	3,000
공중화장실 정비	화장실 신축(전면개선)	7	640	4,480
	화장실 정비(전면개선)	48	400	19,200
탐방안내소 정비	탐방안내소 정비(전면개선)	4	938.3 ¹⁾	3,753

주: 1) 사업 대상의 연차별 공정률 등에 따라 총사업비 차이가 있으며, 2023년 예산안에 편성된 평균 예산 기준임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성

하지만 환경부 및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기반시설 전면개선 사업을 다년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주차장 개선 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립공원 직영 주차장 31개소를 대상으로 547억 5,000만원, 야영장 개선 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712억 2,000만원,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철거 후 신축 및 전면 리모델링)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773억 6,000만원, 탐방안내소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448억 9,900만원 등 총 2,482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인 바,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 이전에 동 사업의 대상 선정 기준 및 근거,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원 기반시설 전면개선 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주차장 전면개선	17,664	17,660	19,426	-	-	54,750
야영장 전면개선	3,000	13,300	24,300	13,780	16,840	71,220
공중화장실 전면개선	23,680	18,400	14,080	11,600	9,600	77,360
탐방안내소 전면개선	3,753	8,514	9,350	8,968	14,314	44,899
합 계	48,097	57,874	67,156	34,348	40,754	248,229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성

먼저, ① 사업 대상 선정 기준 및 근거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주차장 전면개선 사업의 경우, 환경부 및 국립공원공단이 제출한 2023년 사업대상 선정안에 따르면, 사업대상 10개소는 1980~90년대에 건립된 주차장으로 선정되었으나, 지리산 주차장 2개소, 내장산 주차장 3개소, 오대산 주차장 1개소 등의 경우, 2023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주차장에 비해 설치년도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바,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시 사업 대상 선정 기준과 근거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차장 전면개선 사업 대상지 선정 계획안(2023) 및 향후 추진계획(2024~2025)]

2023년 계획안			향후 추진계획(2024~2025)			
공원명	주차장명	설치년도	공원명	주차장명	설치년도	추진연도
지리산	중산리	1996	지리산	화엄사	1986	2024
	달궁	1985		피아골	1987	2025
	연곡사	1997	내장산	내장1	1977	2024
한려해상	북곡저수지	1996		내장2	1991	2024
내장산	남창	1996		내장3	1990	2025
주왕산	상익	1989	오대산	소금강1	1998	2025
북한산	정릉	1999				
	북한산성1	1999				
소백산	삼가	1997				
다도해해상	임포	1996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음으로, ② 연도별 사업 추진계획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주차장 전면개선 사업의 경우 한려해상은 2014년과 2016년 건립된 주차장 2개소, 오대산은 2019년 건립 주차장 1개소, 다도해는 2011년과 2012년 건립된 주차장 2개소, 치악산은 2016년 건립 주차장 1개소, 월악산은 2018년에 건립된 주차장 1개소 등 각 국립공원별로 2000년대 후반이나 2010년대에 건립된 주차장 또한 2024년 이후 전면 개선 사업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차장 전면개선 사업 연도별 추진계획 중 설치 후 경과기간이 짧은 대상 현황]

공원	주차장명	설치년도	추진계획 포함 여부	
			2024년	2025년
한려해상	금산분소	2016	○	
	연화	2014	○	
오대산	소금강산2	2019	○	
다도해	팔영	2011		○
	팔영산야영장	2012		○
치악산	황골	2016		○
월악산	옥순봉구담봉	2018	○	
북한산	송추 제1주차장	2008	○	
	송추 제2주차장	2013	○	
소백산	초암	2013		○
변산	내변산	2012	○	
	내소사	2009		○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둘째, 야영지 전면개선 사업은 대체로 조성연도가 오래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2013년 조성된 학동 야영장이나 2007년 조성된 구룡 및 내원 야영장, 2008년 조성된 덕동 야영장, 2009년 조성된 학암포 야영장, 2010년 조성된 몽산포 야영장 등 비교적 조성된 시기가 가까운 야영장 또한 향후 사업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다.

셋째, 공중화장실과 탐방안내소 전면개선 사업의 경우, 시설의 노후화 정도를 사업 대상 선정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연도별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물량 산정 기준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또한, ③ 전반적인 사업 규모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기존 공원시설 유지보수사업에 전면개선 사업을 신규 포함하여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최근 3년간 예산액 208억 9,600만원 대비 대폭 증액(300.1%)된 837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예산 규모가 큰 전면개선 사업이 신규로 반영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2023년 사업추진 시 사전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 및 면밀한 공정관리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사전에 강구하여 사업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⁵⁾

5) 아울러, 동 사업은 주차장 및 화장실과 같은 국립공원 내 기반시설에 대한 전면개선 공사로서, 공사기간 동안 탐방객들의 이용불편이 따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공사안내 및 단계적 공사 시행방안 검토 등을 통해 탐방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원시설 유지보수사업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정부안
공원시설유지보수	19,933	20,775	21,981	83,745 (전면개선:48,097)
주차장	1,930	2,282	3,186	21,746 (전면개선:17,664)
공중화장실	2,354	2,612	2,260	26,108 (전면개선:23,680)
야영장	6,070	5,451	4,451	19,885 (전면개선:3,000)
탐방안내소	425	874	1,358	4,520 (전면개선:3,753)
기타	9,154	9,556	10,726	11,486

자료: 환경부

이와 같이, 국립공원 기반시설 전면개선 사업은 대상 선정기준 및 근거, 향후 연도별 사업 추진계획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환경부는 2023년 예산을 통해 시급히 사업 추진이 필요한 대상에 한하여 예산을 투입하는 한편, 2024년 이후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의 조성연도나 노후화 정도, 현장여건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연도별 대상 시설, 물량 등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사업¹⁾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환경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363억 8,800만원 대비 433억 4,200만원(119.1%) 증액된 79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예산	추경(A)		B-A	(B-A)/A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131,302	36,644	36,388	79,730	43,342	119.1
야생동물 구조 및 질병관리	28,206	6,419	6,268	28,939	22,671	361.7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환경부

최근 메르스(2015년)와 코로나19(2020년) 등 전세계적으로 야생동물로부터 유래한 신종 인수공통감염병 등 각종 질병이 계속하여 발병되어 인명적·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²⁾ 정부는 2020년 6월 3일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21년 5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4.5.19. 시행)³⁾을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야생동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831-309

2) 질병관리청은 20세기 이후 발생한 신종 감염병의 60% 이상이 동물유래, 그 중 약 72%는 야생동물로부터 유래한 감염병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다(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코로나19 등 동물유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해외 야생동물 관리 강화”, 2020.6.3.).

3)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8(수입검역)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야생동물검역관의 검역(이하 “수입검역”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물 질병의 해외유입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특히,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14)은 야생동물 검역 업무를 검역시행장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부는 2021년 일반용역비 예산 일부를 활용하여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였고, 2022년 예산에서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 사업의 설계비 예산을 반영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⁵⁾ 또한, 2023년 예산안에서는 토지보상 및 매입에 필요한 건설보상비 예산 250억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 사업 예산안 세부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비목	2022년	2023년 예산안
기본조사설계비	420-01	403	-
실시설계비	420-02	800	-
감리비	420-04	7	-
건설보상비	410-00	-	25,000
소 계		1,210	25,000

자료: 환경부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하는 즉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항·항만 등을 관할하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수입검역을 받아야 한다.

② 야생동물검역관은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이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입검역을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본조신설 2021.5.18.> <시행일: 2024.5.19.>

4)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1(검역시행장)

① 수입검역은 야생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이하 “지정검역시행장”이라 한다)에서도 검역을 할 수 있다.

1. 수입검역 대상 야생동물 또는 물건을 야생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2. 국내의 방역상황 등에 비추어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가 확산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때

②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 대상·절차, 시설·장비 등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본조신설 2021.5.18.> <시행일: 2024.5.19.>

5)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 사업의 대략적인 총사업비는 448억원 규모이며,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확정될 예정이다.

나. 분석의견

환경부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 중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부지 사용승인 및 토지 매입 관련 협의 상황을 반영하여 2023년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021년 일반용역비 예산 일부(4,720만원)를 활용하여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검역시행장 후보지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예정지로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지가 선정된 결과를 반영하여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공공건축 심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 사업 후보지 선정결과]

구분	세부내용
위치	인천시 영종도 중부(중구 운서동 3225)
공시지가(원/㎡)	203,000
소유자	법인(인천국제공항공사)
용도지역	자연녹지
관련 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검토 내용	- 인천국제공항공사 내부계획상 지원시설용지임 - 자연녹지지역으로 검역시행장 도입에 법적 제약이 없으며 향후 건폐율 40%까지 조성 가능 - 활주로 인접 소음문제 가능성 있음
선정 여부	최종선정

자료: 환경부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 입찰공고를 추진하여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설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며,⁶⁾ 설계 용역과 병행하여 토지보상 및 매입 관련 절차를 추진하여 2023년 8월내에 토지보상비 지급을 완료한 후 공사 발주 및 계약 절차를 진행하고 2023년 9월부터는 공사 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6) 이에 따라, 2022년 예산으로 편성한 설계비 예산 12억 1,000만원은 10월 현재까지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 사업 추진절차별 소요기간 및 향후 추진계획]

	추진내용	추진일정	소요	비고
계획 단계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기본계획)	'21.11~'22.06	8개월	부지 선정 등 조사·검토
	국가 예비타당성 조사	-	(12개월)	(총사업비 500억 이하 사업으로 제외)
	부지 선정		-	인천공항공사 소유부지(인천 영종도)를 최종 부지로 결정 및 토지 매입을 위한 협의
	건축계획용역 계약	'22.09		
	공공건축 심의	'22.09~'22.11	3개월	공공건축 심의(건축기획의 적정성) (부처 내 공공건축심의위원회(5명) 구성하거나 국토부 건축위원회에 심의 의뢰)
설계 단계	설계발주·평가·계약	'22.11~'22.12	1개월	입찰자 평가 및 사업자 선정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2.12~'23.08	9개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1~2개월) 필요
	토지보상 및 매입			감정평가 등을 거쳐 약 5개월 필요 ※ (매입 절차) 공사 내부 관련 부서 의견조치 → 감정평가 → 내부심의 → 이사회 승인
공사 단계	공사발주·계약	'23.08~'23.09	1개월	공사 계약
	사업 시행	'23.09~'24.05	9개월	단계별 공사 시행
	준공 및 준공확인	'24.05	-	-

자료: 환경부

하지만 환경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검역시행장 건립 예정지에 대한 토지매입 보상비 250억원을 편성하였는바, 동 사업의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부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23년 예산안을 통해 건설보상비(410-00목) 예산 25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환경부가 사업 추진과정에서 산출한 실제 토지보상비 규모와 차이가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총 3차에 걸친 후보지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예정지로 선정된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지 면적(40,000㎡)과 해당 지역의 공시지가(203,000원)를 기준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구”(2021, 한국개발연

구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별·지목별 보상배율의 평균치(2.205배)를 적용하여 총 179억 500만원의 부지보상비를 산출하였다.⁷⁾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 토지보상비 산출내역]

(단위: ㎡, 원, 배, 백만원)

구분	소유	면적	공시지가	배율	부지보상비 (A)	2023년 예산안(B)	차액 (B-A)
중구 운북동 3225	인천 국제공항공사	40,000	203,000	2.205	17,905	25,000	7,095

자료: 환경부

하지만 2023년 예산안에서는 부지보상비 산출결과를 71억원 가량 상회하는 2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관련 예산이 과다 편성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환경부는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설 부지와 관련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공항공사 소유의 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추진방향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환경부에 회신한 공문(인천국제공항공사 재무처-10095, 2022.8.8.)에 따르면 해당 토지 제공은 “유상임대” 방식이고, 부지 매각에 대해서는 추후 공항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으며, 2022년 10월 현재까지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는 실정이다.

만약, 해당 부지에 대한 사용이 유상임대 방식으로 확정될 경우, 해당 필지(인천시 중구 운서동 3225)의 2022년 개별공시지가(203,000원)와 임대면적(40,000㎡), 임대료율(10%)을 적용하면 연간 임대료는 약 8억원으로 산정되는바, 2023년 예산안에는 건설보상비가 아닌 임대료 예산(약 8억원)과 향후 연내에 추진 가능한 공사비 일부(약 97억원) 등에 관한 예산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7) 다만, 구체적인 토지보상비는 추후 설계 단계에서 감정평가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 사업 2023년 임대료 및 공사비 소요액 추계]

구분	산출식	산출내역
임대료	공시지가 × 면적 × 임대료율	$203,000\text{원}/\text{m}^2 \times 40,000\text{m}^2 \times 10\% = 812\text{백만원}$
공사비	총 공사비 × 연부율	$27,600\text{백만원} \times 35\%^{1)} = 9,660\text{백만원}$
합 계		10,472

주: 1) 환경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2023년 9월 공사 착공을 가정하여 연부율 35%로 가정
 자료: 환경부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환경부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 중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부지 사용승인 및 토지 매입 관련 협의 상황을 반영하여 2023년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입찰 담합 조정결정금 수익을 고려한 4대강 사업 부채 상환계획 마련 방안 검토 필요

가. 현 황

수자원공사지원 사업¹⁾은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투자(7조 9,780억원)를 위한 투자비 채권 발행 조달에 따른 투자원금 및 금융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서 전년과 동일한 3,400억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수자원공사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수자원공사지원	340,000	340,000	340,000	340,000	0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환경부

2009년 9월 25일 제35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따라 수자원공사가 대규모 국책 사업인 4대강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총사업비 15.4조원 중 국가재정으로 7.4조원을 부담하고, 8.0조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자체 사업으로 우선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4대강 사업 주요 내용]

- 총사업비: 15.4조원 (재정 7.4조원, 한국수자원공사 8.0조원)
- 보 건설: 16개 (낙동강 8개, 한강 3개, 금강 3개, 영산강 2개)
- 퇴적토 준설: 4.59억m³(낙동강 3.47억m³, 한강 0.44m³, 금강 0.42m³, 영산강 0.26m³)
- 최소 수심: 낙동강 4~6m, 한강 3m, 금강·영산강 2.5~3m

자료: 감사원,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 분석」, 2018.7.4.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일반회계 5131-309

특히,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을 추진과정에서 채권 발행을 통해 7조 9,780억원의 사업비를 조달하였는바, 정부는 2015년 9월 24일 제72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4대강 사업과 관련한 한국수자원공사 재정 지원 방안 및 투자 상환 일정을 결정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자구노력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부족분에 대하여 보완적으로 국가재정을 통해 지원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채무 원금(7조 9,780억원)에 대하여는 발전·단지사업, 친수사업 등의 순이익 등을 활용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70% 수준(5조 5,480억원)을 분담하고, 정부가 30%(2조 4,300억원)를 분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제72차 국가정책조정회의(2015.9.24.) 주요 내용]

- 先 수공 자구노력 부채상환, 後 부족 부분은 보완적 재정지원
- 수공 채무원금에 대해 수공 70%, 정부 30% 분담(금융비용은 정부가 지원)
 - (수공) 발전·단지사업, 친수사업 등 순이익을 활용 5.6조원 상환('15~'36년, 22년간)
 - (정부) 수공의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 2.4조원 지원('16~'31년, 16년간)
- * 수공이 채무원금 상환을 시작하면 매년 정부 이자지원 부담이 감소하게 되므로 이자감소 부분을 부채원금 상환 지원에 활용

자료: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구체적으로, 2015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 계획 상 부채 원금 7조 9,780억원 과 발생 이자 2조 8,530억원 등 총 10조 8,310억원 중 원금만을 부담하는 한국수 자원공사의 부담분이 5조 5,480억원으로 51%의 비중을 차지하며, 정부 부담분은 5조 2,830억원으로 4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72차 국가정책조정회의(2015.9.24.) 상 4대강 부채상환 세부 분담 계획]

(단위: 억원)

구 분		한국수자원공사	정 부	계
분담 규모	원 금	55,480 (70%)	24,300 (30%)	79,780
	이 자	-	28,530	28,530
	계	55,480 (51%)	52,830 (49%)	108,310
분담기간		'15~'36년(22년)	'16~'31(16년)	* 이자는 36년까지 지원

자료: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나. 분석의견

환경부는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의 발생 이익 및 4대강 건설사 담합 소송에 따른 법원 조정결정금 2,364억원 등을 고려하여 한국수자원공사 부채 상환계획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72차 국가정책조정회의('15.9.24.)에서 마련된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간의 4대강 부채 상환 세부 분담 계획을 살펴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해 연간 3,400억원 규모로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2031년 이후에는 지원 규모가 점차 감소하여 2036년까지 총 5조 2,83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부채 상환 세부 분담 계획]

(단위: 억원)

구 분		합 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총 계		108,310	7,525	5,145	5,145	5,205	5,715	5,715	5,985	6,115	6,155	6,115	5,785
정부	소 계	52,830	0	3,400	3,400	3,400	3,400	3,400	3,400	3,400	3,400	3,400	3,400
	〈원 금〉	24,300	0	390	580	730	870	1,080	1,350	1,480	1,630	1,780	1,940
	〈이 자〉	28,530	0	3,010	2,820	2,670	2,530	2,320	2,050	1,920	1,770	1,620	1,460
수공	〈원 금〉	55,480	7,525	1,745	1,745	1,805	2,315	2,315	2,585	2,715	2,755	2,715	2,385
구 분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총 계			6,015	6,015	6,015	6,025	6,025	2,455	2,095	2,035	1,975	2,570	2,480
정부	소 계		3,400	3,400	3,400	3,400	3,400	710	350	290	230	170	80
	〈원 금〉		2,090	2,260	2,430	2,610	2,790	290	0	0	0	0	0
	〈이 자〉		1,310	1,140	970	790	610	420	350	290	230	170	80
수공	〈원 금〉		2,615	2,615	2,615	2,625	2,625	1,745	1,745	1,745	1,745	2,400	2,400

자료: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이에 2015~2021년 동안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상환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까지 원금은 2조 5,934억원을 상환하였으며 이자는 1조 3,443억원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제72차 국가정책조정회의 계획 상 금융비용 감소에 따른 정부 이자 지원

부담 감소분은 부채원금 상환에 활용하도록 결정하였는바, 2015~2021년간 최초 계획 대비 금융비용 감소액 1,957억원의 일부를 부채 상환에 활용하여 정부 부담 원금은 최초 계획 대비 899억원이 추가로 상환되었다.

또한, 국가정책조정회의('15.9.)에서는 정부가 연간 각각 3,400억원씩 지원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2017년 2,778억원(△622억원), 2018년 2,964억원(△436억원) 등 계획한 부담액에 비해 적은 예산이 지원된 사례도 있다.²⁾

[4대강 부채상환 실적 및 최초 계획(2015년 국가정책조정회의)과의 차이 (2015~2021)]

(단위: 억원)

구 분		'15	'16	'17	'18	'19	'20	'21	2015~2021		
									실적 (a)	최초 계획 (b)	차이 (a-b)
총 계		7,525	5,145	4,523	4,769	5,715	5,715	5,985	39,377	40,435	△1,058
〈원 금〉		7,525	2,224	1,965	2,385	3,474	3,841	4,520	25,934	25,035	899
〈이 자〉		0	2,921	2,558	2,384	2,241	1,874	1,465	13,443	15,400	△1,957
정부	소 계	0	3,400	2,778	2,964	3,400	3,400	3,400	19,342	20,400	△1,058
	〈원 금〉	0	479	220	580	1,159	1,526	1,935	5,899	5,000	899
	〈이 자〉	0	2,921	2,558	2,384	2,241	1,874	1,465	13,443	15,400	△1,957
수공	〈원 금〉	7,525	1,745	1,745	1,805	2,315	2,315	2,585	20,035	20,035	0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이와 같이,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4대강 사업 부채 상환은 수자원공사의 재무 여건이나 수익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므로, 2023년 예산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2019~2022년 6월까지 각 반기별 및 연간 주요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자본 규모가 2019년 6월말 8조 1,546억원에서 2022년 6월말 기준으로 10조 7,379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2019년 6월말 14조 3,430억원에서 2022년 6월말 기준 13조 4,544억원으로 감소하여, 주요 재무건전성 지표인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부채비율은 2019년 6월 175.9%에서 2022년 6월 기준 125.3%로 감소하는 등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4대강 사업 투자원금 등의 상환을 위한 지속적인 정부 출자 지원, 부채

2)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 원금 상환은 최초 계획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감소에 따른 금융비용 감소, 최근의 구미·여수 등 산업단지와 시화지구 개발 등 단지사업에서의 이익 발생 등에 기인한다.³⁾

또한, 2022년 반기 말 기준 당기순이익이 4,302억원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데, 해당 당기순이익에는 기존의 각 연도 반기 기준으로 181억원에서 629억원 수준으로 발생하던 기타수익이 2022년 기준 2,845억원 규모로 발생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주요 재무현황 (2019~2022.6)]

(단위: 억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6.
		6월	12월	6월	12월	6월	12월	6월
손익 현황	매출액	14,391	29,717	15,087	37,518	18,273	40,114	22,861
	영업이익	1,902	3,287	1,769	5,494	3,266	4,518	2,809
	당기순이익	275	1,306	856	3,186	2,890	3,421	4,302
	(기타수익)	(181)	(407)	(282)	(451)	(374)	(629)	(2,845)
자산 및 부채 현황	자산	224,977	222,548	231,322	229,041	235,725	234,371	241,923
	부채(a)	143,430	139,193	143,799	138,349	138,269	135,473	134,544
	자본(b)	81,546	83,354	87,522	90,692	97,457	98,898	107,379
	부채비율 (a/b)	175.9	167.0	164.3	152.5	141.9	137.0	125.3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각 반기별, 연도별 연결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재작성

3) 2021년 한국수자원공사의 당기순이익은 3,421억원으로, 2021년 1,306억원 대비 2,116억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4대강 사업에서의 부채 감소로 인한 금융비용 감소에 따른 이익 증가 1,765억원 및 구미, 여수 등 산업단지와 시화지구 개발 등으로 인한 단지사업에서의 당기순이익 증가 1,047억원 등에 기인한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최근의 경영 성과는 수변부분의 성과가 주 요인이며, 최근 기준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부동산, 건설지표가 하락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성과 발생은 불확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 연도별, 사업부별 당기순이익]

(단위: 억원)

구분	계	수도		수자원			4대강사업 (정책)	경인아라 뱃길 (정책)	단지사업 (고유)	기타 (고유)
		광역요금 (고유)	지방수도 (대행위탁)	댐요금 (고유)	댐관리 (대행위탁)	댐개발 (대행위탁)				
2019(a)	1,306	1,640	25	1,222	△162	167	△3,147	△228	1,736	54
2020	3,186	1,145	△28	759	103	95	△1,648	△143	3,313	△409
2021(b)	3,421	1,213	△237	955	△371	12	△1,383	40	2,783	409
증감 (b-a)	2,116	△427	△262	△267	△208	△155	1,765	268	1,047	355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2022년 6월말 기준 당기순이익에 포함된 기타수익 2,845억원 중 대부분의 비중(83.1%)을 차지하는 2,364억원은 4대강 건설사 입찰 담합으로 인한 한국수자원공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수입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참여한 17개 건설사간 입찰 담합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⁴⁾(12.8.)로 확인⁴⁾됨에 따라, 2014년 3월에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후 소송 진행 결과 2021년 12월 법원의 강제조정이 결정되었으며, 전체 손해액이 2,364억원으로 확정되어 2022년 1월말 해당 금액이 한국수자원공사로 전액 완납되었다.

[4대강 건설사 담합 소송 관련 주요 경과]

- '12. 8. 31: 입찰담합 공정위 의결
- '14. 2. 6: 담합 관련 형사판결 1심 선고
- '14. 3. 31: K-water 4대강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 제기
- '17. 4.10: 법원 감정인 결정
- '18. 7.27: 건설사측 감정결과서 제출
- '19. 8월: K-water측 감정결과서 제출
- '21.12.13: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
- * 전체 손해액을 2,364억원으로(청구액의 92%) 조정결정(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특히, 해당 손해배상금 수입(2,364억원)은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사 담합으로 인한 공사대금 사업비 증가에 대한 손해배상금 수입이므로, 해당 수입을 한국수자원공사 타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4대강 부채 및 관련 이자 상환에 사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설사 담합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인해 관련 4대강 부채 또한 증가하였으며, 정부 부채 부담 또한 연쇄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해당 수입이 부채 분담에 사용될 경우 부채의 원금상환 시기가 앞당겨 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르는 금융비용 역시 절감될 수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입찰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금 수입 2,364억원의 활용 및 최근의 한국수자원공사의 재무구조 개선 등을 고려하여 한국수자원공사 부채 상환계

4)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공동행위 적발·제재”, 2012.6.5.

획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조정결정금 수익 2,364억원에서 법인세를 제외한 순수익금(2,135억원) 중 정부 원금 부담분 30%에 해당하는 641억원의 정부 예산 및 관련 국채 발행 감축 시, 정부의 재정지출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해당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⁵⁾

5) 참고로, 한국수자원공사는 법원 조정결정금 수익을 전액 4대강 부채 상환에 사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해당 수익 2,364억원에서 법인세 납부 예상액(유효세율 9.68%)을 제외한 후 순 수익금(2,135억원) 중 정부 원금 부담분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641억원이다. 아래와 같이 정부가 2023년 수자원공사지원 출자금 예산 3,400억원에서 641억원을 차감하고, 이에 해당하는 관련 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B), 관련 정부 지출액은 총 2조 6,212억원이다. 반면, 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한 수자원공사 출자금 예산 3,400억원을 전액 지급할 경우(A) 관련 정부 지출액은 2조 6,863억원으로 양 방안 간의 차이가 651억원이다. 따라서 수자원공사지원 출자금 예산에 법원 조정결정금 수익을 반영하는 것이 정부 지출 차원에서 보다 효과적이다.

[법원 조정결정금 수익의 2023년 정부 예산 반영 시 정부 예산 절감분 비교]

(단위: 억원)

비 고	2023년 예산안 (A)	수익의 예산안 차감 (B)	차이 (B-A)	비 고
2023년 예산 반영 여부 고려한 정부 지출액 비교(a+b+c)	26,863	26,212	△651	-
2023년 정부 예산 지 원액(a)	3,400	2,759	△641	각 가정에서의 예산 반영분 차이
2023년 정부 예산 지원 관련 향후10년간 국고채이자발생 예상액(b)	1,394	1,131	△263	각 가정에서의 정부 예산액 지원을 위한 국고채 이자(2022년 9월말 10년물 이자율 4.1%), 10 년 발생 가정
2036년 까지 수자원 공사 총부채 이자 발생액(c)	22,069	22,321	252	예산 반영 고려시, 641억원 만큼 4대강 부채를 상 환하지 않으며, 예산 반영 미고려시는 전액 4대강 부채 상환 가정, 2022년 9월말 수공채 10년물 이자율 4.5% 반영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고용노동부

I 예산안 개요

1 현 황

가. 총수입 · 총지출

고용노동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은 일반회계, 2개 특별회계(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5개 기금(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구성된다.

고용노동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29조 2,042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2조 4,283억원(9.1%) 증가하였다. 회계 · 기금별로는 일반회계 2,339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65억원, 고용보험기금 17조 6,832억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9조 6,610억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7,792억원, 임금채권보장기금 6,510억원, 근로복지진흥기금 1,794억원이다.

[2023년도 예산안 고용노동부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356,246	141,061	141,061	250,447	109,386	77.5
- 일반회계	339,545	131,061	131,061	233,946	102,885	78.5
-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162	-	-	-	-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6,539	10,000	10,000	16,501	6,501	65.0
기 금	25,301,848	26,634,857	26,634,857	28,953,741	2,318,884	8.7
- 고용보험기금	14,283,615	16,058,629	16,058,629	17,683,195	1,624,566	10.1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9,497,731	9,055,826	9,055,826	9,660,972	605,146	6.7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807,319	783,403	783,403	779,186	△4,217	△0.5
- 임금채권보장기금	521,791	580,898	580,898	651,033	70,135	12.1
- 근로복지진흥기금	191,392	156,101	156,101	179,355	23,254	14.9
합 계	25,658,094	26,775,918	26,775,918	29,204,188	2,428,270	9.1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유다연 예산분석관(dayeonyoo@assembly.go.kr, 6788-4633))

고용노동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34조 9,923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3조 4,015억원(△8.9%) 감소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6조 2,752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891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002억원, 고용보험기금 16조 9,143억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9조 7,004억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8,357억원, 임금채권보장기금 6,357억원, 근로복지진흥기금 2,417억원이다.

[2023년도 예산안 고용노동부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8,365,511	7,099,325	9,274,348	6,664,622	△2,609,726	△28.1
- 일반회계	8,001,963	6,752,598	8,927,658	6,275,242	△2,652,416	△29.7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78,863	90,955	90,955	89,132	△1,823	△2.0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84,685	255,772	255,735	300,248	44,513	17.4
기 금	30,568,343	29,472,696	29,119,508	28,327,721	△791,787	△2.7
- 고용보험기금	20,967,719	18,840,543	18,487,355	16,914,290	△1,573,065	△8.5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8,008,283	8,884,420	8,884,420	9,700,371	815,951	9.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685,849	766,268	766,268	835,671	69,403	9.1
- 임금채권보장기금	627,416	700,816	700,816	635,650	△65,166	△9.3
- 근로복지진흥기금	279,078	280,649	280,649	241,739	△38,910	△13.9
합 계	38,933,854	36,572,021	38,393,856	34,992,343	△3,401,513	△8.9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나. 세입·세출예산안

고용노동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2개 특별회계(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된다.

고용노동부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2,504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094억원(77.5%)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339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65억원이다.

[2023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39,544	131,061	131,061	233,946	102,885	78.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62	-	-	-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6,539	10,000	10,000	16,501	6,501	65.0
합 계	356,246	141,061	141,061	250,447	109,386	77.5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6조 9,847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3조 6079억원(△34.1%) 감소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조 5,953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891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002억원이다.

[2023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9,083,729	8,070,898	10,245,958	6,595,324	△3,650,634	△35.6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78,863	90,955	90,955	89,132	△1,823	△2.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84,685	255,772	255,735	300,248	44,513	17.4
합 계	9,447,277	8,417,625	10,592,648	6,984,704	△3,607,944	△34.1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다. 기금운용계획안

고용노동부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구성된다.

고용노동부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43조 9,146억원으로 전년 수정계획안 대비 △2,036억원(△0.5%) 감소하였다. 기금별로는 고용보험기금 21조 6,800억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9조 51억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조 9,005억원, 임금채권보장기금 9,169억원, 근로복지진흥기금 4,121억원이다.

[2023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고용보험기금	24,807,332	22,704,851	22,704,851	21,679,991	△1,024,860	△4.5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5,983,361	18,140,713	18,140,713	19,005,101	864,388	4.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717,843	1,874,576	1,874,576	1,900,474	25,898	1.4
임금채권보장기금	844,279	964,628	964,628	916,927	△47,701	△4.9
근로복지진흥기금	422,043	433,426	433,426	412,089	△21,337	△4.9
합 계	43,774,858	44,118,194	44,118,194	43,914,582	△203,612	△0.5

주: 1) 2022년 당초계획과 제2회 추경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라. 재정구조

2023년도 예산안의 고용노동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의 경우 고용보험기금으로 3,000억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200억원,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82백만원이 전출된다.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1,802억원의 예수이자를 상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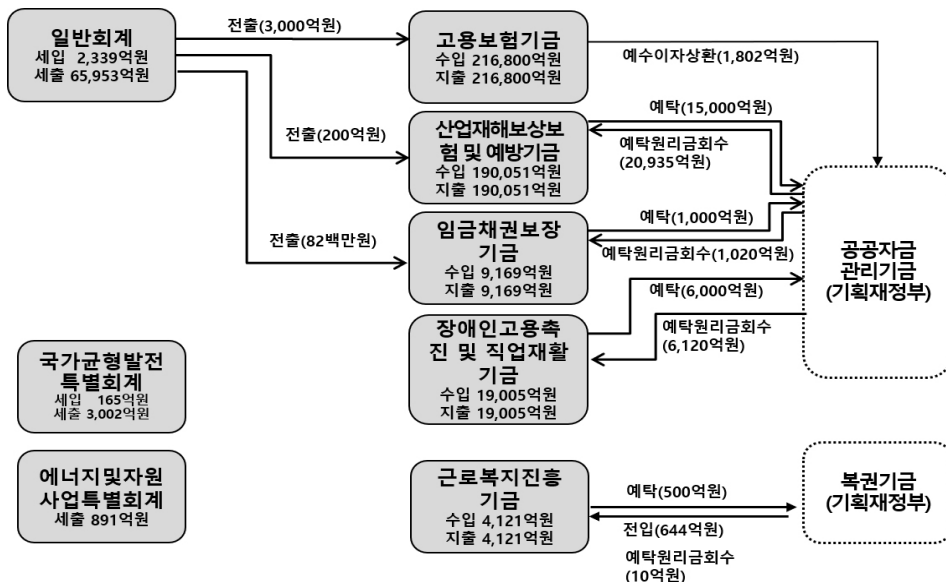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1조 5,000억원을 예탁하고, 2조 935억원의 예탁원금 및 예탁이자를 상환받는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6,000억원을 예탁하고, 6,120억원의 예탁원금 및 예탁이자를 상환받는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1,000억원을 예탁하고, 1,020억원의 예탁원금 및 예탁이자를 상환받는다.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경우 복권기금으로 500억원을 예탁하고, 10억원의 예탁원금 및 예탁이자를 상환받으며, 복권기금으로부터 644억원을 전입받는다.

[2023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주: 총계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2023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예산을 확대('22년 2.6조원 → '23년 2.9조원)하였고, ② 청년 대상 맞춤형서비스 제공 및 일경험 지원을 위해 예산을 확충('22년 642억원 → '23년 1,757억원)하였으며,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의 보장성 강화 및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등 고용안전망을 강화('23년 2.3조원)하였고, ④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산재예방예산을 확대('22년 1.1조 → '23년 1.2조원)하였다.

2023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진수당의 보장성을 강화(월 지급액 현행 50만원 → 최대 90만원)하는 한편, 참여자의 조기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을 확대 편성(잔여 구직촉진수당의 1/2 상당 금액)하고 있는데,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취업성공수당이 별도로 지급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조기취업성공수당의 도입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직업안정기관운영 사업은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통합센터 및 업종별 취업지원센터 구축 예산(신규 197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는데, 통합센터 구축의 전제가 되는 유관기관 간 사전협의 등을 조속히 실시하여 구체적인 통합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업종별 취업지원센터(조선업, 반도체)는 지역 주력 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신규 편성되는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등과 연계를 통해 사업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은 청년의 일경험 기회 확대를 위해 기존 「중소기업 청년직무체험 프로그램 사업」을 확대·개편하고 있는데('22년 50억원 → '23년 553억원), 동일 세부사업 내 청년 일경험을 지원하는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이 확대 편성되고 있으며, 청년층이 주된 참여자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

램' 또한 청년의 일경험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사업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스마트 안전장비 발굴·확산 사업은 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가 있는 스마트 안전장치·설비를 발굴하여 중소기업장에 보급·확산하려는 것으로 신규 편성되었는데(250억원), 예산안 편성내역(산업용로봇에 3D스캐너 설치)과 실제 운영계획(향후 다양한 안전장비 품목 발굴·보급)이 불일치한 측면이 있으며, 민간 사업장에 대한 수요조사가 선행되지 않아 예산 집행 가능성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2023년도 예산 집행을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

다섯째, 평생크레딧(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은 목표인원 및 예산액이 2배로 확대되고 있는데, 2022년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황(9월 말 기준 실집행률 1% 미만)임을 고려하여, 목표인원 및 사업규모를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고용노동부의 2023년도 신규사업은 총 1개 사업, 46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산업안전감독역량강화 사업은 중대재해수사 과학화 및 감독관 직무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고용노동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1개)	산업안전감독역량강화	4,629
합 계		4,629

자료: 고용노동부

2023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직업안정기관운영, 내일배움카드(일반),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클린사업장조성지원 등이 있다.

① 직업안정기관운영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고용서비스 기관을 연계하는 통합 네트워크 구축, 반도체·조선 등 국민경제 관련 중요 산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밀착 취업지원을 담당하는 업종별 취업지원허브 구축 등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264억원이 증액(2022년 438억 → 2023년 702억)되었다.

② 내일배움카드(일반)는 기존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의 지원분야를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분야로 확대(첨단산업·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훈련으로 내역사업명 변경)하면서, 지원인원을 2.85만명에서 3.66만명으로 확대함에 따라 예산이 증액(2022년 4,263억원 → 2023년 5,278억원)되었다.

③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소속 지원 근로자의 월보수 기준을 완화(230만원→260만원 미만)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에 대한 사업장 규모 제한을 폐지하여 취약계층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여 예산이 증액(2022년 1조 466억원 → 2023년 1조 764억원)되었다.

④ 클린사업장조성지원은 중소기업, 건설현장 등의 산재예방에 실질적 효과가 있는 스마트안전장비 발굴·확산, 업무상 사고·질병 예방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면서, 561억원이 증액(2022년 4,509억 → 2023년 5,070억)되었다.

[고용노동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2 ¹⁾		2023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 회계 (14개)	직업안정기관운영(일반)	43,795	43,195	70,191	26,996	62.5
	일자리대책지원및지역일자 리목표공시제	692	692	4,297	3,605	521.0
	청년고용지원인프라 운영	11,728	11,728	40,667	28,939	246.8
	국가고용정보화개발센터 구축	6,862	6,862	11,819	4,957	72.2
	청년일자리창출지원	542,820	542,769	924,078	381,309	70.3
	청년취업진로 및 알경험 지원	56,571	56,571	126,293	69,722	123.2
	직업정보제공및직업지도	3,811	3,811	6,082	2,271	59.6
	가사근로자고용개선지원	2,097	2,097	7,589	5,492	261.9
	내일배움카드(일반)	426,294	426,290	527,815	101,525	23.8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	4,200	4,200	7,503	3,303	78.6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140,841	140,841	155,099	14,258	10.1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224,142	224,142	245,273	21,131	9.4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1,046,594	1,046,594	1,076,405	29,811	2.8
	개도국고용노동분야개발협 력(ODA)	7,555	7,555	9,961	2,406	31.8
국가균형 발전특별 회계 (1개)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	132,704	132,667	147,504	14,837	11.2
고용보험 기금 (9개)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274,429	274,429	308,030	33,601	12.2
	내일배움카드(고보)	798,296	798,296	887,312	89,016	11.2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	131,882	131,882	144,521	12,639	9.6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286,608	286,608	299,232	12,624	4.4
	직업훈련생계비대부(용자)	41,030	41,030	53,520	12,490	30.4
	조기재취업수당	365,635	365,635	386,659	21,024	5.7
	고용안정장려금	185,191	185,191	199,518	14,327	7.7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2 ¹⁾		2023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모성보호육아지원	1,933,301	1,933,301	2,100,641	167,340	8.7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26,407	26,407	86,942	60,535	229.2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예방 기금 (7개)	산재보험급여	7,146,284	7,146,284	7,792,317	646,033	9.0
	산재병원지원	54,820	54,820	94,531	39,711	72.4
	산재보험 시설건립	7,148	7,148	17,714	10,566	147.8
	산재보험정보시스템구축(정 보화)	11,021	11,021	14,542	3,521	31.9
	클린사업장조성지원	450,853	450,853	506,974	56,121	12.4
	업종별재해예방	91,386	91,386	131,530	40,144	43.9
	안전보건연구개발및국제협력	5,944	5,944	8,153	2,209	37.2
장애인고 용촉진및 직업재활 기금 (4개)	장애인고용장려금	262,422	262,422	297,747	35,325	13.5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2,610	2,610	6,948	4,338	166.2
	장애인고용관리지원	210,671	210,671	222,314	11,643	5.5
	장애인직업능력개발	70,597	70,597	81,906	11,309	16.0
임금채권 보장기금 (1개)	채불청산 지원 용자(용자)	30,710	30,710	48,333	17,623	57.4
근로복지 진흥기금 (1개)	퇴직연금 사업운영	9,188	9,188	15,624	6,436	70.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II

주요 현안 분석

1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분석

가. 현 황

국민취업지원제도¹⁾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자취업촉진법」”)에 따라 도입된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등의 내역사업으로 나뉜다.

2023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2,692억 5,600만원이 감액된 1조 2,272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민취업지원제도	1,111,579	1,496,473	1,496,351	1,227,217	△269,134	△18.0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820,544	1,205,551	1,205,429	1,050,558	△154,871	△12.8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200,711	173,940	173,940	95,062	△78,878	△45.3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90,324	116,230	116,230	80,382	△35,848	△30.8
연계·협업 지원	-	752	752	0	△752	순감
전산망 강화	-	-	-	1,215	1,215	순증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유다연 예산분석관(dayeonyoo@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1234-300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대상자의 요건에 따라 I 유형과 II 유형으로 구분된다. I 유형은 현행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며,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구직촉진수당 최대 6개월)을 제공한다. II 유형은 생계급여 수급자·신용회복지원자·여성가장 등 특정취약계층 및 I 유형의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청년층 및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의욕을 고취하고, 취업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이 별도 내역사업으로 운영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세부사업 관련 예산사업 개요]

구분	내역사업(1)	내역사업(2)	내역사업(3)
사업명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사업내용	현행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대한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지급 및 취업지원	미취업 구직자 대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 촉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의 취업의욕과 직업적응능력을 높이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사업기간	'21년~	'09년~	'21년~
지원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만18~34세 청년층은 120% 이하)	· 생계급여 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여성가장 등 특정취약계층 · 만18~34세 중위소득 120% 초과 미취업 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만 35~69세 중장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중 취업준비가 필요한 구직자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고 100%	국고 100%	국고 100%
시행주체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민간위탁기관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민간위탁기관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민간위탁기관

주: 2023년 사업 수행요건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1-1. 조기취업성공수당 편성 재검토 필요

가. 현 황

2023년도 예산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과 II 유형 참여자의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이 확대·신설된다. 조기취업성공수당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목적으로 취업을 지연하는 사례를 막고, 참여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잔여수당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으로, 2021년 12월 고용정책심의회²⁾ 심의를 통해 신규 도입되었다.

[2023년도 조기취업성공수당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820544	1,205,551	1,205,429	1,050,558	△154,871	△12.8
조기취업성공수당	-	-	-	49,758	49,758	순증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200711	173,940	173,940	95,062	△78,878	△45.3
조건부수급자 조기취업성공수당	-	-	-	643	643	순증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주: 2)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조기취업성공수당(6억4천만원)은 대상자가 조건부수급자로 한정되며, 1회 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보고서상 논의대상은 I 유형에 편성된 조기취업성공수당(497억)으로 한정한다.

자료: 고용노동부

2022년도는 구직촉진수당 편성 금액 중 미집행된 금액을 활용하여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운영 중인데,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대상자에만 지급하며, 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구직촉진수당 6개월 기간 중 1/2을 남기고 취업하는 경우) 수급하고 취업한 경우 50만원을 1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2023년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대상자에 지급하는 조기취업성공수당의 지급액을 현행 50만원에서 잔여수당의 50%로 확대하는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조건부수급자(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 조기취업성공수당(1회,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당 지급범위를 확대한다.

2) 고용정책심의회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심의회로, 위원장 1명(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조기취업성공수당 유형별 요건 비교]

구분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2023년 신설)
	2022년	2023년	
지급대상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자 중 '22.1.1. 이후 취·창업한 자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자 중 '23.1.1. 이후 취·창업한 자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조건부수급자 중 '23.1.1. 이후 취·창업한 자
지급요건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2개월 이내 취업 시 (구축수당 3회차 수급 내)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구축수당 4회차 수급 내)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지급액	1회 50만원	잔여수당의 50%	1회 50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조기취업성공수당 편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조기취업성공수당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므로,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고용보험법」상 조기재취업수당과 같이 근거법에 수당 지급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근거법인 「구직자취업촉진법」 제17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수급자의 신속한 취업 지원을 위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지급 요건·기간 및 수준 등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취업성공수당 관련 법률 조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취업성공수당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가 신속히 취업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 수당(이하 “취업성공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취업성공수당의 지급 요건·기간 및 수준 등은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취업성공수당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는 법 시행일(21.1.1.)에 맞추어 취업성공수당 총 1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심의·결정하였으며(20.12.), 2022년에는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심의·결정하였다(21.12.).

다만, 근거법인 「구직자취업촉진법」 제17조는 ‘취업성공수당’이라는 단일 수당의 지급요건 및 기간 등에 대해 심의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심의회에서 ‘취업성공수당’ 외에 ‘조기취업성공수당’이라는 새로운 성공수당을 신설하여 별도의 지급요건을 정하는 것은 조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특히, 2022년도에 신설된 조기취업성공수당의 경우 2021년 국회 예산 심의 시에 전혀 고려된 내용이 아니며,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고용보험법」은 예산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에 대해 조문별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바, 「구직자취업촉진법」에도 참여자에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종류 및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³⁾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지급되는 수당]

법률상 근거조문	
제64조(조기재취업수당)	제66조(광역구직활동비)
제65조(직업능력개발수당)	제67조(이주비)

3) 고용노동부는 조기취업성공수당이 근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업성공수당’의 한 유형이므로 별도 법적 근거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나, 2020.6. 법률 제정 이후 고용노동심의회에서 동 조문 취지를 반영하여 ‘취업성공수당’을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2020.12. 심의회 의결), 현재 운영 중인 ‘취업성공수당’이 신속한 취업 및 이를 유지하는 경우 지급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신속한 취업만을 목적으로 조기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보인다.

둘째,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조기취업성공수당 예산 내역 중 잘못 추계된 예산 내역 총 17억 6,172만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조기취업성공수당 예산을 구축수당 1회 수급후 취업자(잔여수당 5회분 250만원의 50%인 125만원)부터 구축수당 4회 수급후 취업자(잔여수당 2회분 100만원의 50%인 50만원)까지 편성하고 있다.

[2023년도 조기취업성공수당(Ⅰ 유형) 편성 내역]

- 조기취업성공수당: 49,758백만원
 - 구축수당 1회 수급후 취업자: 8,809백만원
125만원*6,023명*1.17('23년목표인원/21년참여인원)
 - 구축수당 2회 수급후 취업자: 17,860백만원
100만원*15,265명*1.17('23년목표인원/21년참여인원)
 - 구축수당 3회 수급후 취업자: 13,967백만원
75만원*15,917명*1.17('23년목표인원/21년참여인원)
 - 구축수당 4회 수급후 취업자: 9,122백만원
50만원*15,594명*1.17('23년목표인원/21년참여인원)

자료: 고용노동부, 2023년 회계연도 각목명세서

그런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취업계획수립 이후 가장 빨리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구축수당 2회분을 지급받게 되므로,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지급 가능한 잔여수당은 100만원(잔여수당 4회 200만원의 50%)부터 해당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촉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구축수당 1회분을 지급하고, 그 이후 취업하는 경우 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다음 회차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임에 따라 참여자가 가장 빨리 취업하는 경우 계획 수립, 취업이 모두 인정되어 2회분의 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구조다.⁴⁾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구축수당 1회 수급 후 취업한 자에게 지급하는 조기취업성공수당 125만원(잔여수당 5회 250만원의 1/2) 내역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잘못 추계한 내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4) 고용노동부는 「구직자취업촉진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9호에 따라, 취업활동계획(IAP)수립 시 구축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시 구직활동으로 인정하여 구축수당을 추가 지급함에 따라 조기취업성공수당 최대 지급액이 100만원에 해당된다고 설명하였다.

고용노동부가 추계한 1회 수급후 취업자 지급인원 6,023명⁵⁾은 2021년 1개월 이내 취업활동을 종료한 인원해 해당되는데,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적용 시 구축수당 2회 수급자에 해당된다. 동 대상자는 잔여 구축수당 4회분의 1/2 상당인 100만원을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125만원으로 설정된 수당 금액을 100만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과다 편성된 수당의 조정 규모는 총 17억 6,172만원(25만원*6,023명*1.17)이며, 동 내역은 모두 삭감할 필요가 있다.

[수당 과오 추계분 조정내역]

(단위: 백만원)

2023년 고용노동부 편성내역	2023년 재추계한 편성내역	증감내역
○ 조기취업성공수당: 49,758	○ 조기취업성공수당: 47,996	△ 1,762
구축수당 1회 수급후 취업자: 8,809 - 125만원*6,023명*1.17	구축수당 1회 수급후 취업자: 0 ※ 지급불가능한 수당액임에 따라 2회 수급후 내역으로 이동	△ 8,809
구축수당 2회 수급후 취업자: 17,860 - 100만원*15,265명*1.17	구축수당 2회 수급후 취업자: 24,907 - 100만원*21,288명*1.17 ※ 지급인원 15,265명+6,023명 기준	+7,047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구직촉진수당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수립에 참여하여 그 계획수립이 완료되거나, 취업지원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이하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
9. 그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취업이나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5) 조기취업성공수당 대상 지급인원은 2021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자 중 취업 종료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22.4월말 기준, 고용노동부)

구분	취업지원서비스기간			
	~1개월	1~2개월	2~3개월	3~4개월
취창업자	6,023명	15,265	15,917	15,594

셋째, 조기취업성공수당 설계 시 참고하였던 「고용보험법」상 조기재취업수당이 1/2 이상의 급여일수를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 지급하고 있는 점, 2022년 현재 구축수당 3회차 내 수급자까지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23년에도 3회차 내 수급자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조기취업성공수당 예산을 구축수당 1회 수급후 취업자(잔여수당 5회분 250만원의 50%인 125만원)부터 구축수당 4회 수급후 취업자(잔여수당 2회분 100만원의 50%인 50만원)까지 편성하였다.

[2023년도 조기취업성공수당(I 유형) 편성 내역]

- 조기취업성공수당: 49,758백만원
 - 구축수당 1회 수급후 취업자: 8,809백만원
125만원*6,023명*1.17('23년목표인원/21년참여인원)
 - 구축수당 2회 수급후 취업자: 17,860백만원
100만원*15,265명*1.17('23년목표인원/21년참여인원)
 - 구축수당 3회 수급후 취업자: 13,967백만원
75만원*15,917명*1.17('23년목표인원/21년참여인원)
 - **구축수당 4회 수급후 취업자: 9,122백만원**
50만원*15,594명*1.17('23년목표인원/21년참여인원)

자료: 고용노동부, 2023년 회계연도 각목명세서

조기취업성공수당은 「고용보험법」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수당'을 참고하여 만든 수당인데,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으로,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22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조기취업을 유인하기 위해 I 유형 참여자에 대해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는 '조기재취업수당'과 같이 구축수당 3회차 이내 수급자(6회차 중 1/2)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2023년도의 조기취업성공수당은 지급 수준을 '조기재취업수당'과 같이 남아 있는 수당의 1/2로 확대하면서, 지급대상은 구축수당 3회차 이내 수급자에서 4회차 이내 수급자로 완화하여 설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조기 취업에 따른 유인 효과를 높여 고용안전망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수당 지급요건을 완화하였다는 설명이다.

[조기취업성공수당 및 조기재취업수당 비교]

구분	조기취업성공수당		조기재취업수당
	2022	2023	
지급요건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2개월 이내 취업 시 (구축수당 3회차 내 수급)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구축수당 4회차 내 수급)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되는 경우
지급액	1회 50만원	잔여수당의 50% (50만원 - 100만원)	구직급여일액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지원을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 기준을 타 제도보다 완화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취업 성공 시에 별도의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조기재취업수당'과 달리 별도의 의무고용기간 없이 즉시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⁶⁾.

고용노동부는 동일 부처 내 유사한 수당제도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감안하여 '조기취업'을 지급수당의 1/2 이상을 남기고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⁷⁾

넷째, 조기취업성공수당 도입으로 인한 조기취업 유인 효과 및 도덕적 해이 발생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수당을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취업성공 증명 외에 별도 근속기간 등의 조건이 없어 '조기취업성공수당 수급'을 목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진입하는 부작용 및 현재 취업성공수당이 별도로 지급되고 있는바 '취업성공' 취지 수당의 중복 지급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6) 조기재취업수당은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 지급된다.

7) 「고용보험법」상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피보험자의 신분에서 있을 때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기금에서 지급되며,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신설하는 조기취업성공수당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운영되는 점도 고려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 촉진 지원을 위해 2022년 1월부터 구축수당 3회차 이내 수급자에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지급 중으로, 2022년 8월 말 기준 11,191명에 수당이 지급되었다.

수당 지급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2021년 및 2022년 참여인원 대비 조기취업 성공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인원 비율을 비교해볼 수 있는데, 수당이 도입된 2022년 8월 말 기준 지급률은 8.06%이다. 2021년은 조기취업성공수당이 없었기에 현재 요건으로 2021년도 참여자 중 지급받을 수 있었던 인원을 추계하여 비교해보면, 2021년의 경우는 지급률이 8.35%로 2022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⁸⁾.

2022년 조기취업성공수당이 조기취업 유인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으므로, 제도 참여자 중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수급한 인원 비중이 더 커졌다면 수당 도입 효과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 도입하기 전 해와 지급률이 유사하므로, 조기취업성공수당 도입으로 인한 취업 유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21년도 및 2022년도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률]

(단위: 명, %)

구분	1유형 참여인원 (A)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인원 (B)	지급률(B/A)
2021	348,647	29,110 ¹⁾	8.35
2022. 8월 말	160,126	12,909 ²⁾	8.06

주: 1) 실제 지급받은 인원은 아니며, 근로시간 30시간이상 취업자 중 구축수당 3회차 이내 수급자임

주 1. 각 연도별 참여한 인원을 기준으로 추계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동 수당은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참고하여 신설되었는데, 조기재취업수당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음⁹⁾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2020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로 수행한 「고용보험기금 사업 효

8) 다만, 고용노동부는 현재 1유형 참여인원 중 구직활동 진행 중인 참여자가 있어 지급률이 변동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9) 2016년도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폐지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의안번호 2000029).

유효화 방안 검토보고서('21.6.)¹⁰⁾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으로 인한 구직급여 수급기간 단축효과가 미미하고, 제도의 사증손실은 상당하며,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을 목적으로 구직급여를 의도적으로 신청하는 진입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조기재취업수당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2023년도 고용노동부가 신설한 ‘조기취업성공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보다 지급요건을 완화(취업성공만 증명)하여 설계하고 있으므로, 조기취업성공수당 수급을 목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의도적으로 참여하는 진입효과 부작용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보인다¹¹⁾. 취업 성공 이후 근속이 유지되지 않으면 조기취업성공수당의 지급 효과가 저하되는 등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으므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한편, 지급요건 강화를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에 계속고용기간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현재 지급하고 있는 ‘취업성공수당’과 유사해지게 되는데, ‘취업성공’을 위한 수당을 ‘조기취업’ 및 ‘성공 및 계속근무’라는 별개의 목적 달성으로 구분하여 중복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현행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참여자 중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부터 취업지원이 끝나는 날(통상 1년) 또는 사후관리기간(통상 3개월)까지 취업하고 6개월 고용유지하는 경우 50만원, 추가 6개월 고용유지하는 경우 100만원을 지급하여 총 150만원을 취업성공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재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성공수당은 없다.

10)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고용보험기금 사업 효율화 방안 검토」 - 2020 재정사업 심층평가: 고용보험기금 사업군 영역, 2021. 6.

11) 조기취업성공수당은 취업 증명 외 근속기간(6개월, 1년 등)이 없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 비교]

구분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
근거	고용보험법	구직자취업촉진법	구직자취업촉진법
지원대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 제외)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한 자 (구촉수당 4회차 이내 수급)	- I·II유형 참여자 중 취업한 자 - 단,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특정계층 해당
지원요건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 6회 중 4회차 이내 취업하는 경우 ※고용기간 조건 없음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부터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종료된 날(통상 1년)또는 사후관리 기간(통상 3개월) 중에 취업하는 경우
지원금액	구직급여일액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	('22년) 1회 50만원 ('23년) 2회차 수급후 취업시 100만원 3회차 수급후 취업시 75만원 4회차 수급후 취업시 50만원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2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원 (총 150만원 한도)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2.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개편사업 효과를 고려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필요

가. 현 황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의 취업의욕과 직업 적응능력을 높이고 구직활동 등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일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 도입되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58억 4,800만원이 감액된 803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90,324	116,230	116,230	80,382	△35,848	△30.8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2021년 및 2022년은 일경험프로그램이 2가지 유형(체험형·인턴형)으로 운영되었는데, 체험형의 경우 실질적인 직무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고 경험할 수 있는 직무의 폭이 좁다는 참여자들의 의견이 있었고, 인턴형의 경우 참여자들이 원하는 기업으로의 매칭이 쉽지 않고, 기업의 인건비 보조 수단으로 오해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바 2023년부터는 단일유형(훈련연계형)으로 개편하여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전후 비교]

구분	2022		2023
	체험형	인턴형	훈련연계형
목표인원	0.75만명	1.75만명	1.7만명
참여자 성격	실습생(참여협약)	근로자(근로계약)	실습생(참여협약)
운영내용	직무체험	직무수행	직무체험 外 현장체험, 과제 등 세부프로그램
지원방식	참여수당 (고용센터→참여자)	기업지원금 (고용센터→기업→참여자)	참여수당 (고용센터→참여자)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고용노동부는 일경험프로그램을 단일유형으로 개편(체험형·인턴형→훈련연계형)하고 있는데, 취업역량이 상이한 참여자를 단일유형으로 운영 시 사업효과 및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개편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참여자 및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3년도 개편되는 단일유형인 훈련연계형에서는 기업과 참여자가 1-3개월 내에서 참여계약을 체결하여 기업 상황에 따라 일경험 과정을 재량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지급되는 수당구조 또한 바뀌는데, 2022년에는 참여자 기준으로 체험형 최대 66만원, 인턴형 최대 573만원이 지급되었는데, 개편 유형에서는 1인당 최대 420만원이 지급된다. 기업의 경우는 3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지급액 규모가 5배 커진다.

[수당 지급방식 개편 전후 비교]

구분	2022	2023
참여자수당	①체험형: 1일 2.2만원 × 최대 30일 (최대 66만원) ②인턴형: 기업지원금 191만원* × 최대 3개월 (최대 573만원) * 기업이 참여자에 임금 지급	140만원 × 최대 3개월 (최대 420만원) * 참여시간에 따라 지급되며, 이수여부는 상관 없음
멘토링수당	월 10만원 (최대 30만원)	50만원 × 최대 3개월 (최대 150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이와 같이 사업운영방식 및 수당 지급구조가 변경됨에 따라 일경험프로그램 운영과정의 부실화 및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개편 유형과 관련하여 직무체험 외에 현장체험, 이력서 작성 등 별도 과제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업은 제공 과정과 무관하게 동일한 멘토링 수당 월 50만원을 받게 되며 참여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닌 ‘현장실습생’으로 참여계약을 맺게 되므로, 직무수행보다는 직무체험 및 교육, 멘토링 등 관리가 용이한 과정을 제공할 유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 또한 기업의 직무를 수행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구조가 아니라, 프로그램에 ‘참여’(출석)만 하면 운영기관으로부터 매달 140만원의 수당을 받게 되므로, 직무실습보다는 체험 위주의 과정을 선호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인다.

일경험프로그램의 취지가 일경험을 통해 노동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데,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직무수행 외에 여러 가지 체험과정 위주로 운영되는 경우 취업촉진 지원과정이 아닌 수당 수급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사업 취지가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양질의 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는 참여자의 취업역량을 판단하여 취업역량·취업의욕이 높은 경우 인턴형으로, 낮은 경우에는 체험형으로 연계하고 있는데, 개편되는 유형에서는 취업역량과 관계없이 동일한 유형에 참여하게 되며, 출석만 확인되면 매달 최대 14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게 되어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일경험프로그램의 2년간 집행실적이 저조하지만, 2021년에 비해 2022년 인턴형 참여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4,489명→8,781명)을 고려 시 취업역량이 높은 자는 단순 과제수행, 멘토링 등의 과정보다는 실제 직무를 수행하는 인턴형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및 2022년 일경험프로그램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인원 기준						예산액 기준		
	목표인원			실시인원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체험	인턴	총계	체험 (실시율)	인턴 (실시율)	총계 (실시율)			
2021	23,000	20,000	43,000	6,636 (28.9)	4,489 (22.4)	11,125 (25.9)	138,555	27,833	20.1
2022.8.	7,500	17,500	25,000	5,346 (71.3)	8,781 (50.2)	14,127 (56.5)	116,230	23,352	20.1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현행 체험형과 같이 단순 직무체험으로 일과정을 설계하여 참여계약을 맺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액이 66만원에서 140만원으로 2배 이상 상향되는데,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예산이 낭비되는 측면이 커진다고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단일유형 개편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운영과정 난이별로 지급되는 참여자 수당을 현행과 같이 차등하여 설계하는 한편, 기업이 내실있는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참여자 취업지원 성과와 수당지급액을 연계하여 편성하는 등 참여자 및 참여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직업안정기관운영 사업¹⁾은 「직업안정법」에 규정된 직업안정기관(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기본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269억 9,600만원이 증액된 701억 9,100만원 편성되었다.

[2023년도 직업안정기관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직업안정기관운영	36,638	43,795	43,195	70,191	26,996	62.5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직업안정기관운영 사업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101개소)·중형센터(30개소)·출장센터(42개소) 등 센터 운영비, 공무원 인건비, 취업알선 및 직업지도 운영비 등의 세부내역으로 분류되는데, 2023년도는 ‘고용서비스 고도화’ 관련 예산이 260억 4,000만원 신규 반영되었다.

고용서비스 고도화 관련 예산 260억원 중 통합센터 구축비 예산이 180억원으로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업종별 취업지원센터 2개소 설치비용 16억 7,400만원, 별관청사 9개소 이전통합비용 14억 600만원 등이 반영되었다.

고용노동부는 국정과제 중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및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를 신규로 도입하고²⁾, 고용

유다연 예산분석관(dayeonyoo@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1032-301

2)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및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는 기존 고용센터 인력이 상담서비스를 심층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동 세부사업에는 창구 신규 설치비용, 컨설팅 장비 지원비용, 사업운영비 등이 반영되었다.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통합센터 구축 및 업종별 취업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고용서비스 고도화 예산안 추진 배경]

【 국정과제 52번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 ❖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구직자 개인 경력개발 로드맵을 기반으로 훈련·취업알선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 ❖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채용여건 등에 따라 기업 유형을 분류하고, 적극 개입이 필요한 유형의 기업에 대해서는 채용지원 등 기업지원정책 패키지 지원 ❖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특화센터와 통합적 연계서비스 제공 및 역할분담 체계 구축, 인적·물적 전문성 강화
--

자료: 고용노동부

[2023년도 직업안정기관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편 성 내 역
고용복지센터 운영비	38,370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중형센터·출장센터 등 운영비
공무직 인건비	4,435	- 공무직 근로자 130명 인건비
고용보험수사관 수사활동비	335	- 고용보험수사관 279명 활동비 예산
일일취업센터 운영	42	- 일용직 취업알선센터(울산, 대구서부) 운영비
취업알선 및 직업지도	952	- 복합취업애로자 맞춤형 취업지원 운영비
고용서비스 고도화	26,040	- 통합센터 4개소 구축(18,000)
		- 업종별 취업지원센터 2개소 구축(1,674)
		- 상담창구 등 신규 설치(1,313)
		- 기업지원 전담자 컨설팅 장비 지원(300)
		- 사업운영비(1,545) 등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1. 통합센터 구축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가. 현 황

통합센터 구축 사업³⁾은 새일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다양한 고용서비스 기관들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입주 또는 인접 위치시켜 One-stop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반영되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에 4개소를 시범운영할 계획으로, 1개소당 구축비용 45억원을 계상하여 총 180억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통합센터 구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직업안정기관운영	36,638	43,795	43,195	70,191	26,996	62.5
통합센터 구축	-	-	-	18,000	18,000	순증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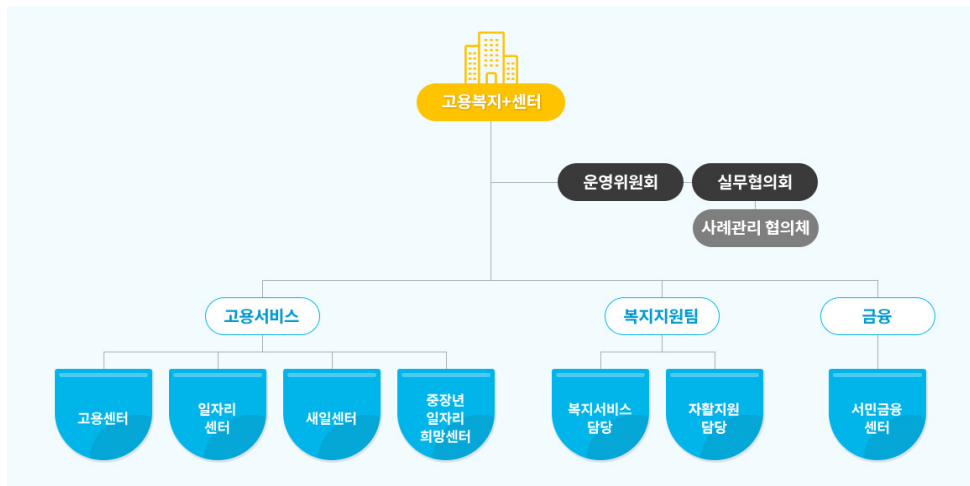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센터(고용부), 일자리센터(자치단체), 복지지원팀(복지부, 자치단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여가부), 서민금융센터(금융위), 제대군인지원센터(보훈처)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고용, 복지, 서민금융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기관이다⁴⁾. 2014년부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고용·복지서비스의 통합 제공을 위해 신규 센터 신설 및 기존 고용센터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전환하여 운영 중이며, 2022년 9월 기준 전국에 102개소⁵⁾가 있다.

3) 코드: 일반회계 1032-301의 내역사업

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공식 홈페이지(<https://www.workplus.go.kr/intro/about.do>)

5) 동 세부사업에서 지원되는 센터는 101개소이며, 1개소(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7041-301에서 지원하고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참여기관 및 체계도]



자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공식 홈페이지(<https://www.workplus.go.kr>)

고용노동부는 최근 청년, 저소득층 등의 구직자가 복합적인 취업 애로요인을 갖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등 보다 밀착적인 지원이 필요해졌으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들의 물리적 공간을 통합한 통합센터 구축·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합센터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할지역 내 특화센터(일자리센터, 새일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약 100명의 인력을 흡수하여 운영될 예정으로, 최근 신설된 성동광진·강북성북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총 2개소의 구축 예산을 기준으로 1개소당 45억원 예산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통합센터 1개소 구축비용 편성 내역]

- 통합센터 1개소 구축비용(4,500백만원)=신규공간 설치 6,522백만원* × 100명 ÷ 156명 + 기존공간 재배치 319백만원
- * '21년 설치된 성동광진·강북성북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요예산 6,522백만원(156명) 지원단가를 기준으로 산정
- ① 운영비(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시설관리비) 1,367백만원
- ② 건설비(공사비) 3,655백만원
- ③ 무형자산(임차 보증금) 1,500백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통합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통합센터 구축을 통해 달성하려는 ‘통합적인 고용서비스 제공’ 목표는 현행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설립 취지와 동일하므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운영상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통합센터의 구축 취지는 통합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이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설립취지 또한 일자리센터, 새일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다수의 기관들이 제공하고 있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일원화 및 고용·복지·금융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인바, 두 센터의 목적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⁶⁾.

다만, 센터 인력 방식 및 규모에서 차이가 있는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서비스 기관별 일부 인력(1-2명)의 파견 형태로 운영 중인데 반해, 통합센터는 각 서비스 기관의 전체 인원을 같은 물리적 공간으로 통합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원스탑 고용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라면 전체 기관의 물리적 통합 방식 외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운영상 제기된 문제점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수의 기관이 물리적으로 통합되더라도 운영체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통합 고용서비스 제공의 효과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⁷⁾⁸⁾에 따르면, 내방자에 대한 초기상담 운영방식의 상이함 및 각 기관별 협업체계 미작동이 센터 운영상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초기상담창구 운영에 관한 매뉴얼 마련, 초기상담창구 신설 의무화 및 전문성이 높은 상담사 배치 등의 과제를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6) 고용노동부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신규·확대 설치 예산안 편성 시에 제출한 추진배경과 통합센터 구축 사업 필요성에서 제시하고 있는 취지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 추진배경

- 지리적으로 동떨어진 기관별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들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여러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기관별 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비효율 발생
- 고용·복지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성과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용·복지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연계·협력 필요

고용노동부 2015년도 예산안 설명자료(2-1)

7)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발전방안」, 2015. 12.

8)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합리적 업무프로세스 재설계를 통한 고용센터 기능강화 방안」, 2017. 1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상 지적된 문제]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방객을 처음으로 대면하는 초기상담의 운영방식이 기관별로 매우 상이한데, 초기상담을 운영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개별 입주 기관 상담자들이 초기상담 역할까지 병행해야 함에 따라 센터 설립 목적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내부 연계 관련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입주 기관들이 상호 업무에 대한 이해가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며, 실무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 관련 정확한 원칙이나 내용이 부재하여 참여자의 범위나 운영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수행 연구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둘째, 고용노동부는 유관기관 100여명의 인력 이전을 위한 사전협의를 조속히 실시하여 구체적인 통합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시범사업 효과를 면밀히 살펴 향후 사업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 추진 지역으로 4개의 권역(비수도권)을 예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대상지역 및 이전기관은 특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전기관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이전대상기관의 인력규모를 100명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이전 대상기관(지자체 일자리센터, 여가부 새일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은 각기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운영도 각기 다른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100명 규모의 인력 이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려는 통합센터 구축·운영에 따른 사업효과를 면밀히 살펴보면, 고용노동부플러스센터와 협업하고 있는 기관들이 모두 물리적으로 통합될 필요가 있는데, 이전에 대한 수요조사 및 협의회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동 시범사업 추진 예산이 불용되거나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는 등 예산 낭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⁹⁾

고용노동부는 통합센터의 구축 목적이 차질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여가부·지자체 등)과 사전협의를 조속히 실시하고 구체적인 통합센터 운영방안을 마

9) 또한, 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 통합센터 확산 여부를 고려한다는 입장이나, 각기 다른 기관을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은 기관 간 원활한 협의회가 전제되어야 하는바 다수 지역으로 확산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련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시범사업 효과를 면밀히 살펴 향후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합센터 구축 예산이 이전대상기관의 운영비를 절감하여 편성한 것이 아니라, 100명의 인력을 별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신규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어 운영비 예산이 중복 편성되어 있다고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통합센터 구축 예산으로 1개소당 4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100명의 인력을 별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신규 예산을 반영한 것이다. 이전 대상기관의 운영비가 절감 편성되지 않았는바, 일반수용비·공공요금·임차료 등 운영비 예산이 중복 편성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신규사업이 시범사업에 해당하며, 이전대상이 되는 기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해당 기관의 인프라 관련 예산을 감액 편성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전협의를 미리 진행하여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면, 이전대상기관의 운영비를 절감 편성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근처로 이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통합센터 이전에 포함되는 기관들의 보조금 정산 시 중복되는 인프라 예산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2-2. 업종별 스마트 취업지원센터 타 사업 연계를 통한 효과적인 운영 필요

가. 현 황

업종별 스마트 취업지원센터 구축 사업¹⁰⁾은 최근 구인수요가 30% 이상 급증하거나, 감소한 업종 중 적극적 서비스 개입이 필요한 업종(반도체·조선)을 특별 지원하는 취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반영되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에 2개소를 신규 구축·운영할 계획이며, 2023년도 예산안에 총 16억 7,400만원(1개소당 8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업종별 스마트 취업지원센터 구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직업안정기관운영	36,638	43,795	43,195	70,191	26,996	62.5
업종별 스마트 취업지원센터 구축	-	-	-	1,674	1,674	순증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신설하려는 업종별 스마트 취업지원센터가 기존 운영 중인 ‘조선업 희망센터¹¹⁾’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력 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신규 편성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¹²⁾’과 연계를 통해 사업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지역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10) 코드: 일반회계 1032-301사업의 내역사업

11) 균특회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1056-317)의 내내역사업(고용위기대응지원)

12) 균특회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1056-317)의 내내역사업(지역혁신프로젝트지원)

는데, 공급자(관할구역·행정구역)가 아닌 수요자(산업·업종) 중심의 광역단위 고용서비스 제공이 필요해짐에 따라 업종별 스마트 취업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2023년도 지원 업종으로는 조선업 및 반도체를 예정하고 있다.

업종별 스마트 취업지원센터 구축 예산은 20명 상주인원을 가정하여 1개소당 8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업종별 스마트 취업지원센터 1개소 구축 예산안 편성 내역]

- 업종별 취업지원센터 1개소 구축비용(837백만원)= 6,522백만원* × 20명 ÷ 156명
- * '21년 설치된 성동광진·강북성북고용복지+센터 소요예산 6,522백만원(156명) 지원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
- ① 운영비(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시설관리비) 1,367백만원
- ② 건설비(공사비) 3,655백만원
- ③ 무형자산(임차 보증금) 1,500백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예정하고 있는 업종 중 조선업은 2016년 조선업 구조조정 위기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었으며, 울산·창원·목포·거제 등 조선업 관련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았다¹³⁾.

2022년 현재까지도 울산, 거제 두 지역에서는 조선업희망센터를 운영하여 조선업 취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고용위기지역 지원 세사업)에서 연간 50억원을 조선업희망센터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다.

13) 2016년 추경에서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한 실업대책 추진을 위해 11개 세부사업에 예산 편성
 - 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창출지원사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조선업 희망센터 운영비 지원) 등

[최근 3년간 조선업희망센터 예산 교부내역]

구분	보조금교부액		
	2020	2021	2022. 7.
거제	3,690	2,000	4,000
울산동구	2,039	1,000	1,000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조선업희망센터는 조선업 이·전직자 및 신규 취업하려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1:1 취업지원 컨설팅, 조선업종 특화 전문인력 양성 훈련, 조선업 취업 촉진사업(조선업 희망 취업정착금 지원·조선업 취업박람회 개최·전국투어 조선업 채용설명회 등) 등 다양한 조선업 취업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¹⁴⁾.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신규로 구축하려는 업종별 스마트 취업지원센터 또한 실무형 인재양성, 전국단위 온라인 채용설명회, 채용행사 실시 등 광역 단위 채용지원 업무 등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운영 중인 조선업희망센터의 기능과 중첩되지 않도록 차별화된 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23년도에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세부사업에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반도체, 조선업, 뿌리산업, 농촌 등 지역 주력산업의 구인난 개선을 집중 지원할 예정인데, 지역·산업별 특성(고용상황·인력수요 등)을 고려하여 업종 특성에 맞는 채용 지원, 훈련 강화, 근로조건·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업종별 취업지원센터는 권역을 넘어서 업종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 마련 업무를 특화하여 수행하려는 것이므로, 산업권역 내 주력 고용복지플러스센터·기업 등과 협업체계를 구성하여 효과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타 사업과 협업을 통해 지원방안이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14) 거제 조선업희망센터는 20년(15,517명), 21년(1,571명), 22년(2,137명, 8월말 기준), 울산 조선업희망센터는 20년(4,443명), 21년(2,079명), 22년(1,329명, 8월말 기준)에 대해 취업알선, 전직지원,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산업 기반 고용지원 관련 고용노동부 주요사업 비교]

구분	업종별 스마트 취업지원센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고용위기지역지원 (조선업희망센터)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23 신규)
사업내용	- 근로환경 개선 등 업종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 마련 - 해당 업종 주력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산업유관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 복합적 구인 애로요인 파악 및 실무형 인재양성 체계 구축 지원 - 전국단위 온라인 채용설명회, 채용행사 등 광역 단위 채용지원	- 1:1 취업컨설팅 등 맞춤형 취업훈련 - 조선업종 특화 전문인력 양성 - 조선업 취업박람회 개최, 전국투어 조선업 채용설명회 등 취업 촉진사업	- 반도체, 조선업, 뿌리산업, 농촌 등 지역주력 산업 지원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 - 업종별 근로조건·환경 개선 지원 - 직업훈련 강화 - 대상(청년, 신중년, 장애인, 여성)별 맞춤형 취업 지원 ※ 중앙사업을 주관하는 지방관서와 협업(정보교류 등) 수행
23년 소요예산	- 2개소(조선·반도체) 구축 총 16억 7,400만원	- 거제 센터 40억원 - 울산동구 센터 10억원	- 356억원 (순증)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III

개별 사업 분석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실제 채용실적을 반영한 지원 인원 조정 필요

가. 현 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¹⁾은 중소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²⁾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2년에 신규 도입되었다. 2023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3,813억 900만원이 증액된 9,240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청년일자리창출지원	1,120,319	542,820	542,769	924,078	381,309	70.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542,820	542,769	924,078	381,309	70.2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2년도에는 월 80만원씩 최대 1년(6개월 고용 후 1차 지급, 이후 최대 6개월의 고용기간 동안 3회차에 걸쳐 지급)동안 지급되나, 2023년도에는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2년 동안 최대 1,200만원(최초 1년은 월 60만원씩 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을 지급한다.

유다연 예산분석관(dayeonyoo@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1043-301의 내역사업

2)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15-34세 청년을 의미하나,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졸업예정자 포함),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하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지침」,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내용 비교]

구분	2022	2023
지원수준	1년간 연 최대 960만원 지원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월 80만원씩 12개월 지원	최초 1년은 월 60만원씩 12개월 지원,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원
목표인원	14만명	9만명
예산	총 5,428억원	총 9,241억원
	기업지원금 5,134억원 · '22년 채용자 14만명에 대한 지원금	기업지원금 9,047억원 · '22년 채용자 12만명에 대한 잔여 지원금 6,974억원 + '23년 신규채 용된 청년 9만명에 대한 2,073억 원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고용노동부는 2022년 계속지원인원 규모를 목표인원 14만명의 85%인 12만명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2022년 실제 채용 실적을 고려하여 계속지원인원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 2022년 채용인원에 대한 잔여지원금 6,974억 800만원(12만명 기준) 및 2023년 신규 채용인원 9만명에 대한 지원분 2,07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2년 1-3월 25,500명, 4-12월 94,500명의 채용을 예상하여 계속지원인원 규모를 12만명으로 추계하였다는 설명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예산액 산출 근거]

- 산출: '22년 채용자에 대한 잔여 지원금(12만명, 697,408백만원) 및 '23년에 신규 채용된 청년 9만명에 대한 '23년 지원분(207,270백만원)
- 월별 채용인원* × 고용유지율** × 지원단가 × 지원개월
- * '22년: 1~3월 25,500명, 4~12월 94,500명 채용 전제
- '23년: 월 평균 7,500명 채용 전제(9만명을 12개월로 균등 분배)

자료: 고용노동부

그런데, 9월 말 기준 기업에서 실제 채용한 청년 수는 목표인원 14만명의 53%에 해당하는 7만 3,851명으로 집계되었다. 계속지원인원 규모를 추계한 근거에 따랐을 시, 2022년 9월 기준 88,500명(1-3월 25,500명 및 4-9월 63,000명)이 채용되었어야 했는데, 실제 채용실적은 예상치의 83%인 73,851명이다.

[분기별 청년 채용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9월 말 기준)	
	기업수	청년수	기업수	청년수	기업수	청년수
참여 신청	26,337	155,385	19,833	90,421	15,704	58,271
실제 채용	17,246	30,391	16,976	27,343	10,586	16,117

자료: 고용노동부

또한,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시 목표인원 14만명 중 3분기까지 11만 6천명(83%)이 채용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채용은 7만 4천명으로, 예상치의 64%에 불과하다.

[2022년 채용 목표인원 및 2023년 실제 채용인원 현황]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2년 목표인원	48,000명	38,000명	30,000명	24,000명
실제 채용인원	30,391명	27,343명	16,117명(9월 말)	-
차이	△17,609명	△10,657명	△13,883명	-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2022년도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고용노동부의 예측치에 비해 실제 채용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내년도 지원인원 12만명은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인원으로 보이므로, 고용노동부는 채용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도 지원인원을 집행 가능한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지원수준 및 지원요건이 유사했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사례를 살펴보면, 차년도에 계속해서 지원받은 인원 규모는 해당년도 신규인원 대비 60%~74% 비중이었다.

[2018-2020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내역]

(단위: 명, %)

구분	신규지원인원(당해년도)	계속지원분(차년도)	비율 ¹⁾
2018	127,630	87,378	68
2019	141,566	84,944	60
2020	105,584	78,033	74

주: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월 75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n년도 참여인원 기준 n+1년도 계속지원인원에 대해서만 살펴봄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교]

구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¹⁾
지원기업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성장유망기업 등은 1인 이상 可)	5인 이상 중소기업 (미래유망기업 등은 1인 이상 可)
지원대상	청년(만15~34세) 실업자	청년(만15~34세) 증 취업애로청년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4대보험,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4대보험,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지원수준	월 75만원 최대 3년(2,700만원)	월 80만원, 최대 1년(960만원)
지원시기	2017년 추경 시범사업 시행 2018년 본사업 시행 (2020년 11월 말 신규채용까지 지원)	2022년부터 신규 수행

주: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지원기업 범위가 중소기업으로 축소되었고, 지원대상 또한 청년 중 '취업애로청년'으로 축소되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 황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¹⁾은 노동시장 진입 이전 단계인 청년층에 대한 진로지도, 일경험 및 취업지원 등을 통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청년 취업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529억 2,700만원이 증액된 1,262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21,896	56,571	56,571	126,293	52,927	123.2
청년일경험지원	2,425	4,996	4,996	55,330	50,334	1,007
청년친화강소기업선정	300	300	300	790	490	163
청년친화형기업ESG지원	-	17,000	17,000	25,100	8,100	47.6
공정채용인프라구축	-	1,316	1,316	3,771	2,455	186.6
공정채용전산시스템운영	-	-	-	133	133	순증
청년도전지원	5,108	7,580	7,580	40,780	33,200	438
운영비	433	459	459	389	△70	△15.2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사업 내 내역사업의 주된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직무체험을 제공하던 ‘중소기업청년직무체험’이 참여 기업 및 운영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면서 ‘청년일경험지원’으로 개편되며, 예산액은 2022년 49억 9,600만원에서 2023년 553억 3,000만원으로 1,007% 증액 편성되었다.

다음으로, 청년도전지원 사업은 2021·2022년에 청년센터운영 세부사업

유다연 예산분석관(dayeonyoo@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1051-305

(1032-303) 내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2023년도부터는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으로 이관되어 편성된다. 동 사업의 예산액은 전년 대비 332억원 증액(438%)된 407억 8,000만원이다.

2023년도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별 예산안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2023년도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예산액	편 성 내 역
청년일경험지원	55,330	- 기업탐방(10,000명), 프로젝트형(2,000명), 인턴십(7,700명), 일반용역비, 운영비 등
청년친화강소기업선정	790	- 우수기업 선정(270), 기업 방문의 날 신설(160), 채용박람회 신설(200), 운영비 등
청년친화형기업ESG지원	25,100	- 프로그램 지원비(24,000), 운영기관 위탁비(400), 홍보비(200),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비(500) 등
공정채용인프라구축	3,771	- 능력중심채용모델 개발·지원 및 채용현장 지원(3,471), 청년구직자 취업-코칭·솔루션 프로젝트 운영(300)
공정채용전산시스템운영	133	-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ISP 검토용역비
청년도전지원	40,780	- 도전지원 사업비(3,600), 도약지원 사업비(36,500), 운영비(680)
운영비	389	- 통합홍보 운영비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1. 청년일경험지원사업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청년일경험지원 사업²⁾은 청년의 일경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직무탐색 및 진로 설정,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03억 3,400만원이 증액된 553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2022년도까지 ‘중소기업 청년직무체험 프로그램’ 내역사업으로 운영되었으나, 2023년도부터 청년일경험지원사업으로 내역사업이 변경된다.

[2023년도 청년일경험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21,896	56,571	56,571	126,293	52,927	123.2
청년일경험지원	2,425	4,996	4,996	55,330	50,334	1,007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은 기존 중소기업 청년직무체험 프로그램 사업을 확대·개편하는 것으로, 운영 프로그램을 현행 2개 유형(1유형, 2유형)에서 4개 유형(기업탐방, 프로젝트, 인턴십-실무캠프, 선도인턴십)으로 확대하는 한편, 참여대상 기업 범위도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외국계기업을 포함한 전 기업으로 확대한다. 지원 목표인원도 2022년 1만명에서 2만명으로 2배 확대한다.

2) 코드: 일반회계 1051-305의 내역사업

[청년일경험지원 내역사업 개편 내역]

기존 중소기업 청년직무체험(-2022)	2023년 청년일경험지원
- 1유형(견학, 회사소개, 인사담당자·CEO 특강, 직원대화): 8,000명 - 2유형(미니인턴실습, 프로젝트, 모의면접): 2,000명 * 예산: 49억 9,600만원	- 기업탐방: 10,000명 - 프로젝트: 2,000명 - 인턴십: (실무캠프) 2,000명, (선도 인턴십) 5,700명 * 예산: 553억 3,000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3년 청년일경험지원 프로그램 세부유형]

유형	기업탐방	프로젝트	인턴십	
			실무캠프	선도 인턴십
주요 내용	직무체험, 현직자 멘토링 및 CEO·인사 담당자 대화 등을 통한 직무탐색 지원	직무 기반의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 * 기업주도 및 청년주도로 구분 운영	국내 우수기업에서 직접 직무 기반 과업 수행	
기간	5일 이내	1개월	1개월	3~6개월
대상	미취업 청년	미취업 청년	재학생 고학년	미취업 청년
참여 기업	대기업, 벤처·스타트업, 외국계기업, 청춘강소기업, 중견·중소기업 등			
콘텐츠	• 기업 방문 • 직무 수행 프로세스 안내 및 체험 • CEO, 현직자 멘토링	• 사전 직무교육 • 프로젝트 수행 • 수행과정 코칭 • 최종 결과물 심사 평가	• 사전 직무교육 • 실제 직무수행 • 기업 담당자 멘토링 진행	
목표 인원	1만명	2천명	2천명	5.7천명
2023 예산안	33억 8,000만원	55억 5,000만원	417억 5,000만원	

주: 그 외 플랫폼 ISP·운영기관 지원 등 일반용역비 39억 5,000만원 및 부서운영비 7억원 편성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청년일경험지원의 사업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다른 일경험 지원 사업과 중첩될 우려가 있으며,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가 ‘만족도조사’ 등 주관적 지표로 이루어져 사업효과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의 차별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확대 사업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청년의 일경험확대를 위해 직무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탐방, 기업에서 제안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프로젝트, 기업의 실제 직무를 수행하는 인턴십을 제공하려는 것인데, 사업 범위 및 참여기업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 운영 중인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 내역사업³⁾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1234-300)과 사업 내용이 일부 중첩될 수 있다고 보인다.

먼저,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 사업은 기업이 ESG⁴⁾ 경영 차원에서 청년에 다양한 고용지원프로그램(직무훈련, 일경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경우 국가에서 비용을 보조하는 것으로, ‘ESG경영’이라는 참여목적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프로그램이 청년의 직무역량 향상 및 일경험 기회 확대와 관련되며, 참여기업 범위 또한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등 전 기업으로 동일한바, 사업 내용이 일부 중첩될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2023년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이 지원 목표인원을 약 2만명으로 설정하여 553억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청년친화형 기업 ESG지원 사업 또한 지원 프로그램 수를 늘리고 사업규모를 확대(170억→250억)하고 있다.

유사한 내용을 제공하는 각 내역사업들의 규모가 동시에 확대되고 있는데, 참여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선행한 상태에서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 추진 시 참여기업 확보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

3) 청년일경험지원 내역사업과 함께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1051-305)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이다.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의 2022년 예산액은 170억원이며, 2022년 9월 기준 54개 기업이 참여하여 20개의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목표인원은 3,000명인데, 9월 기준 실제 지원인원은 2,000명이다.

4)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를 의미한다.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과 비교]

구분	청년일경험지원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사업유형	기업탐방, 프로젝트, 인턴십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직무훈련+일경험+취업지원 등)
사업내용	- 직무체험, 현직자 멘토링 등을 통한 직무탐색 기회 제공 - 기업에서 제안한 과업(프로젝트) 또는 청년 주도 과업 수행 - 기업의 실제 직무를 수행하는 인턴십 제공	-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과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청년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직무역량 향상 프로그램 운영 - 취업준비지원(컨설팅, 멘토링, 프로젝트), 직무체험, 대학생 인턴 등 지역·대학 상생프로그램 등
참여기업	대기업, 벤처·스타트업, 외국계기업, 중견·중소기업 등 전기기업 * ESG 지원사업은 개별기업 외에, 기업+사용자단체,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기업+운영기관, 기업+대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 가능	
목표물량	참여인원 약 2만명	운영프로그램 24개(현 20개)
'23 예산안	55,330백만원	25,100백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음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1234-300) 내 일경험프로그램 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의욕 제고 및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일경험을 제공하는 것인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자 대다수(80% 이상 해당)가 청년에 해당한다⁵⁾. 2022년은 목표지원인원 2.5만명에 대해 직무체험형, 인턴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2023년에는 기업과 참여자 간 참여계약을 맺어 직무체험·직무수행 등 다양한 일경험과정을 운영하도록 할 것인바, 청년일경험지원과 사업내용이 중첩될 수 있다고 보인다.

5)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청년층 참여 현황]

(단위: 명, %)

구분	2021			2022(8월 말)		
	계	체험형	인턴형	계	체험형	인턴형
계	11,125(100.0)	6,636	4,489	13,940(100.0)	5,262	8,678
청년층(18~34세)	9,100(81.8)	5,035	4,065	11,457(82.2)	3,702	7,755
기타연령층	2,025(18.2)	1,595	419	2,483(17.8)	1,560	923

자료: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과 비교]

구분	청년일경험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사업유형	기업탐방, 프로젝트, 인턴십	훈련연계형
사업내용	- 직무체험, 현직자 멘토링 등을 통한 직무탐색 기회 제공 - 기업에서 제안한 과업(프로젝트) 또는 청년 주도 과업 수행 - 기업의 실제 직무를 수행하는 인턴십 제공	- 기업과 참여자 간 참여계약을 맺어 1-3개월간 직무체험, 직무수행 등 다양한 과정 운영
참여기업	대기업, 벤처·스타트업, 외국계기업, 중견·중소기업 등 전기업	
참여대상	미취업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미취업청년 대다수 차지)
목표인원	약 2만명	1.7만명
'23 예산안	55,330백만원	80,382백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세부사업은 청년에 직무역량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임에 따라 ‘취업률·고용유지율’ 등을 성과지표로 관리하지 않고, 만족도조사, 참여율, 이수율 등 프로그램 운영 관련 지표로 성과관리를 하고 있는데⁶⁾⁷⁾, 대규모의 예산액이 투입되는 사업의 효과가 만족도 등 주관적 지표로 관리되고 있어 예산액 투입 대비 실질적인 사업효과(취업률 제고 실적 등)를 분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유사한 목적 및 내용의 사업이 다수 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청년일경험지원사업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한편, 동 사업이 차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⁸⁾.

6) 고용노동부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의 성과지표를 전문가 자문, 진행 중인 연구용역의 연구진 협의 등을 통해 사업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마련할 계획이며, ‘프로그램별 운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를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7) 고용노동부는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이 2022년 신규사업으로, 수수료, 만족도 등 정량적 지표 및 기업의 프로그램 운영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정성적인 노력 등을 중심으로 연말에 첫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8) 기존 기업에서 운영 중인 인턴십 등의 과정이 동 지원사업으로 대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2. 청년도전지원사업 기관 인센티브 감액 필요

가. 현 황

청년도전지원사업⁹⁾은 구직단념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32억원이 증액된 407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2021년 제1차 추경을 통해 신규로 도입되었으며, 2022년도까지 청년센터운영 세부사업(1032-303)에서 수행되었으나, 2023년도부터는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으로 이관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2023년도 청년도전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21,896	56,571	56,571	126,293	52,927	123.2
청년도전지원사업	5,108	7,580	7,580	40,780	33,200	438.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구직단념청년¹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등이며, 지방자치단체·민간 컨소시엄의 운영기관을 통해 ① 구직단념청년 발굴, ②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③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또는 취업연계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운영되며, 국비보조율은 80%이다.

2021년 및 2022년은 2-3개월 과정의 단일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이나, 2023년도부터는 단기과정(도전지원, 1-2개월) 및 중기과정(도약지원, 5개월)의 두 유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9) 코드: 일반회계 1051-305의 내역사업

10)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18~34세)(「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상 규정)

[2023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프로그램 개요]

구분	(기존)청년도전지원 프로그램	(가칭)청년도약지원 프로그램
사업대상	구직단념 기간 6개월 이상	구직단념 기간 12개월 이상
운영기간	1~2개월	5개월
운영시간	40시간	200시간
이수기준	총 편성 시간의 80% 이수	매월 편성 시간의 80% 이수
프로그램 구성	①밀착상담, ②사례관리, ③자신감 회복, ④진로탐색, ⑤취업역량강화, ⑥지역맞춤형	▶ ①~⑥(청년도전) : 160시간+ ▶ 취업지원서비스*등 : 40시간 * 1:1 심층 멘토링, 일경험,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고용노동부는 청년도약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관 인센티브 20억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비로 1인당 400만원이 편성되고 있고, 청년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수당이 별도로 편성되어 청년들의 참여도가 제고될 것으로 보이는바, 기관 인센티브 지급 필요성이 낮다고 보인다.

2023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예산안은 도전지원 사업비 36억원, 도약지원 사업비 365억원, 운영비 6억 8천만원 등 총 407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2023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청년도전지원사업: 40,780백만원
1) 도전지원 3,600백만원
- 프로그램 사업비: 2,400백만원(3,000명*80만원)
- 청년인센티브: 1,200백만원(3,000명*50만원*0.8)
2) 도약지원: 36,500백만원
- 프로그램 사업비: 20,000백만원(5,000명*80만원*5개월)
- 청년참여수당: 12,500백만원(5,000명*50만원*0.8)
- 청년인센티브: 2,000백만원(5,000명*50만원*0.8)
- 기관인센티브: 2,000백만원(5,000명*50만원*0.8)
3) 운영비: 680백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신설·확대되고 있는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수당 내역을 살펴보면, 1-2개월 단
기과정인 도전지원과정에는 청년에 지급되는 인센티브 50만원만(프로그램 수료 시
지급) 편성되고 있으며, 별도 참여수당이나 기관 인센티브는 편성되어 있지 않다.

반면, 5개월 중기과정인 도약지원과정에는 청년의 참여수당(1개월당 50만원,
최대 250만원 지급) 및 프로그램 이수시 인센티브 5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기관
인센티브도 청년 1인당 프로그램 이수 기준으로 5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2023년도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편성내역]

구분	도전지원(1-2개월)	도약지원(5개월)
청년	참여수당 없음	1개월 참여수당 50만원(최대 250만원)
	프로그램 수료 시 인센티브 50만원	프로그램 수료 시 인센티브 50만원
기관	인센티브 없음	청년 1인당 프로그램 수료 시 인센티브 50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관 인센티브는 2021년 시범사업 시에는 편성되었으나, 2022년에는 편성되
지 않았고, 2023년도에 도약지원 사업에만 재편성되고 있다. 그런데, 2021년도에
는 사업 이수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에 따라 기관 인센티브를 구분하여 편성하
였는데, 2023년도에는 ‘사업 이수’ 기준으로만 편성하고 있으며, 금액 또한 10만원
에서 50만원으로 5배 증액하였다.

[2021년~2023년 기관 인센티브 편성내역]

구분	2021	2022	2023	
			도전지원	도약지원
기관인센 티브	- 청년도전지원 사업 이수시 10만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 동계획 수립시 10만원	미편성	미편성	- 청년도약지원 사업 이수시 50만원

주: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는 시범사업으로 신규 추진됨에 따라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관인센티브를
도입하였으며, 2022년부터는 계속사업에 해당하여 인센티브를 편성하지 않았다는 설명임.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고용노동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중기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인데¹¹⁾, 청년 1인 기준 400만원의 프로그램 운영비가 반영되어 있으며, 2023년도부터는 청년에 월별 참여수당(최대 250만원) 및 인센티브 수당(50만원)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사업 참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별도로 기관 인센티브를 편성할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2021년~2023년 청년 수당 및 인센티브 편성내역]

구분	2021~2022	2023	
		도전지원	도약지원
참여수당	없음	없음	1개월당 50만원(총 250만원 지급)
인센티브	프로그램 수료 시 20만원	프로그램 수료 시 50만원	프로그램 수료 시 50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기관 인센티브의 지급 기준을 ‘사업 이수’로만 설정하고 있는데, 동 사업 목적이 구직단념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인센티브 지급 기준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

11) 고용노동부는 2023년 중장기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사업 참여 지자체 수요가 낮고(목표인원 대비 54%), 2022년도 사업 성과가 2021년도 인센티브 운영시보다 낮은 상황으로 지자체의 참여 독려와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 현 황

내일배움카드 사업¹⁾은 생애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 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예산은 사업의 성격 및 목적의 특화 여부에 따라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에 분리 편성되어 있다. 2023년도에는 일반회계에 5,278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고용보험기금에는 8,873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내일배움카드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내일배움카드	1,141,904	1,224,590	1,224,586	1,415,127	190,541	15.6
(일반회계)	154,862	426,294	426,290	527,815	101,525	23.8
(고용보험기금)	987,042	798,296	798,296	887,312	89,016	11.2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는 2019년까지 실업자, 재직자로 구분하여 발급되었으나,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운영함에 따라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대기업 근로자 등 일부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실업, 재직 등 경제활동 상태와 관계없이 1인당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 훈련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예산은 사업성격, 목적 특화 여부에 따라 일반회계 및 고용보험기금에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는데, 2023년도 예산안 기준 일반회계에는 일반고 특화훈련, 평생크레딧, 첨단산업·디지털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을, 고용보험기금에는 일반직종 훈련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을 편성하고 있다.

유다연 예산분석관(dayeonyoo@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1131-300, 고보기금 1151-352

3-1.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사업 집행실적을 고려한 목표 인원 적정성 검토 및 특별훈련수당 지급요건 강화 필요

가. 현 황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은 민간 혁신훈련기관, 디지털 분야 선도기업, 대학 등을 통해 디지털 신기술 분야 핵심 실무인재를 양성하는 훈련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914억 3,800만원이 증액된 4,162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내일배움카드(일반)	154,862	426,294	426,290	527,815	101,525	23.8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81,454	324,822	324,822	416,260	91,438	28.2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2020년 제3회 추경을 통해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어 20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의 4가지 훈련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2년은 18개 훈련직종²⁾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기존에 운영하던 훈련직종 외에 첨단산업 분야³⁾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2) 2022년 훈련직종 18개: 3D프린터 운용, AI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응용, 반도체 장비설비, 빅데이터전문가, 사물인터넷, 스마트팩토리 등

3) 차세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신재생에너지, 예코업 등 직종 추가 예정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사업 세부 훈련유형]

훈련유형	개 요
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	참여기업의 훈련수요를 기반으로 참여기업과 훈련기관(민간혁신기관 ¹⁾) 간 협약을 체결한 후 설계된 디지털·신기술 분야 훈련과정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벤처기업협회 등 협·단체가 회원사의 인력수요를 조사하고, 훈련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채용연계형(50%, 협·단체 회원사) 훈련과정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삼성전자의 SSAFY 등 디지털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이 자체 운영하는 훈련과정을 K-Digital Training을 활용하여 지원하여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²⁾ 가 지역 내 대학 등 훈련기관과 기업을 매칭, 훈련과정을 설계하여 지역 내 청년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과정을 제공하고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

주: 1) 혁신적인 훈련방식(과제 중심, 능동적 학습환경, 맞춤형 교육) 실시, 자체 개발·관리한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훈련 관리하는 기관으로, 네이버커넥트, 우아한 테크코스, 멋쟁이 사자처럼 등이 있음

2)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란 지역 산업계(대한상의·경총 등), 노동계, 지방자치단체, 고용센터, 지역대학 등으로 구성된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를 의미한다(서울·부산 등 17개 구성·운영 중)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동 사업은 2021년부터 계속해서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데, 사업 집행실적이 부진하므로 확대하고 있는 목표인원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훈련유형별로 집행실적 편차가 존재하므로, 집행실적 편차 최소화 등 전반적인 사업 집행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사업은 2021년부터 계속해서 목표인원을 약 20%씩 상향하고 있으며, 예산액 또한 2022년은 전년 대비 46%, 2023년은 전년 대비 28% 증액하고 있다.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 편성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2회 추경 기준)	2022 (증감률)	2023 (증감률)
목표인원	24,015	28,521 (18.8)	36,580 (28.3)
예산	222,462	324,822 (46.0)	416,260 (28.2)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의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지원목표 인원 2만 4,015명 중 실제 지원인원은 1만 1,727명(48.8% 지원률)에 불과하였고, 예산액은 2,224억원이었으나, 집행행액은 814억(36.6%)에 불과하였다.

2022년 8월 말 기준으로는 목표인원 28,512명 중 13,615명을 지원(47.4%)하였으며, 예산 집행행률은 35.2%이다. 2021년도보다는 집행실적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집행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며, 올해 예산액 중 일부는 불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지원 목표인원을 올해보다 28% 상향(8,059명 확대)하고 있으며, 예산액도 28% 확대 편성하고 있는바, 2023년도 예산 집행 가능성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 집행내역]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인원			예산		
	목표인원	실지원인원	지원률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2021	24,015	11,727	48.8	222,462	81,454	36.6
2022.8월말	28,521	13,615	47.4	323,562	114,337	35.2
2023 예산안	36,580	-	-	415,000	-	-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고용노동부는 2022년 8월 말 기준 총 403개의 훈련과정 및 연간 33,027명의 훈련규모를 확보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에 첨단산업 분야 등 추가적인 훈련과정 공모를 추진할 예정으로, 2023년도 목표인원 36,580명의 모집이 가능하다는 입장

이다. 그런데, 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2022년 목표인원의 1.6배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실지원률은 50%에 미치지 않고 있는바, 2023년도 확대하고 있는 목표인원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22년 8월 말 기준 훈련유형별로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대기업이 주도하는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훈련과정⁴⁾ 및 채용연계 50%가 예정된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훈련과정은 수요가 높으나, 민간혁신기관이 주도하는 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 훈련과정은 목표인원 대비 참여실적이 저조하다.

[훈련유형별 실제 훈련인원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훈련유형	'22 목표인원	실제 훈련인원	지원률	'23 목표인원
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	25,521	9,520	27.8	36,580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1,000	1,150	115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2,000	2,431	147.2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		514		
전 체	28,521	13,615	47.4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고용노동부는 유형별 목표인원이 아닌 전체 목표인원으로만 실적을 관리한다는 입장인데, 각 훈련유형별로 목표 및 훈련과정, 참여기관, 1인당 훈련비 단가가 다르⁵⁾, 각 유형을 도입한 취지가 있으므로⁶⁾, 훈련유형별로 참여실적을 관리하는 한편, 저조한 훈련과정의 참여가 제고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2023년도 추가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반도체·3D프린팅 등 첨단산업 직종 훈련과정을 조기에 확보하여 동 사업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4) 삼성, KT, 포스코, SKT, 카카오,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등 다양한 대기업이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5) 2022년 운영 중인 훈련과정 기준 1인당 평균 훈련비:

- 디지털신기술아카데미 1,013만원,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959만원,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1,557만원,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 826만원

6) 2021년 추정 시 기존 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 훈련유형 외에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 등 3가지 유형이 신설되면서 목표인원이 증대되었는바, 각 유형 신설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유형별로 훈련인원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둘째,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에 참여하는 훈련생에게 월 20만원의 특별훈련수당을 훈련장려금의 지급요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다른 훈련과정 훈련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한편, 훈련 효과 제고를 위해 지급요건을 강화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훈련과정의 훈련비는 36,580명 기준 4,15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1인당 훈련비 단가는 1,134만 5,000원이다. 훈련비 내역에는 훈련비·훈련장려금·특별훈련수당이 모두 포함된다.

[2023년도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훈련비 산출내역]

훈련비: 36,580명*11,345천원=415,000백만원
 1인당 훈련비: 1,134만원
 - 산출내역: '21년 선정·운영된 훈련과정의 평균 1인당 훈련비·훈련장려금 1,026만5,000원 + 1인당 평균 특별훈련수당 108만원(월 20만원*6개월*0.9*)
 * '21년 실지급률을 반영한 보정계수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훈련비는 훈련과정 운영에 드는 비용을 훈련생의 출결 시간에 따라 훈련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이고, 훈련장려금은 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의 과정을 수강하면서 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참여자에 지급하는 수당(월 11만 6천원)이다. 특별훈련수당은 훈련비·훈련장려금 외에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서 규정⁷⁾하여 훈련생에 추가로 지원하는 수당으로, 2022년 2월 신설되었다.

현재 국민내일배움카드사업에서는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과 내일배움카드(고보)사업 내 산업구조 변화대응 등 특화훈련과정 등 총 2개 훈련과정에서만 특별훈련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산업구조 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에서는 훈련장려금 지급요건 외에 추가 요건을

7)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49조의2(특별훈련수당의 지원)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의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퍼센트 이상인 경우 특별훈련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1.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디지털-트레이닝) 또는 총 훈련시간이 350시간 이상인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중 육성산업·직종에 대한 훈련과정에 참여할 것

충족하는 경우에 특별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체 목표인원 대비 20% 기준으로 수당지급인원을 예정하고 있다.

[산업구조 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특별훈련수당 지급기준]

- ①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지역에서 육성이 필요하다고 선정한 직종⁸⁾일 것
- ② 총 훈련시간이 350시간 이상인 과정에 참여할 것

자료: 고용노동부

그런데,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에서는 특별훈련수당의 지급기준을 훈련장려금 지급요건과 동일하게 설계하고 있으며, 전체 훈련인원을 대상으로 특별훈련수당을 편성하고 있다.

[특별훈련수당 지급과정 훈련비 산출내역 비교]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산업구조 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 훈련비, 훈련수당(훈련장려금, 특별훈련수당) 36,580명 × 11,345,000* =415,000,000천원 * 특별훈련수당(1인당 108만원) 포함	- 훈련비, 훈련장려금 20,000명 ×3,548,000원=70,960,000천원 - 특별훈련수당 4,000명 × 200,000원 × 3 개월=2,400,000천원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국가적 인재양성이 필요하여 동 과정 전체가 특별훈련에 해당된다고 보아 별도의 지급요건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다른 훈련과정 훈련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국가 예산으로 1천만원이 넘는 훈련비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고⁹⁾, 과정 이수 시 대기업·벤처기업 등으로 채용 연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시 동 훈련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특별훈련수당 지급요건을 훈련장려금 요건과는 차등을 두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8)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빅데이터 등

9) 내일배움카드 한도는 300만원-500만원이고, 자부담이 있으나 동 훈련과정은 전액 무상 지원이다.

현재 훈련장려금 및 특별훈련수당은 매월 출석률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중도 탈락 비율이 평균 약 15%¹⁰⁾됨을 고려할 때, 전체 과정 중 50% 이상 이수자 등으로 한정하여 특별훈련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훈련과정의 평균 운영시간이 960시간임을 고려할 때, 총 훈련시간이 800시간 이상인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지급하는 방안 등 다양한 지급요건 강화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¹¹⁾

[내일배움카드 훈련유형별 훈련비 및 훈련기간]

(단위: 백만원, 시간)

구분	훈련유형		훈련비 (평균)	훈련기간 (평균)
고보기금	일반직종훈련	실업자	1.4	234
		재직자	0.5	73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5.4	744.3
	산업구조변화대응등 특화훈련		4.1	491.8
일반회계	K-Digital Training		10.2	921.2
	일반고특화훈련		7.6	1,187.4
	평생크레딧	K-디지털기초역량훈련	0.3	30.5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1.0	10.0

자료: 고용노동부

10) 2022년 7월 말 종료과정 기준으로 한 중탈락률, 수료율

세부 훈련유형	실시인원 (A)	중탈자 (B)	중탈률 (B/A)	수료인원 (C)	수료율 (C/A)
디지털 신기술아카데미	6,012	821	13.7%	4,809	80.0%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	1,265	178	14.1%	1,045	82.6%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411	62	15.1%	336	81.8%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	188	32	17.0%	149	79.3%

주: 실시인원은 중탈자, 수료인원 외 조기취업인원 비중 존재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11) 2022년 현재 운영 중인 훈련과정의 훈련시간은 최소 320시간부터 1,640시간까지 다양하다.

3-2.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 부진한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사업 규모 축소 필요

가. 현 황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¹²⁾은 미래 준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 등에게 경력설계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생크레딧 사업에 포함된다.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0억원 증액된 100억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내일배움카드(일반)	154,862	426,294	426,290	524,815	101,525	23.8
평생크레딧	-	32,500	32,500	35,000	2,500	7.7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	5,000	5,000	10,000	5,000	10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민간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해 심층적인 경력진단, 재취업 적합분야 상담, 취업 희망업종의 현직자 그룹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1월-9월 초까지는 만 45-54세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나, 2022년 9월 14일 제도개선을 통해 만 45세 이상으로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였고, 과정운영방식을 비대면 허용 및 찾아가는 상담 실시 등으로 개선하는 한편, 과정 수료시 훈련 자비부담을 환급해주도록 하였다.

2023년에는 2022년 9월 개선된 내용의 안정적 운영 및 연중에 국정과제¹³⁾ 취지에 맞추어 사업을 중장년층에서 전체 연령대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라는 입장인데, 현재 개편 사업 관련 구체적인 계획은 부재한 상태이다.

12) 내일배움카드(일반회계 1131-300)의 내내역사업

13)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 제도개선 내용]

구 분	기 준 ('22.1-9.13.)	개 선('22.9.14. 이후)
지원대상	• 만45세~54세 재직자	• 만45세 이상 재직자(특고 포함)
과정운영	• 대면 상담만 허용 • 찾아가는 상담 불가 • 프로그램 실시일 변경 시 고용센터 승인 필요	• 대면 상담 + 비대면 상담 허용 • 기업에서 원하는 경우 찾아가는 상담 가능 • 프로그램 실시일 변경 시 운영기관의 변경 신고로 가능
자비부담	• 훈련 자비부담(10%)	• 수료 시 자비부담 환급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의 2022년 9월 말 기준 예산 집행실적은 1% 미만으로 매우 저조하고,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예산안 편성내역과 다르게 사업 목적 및 내용을 변경하여 집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목표 인원 및 사업규모를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미래 준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경력 설계 제공을 위해 2022년 신규로 추진되었다. 2022년 목표인원은 5천명인데, '22년 9월 말 기준 참여인원은 172명으로 목표인원 대비 3.4%에 불과하고, 예산집행액은 3,800만원으로 0.76%의 집행률을 보이는 등 매우 부진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 목표인원을 올해 5,000명 대비 100% 확대된 1만명으로 설정하고, 예산액 또한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 편성하였다.

국정과제 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 과제목표

-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필요한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
- 온·오프라인, 일과 학습이 융합된 통합적 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

□ 주요내용

- (프로그램 재구조화) 재학-구직-재직-이·전직 등 생애단계별로 필요한 직업훈련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훈련프로그램 개편
 - 개인별 훈련계좌인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한 포괄적 직무기초능력 훈련과 경력설계서비스까지 확대 제공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2022년 9월 제도개선을 실시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자비부담 환급 등 참여 유인을 제고하였다는 설명이나, 9월 말 기준 1% 미만의 집행실적을 감안할 시 올해 예산의 상당부분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2023년도 목표인원 및 예산액이 과도하게 설정되었다고 보인다.

[2022년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인원			금액		
	목표인원	실시인원	실시율	예산	집행액	집행률
'22. 9월 말 기준	5,000	172	3.4	5,000	38	0.76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22년 상반기 공모를 통해 총 10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상담 가능인원 3,560명을 확보하였고, 하반기에 추가 공모를 통해 총 7개 기관을 추가로 선정하여 상담가능인원을 6,060명까지 확보하였으므로, 2023년도에는 집행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며, 2023년도 연중에 국정과제 취지를 고려하여 동 내역사업을 중장년층에서 전국민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으로, 사업규모가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2022년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자료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내역사업인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의 목표인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예산내역이 편성되어 있으며, 2023년 개편 예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이므로, 면밀한 사업계획 없이 목표인원을 확대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의 부진한 집행실적 감안 및 사업계획 부재 등을 감안하여 목표인원 및 사업규모를 집행가능한 규모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2023년도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비 편성내역]

내일배움카드(일반)
- 평생크레딧
나.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운영비: 10,000명*1,000,000원

자료: 고용노동부 2023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

고령자인재은행 타부처 사업과의 중복문제 및 성과 부진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필요

가. 현황

고령자인재은행 사업¹⁾은 취업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5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취업알선 및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4,500만원이 감액된 35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고령자인재은행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중장년층취업지원	22,252	21,306	21,306	22,281	975	4.58
고령자인재은행	3,719	3,667	3,667	3,522	△145	△3.95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비영리 법인, 공인단체 등을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2022년 9월 기준 전국에 42개의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 중이다²⁾.

나. 분석의견

고령자인재은행의 취업알선이 일용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과 내용이 일부 중복되고 있으므로 기관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성과가 부진한 기관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등 성과평가를 강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유다연 예산분석관(dayeonyoo@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1340-300의 내역사업

2) YWCA, 사회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이 해당된다.

고령자인재은행은 이용자 대부분이 60대 이상에 해당하며, 알선 일자리가 일용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21년도 기준 고령자인재은행의 참여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60대가 54.8%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60대 이상 참여자는 60.7%에 해당하였다. 2021년도 취업알선건수의 96%가 일용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60대 이상 참여자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21년도 고령자인재은행 참여자 연령대]

(단위: 명, %)

구분	50대	60대	70대 이상	총계
참여자수 (비중)	3,532 (39.1)	4,942 (54.8)	538 (5.9)	9,012 (100.0)

자료: 고용노동부

[2021년도 취업알선건수 내역]

(단위: 명, %)

구분	일용직	상용직	합계
취업알선건수 (비중)	182,337 (96.1)	7,403 (3.9)	189,740 (100.0)

자료: 고용노동부

2021년도 기준 직종별 알선 취업건수를 살펴보면, 청소 및 개인서비스직 비중이 78%,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비중이 14.5%에 해당되는 등 알선 취업건수의 92.5%가 청소·간병·육아 직종에 집중되고 있다.

[직종별 알선 취업건수]

(단위: 건수, %)

취업알선직종분류표(워크넷)	취업건수			비중
	2019	2020	2021	
	237,123	200,923	199,439	100.0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³⁾	187,837	160,407	155,749	78.1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31,078	25,445	28,903	14.5
음식 서비스직	6,303	4,371	4,578	2.3

(단위: 건수, %)

취업알선직종분류표(워크넷)	취업건수			비중
	2019	2020	2021	
	237,123	200,923	199,439	100.0
보건·의료직	2,289	2,343	1,748	0.87
농림어업직	1847	1693	1514	0.76
경호·경비직	1,543	1,270	1,318	0.66
교육직	1,286	1,434	966	0.48
영업·판매직	288	547	723	0.36
경영·행정·사무직	345	342	697	0.35
건설·채굴직	949	970	647	0.32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생산직	368	409	546	0.27
사회복지·종교직	1,119	323	528	0.26
제조 단순직	718	636	438	0.22
운전·운송직	297	193	361	0.18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12	12	171	0.086
관리직(임원·부서장)	242	139	130	0.065

주: 21년 기준 알선 건수 100건 이하 제외

자료: 고용노동부

한편,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2139-302)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활용하여 노인⁴⁾을 대상으로 직접 일자리(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는데, 고령자인재은행의 취업알선서비스와 그 대상 및 내용이 중복된다고 보인다.

구체적으로, 고령자인재은행의 이용층이 60대에 집중되고 있어 「노인복지법」상 노인과 대상 범위가 중복되며, 고령자인재은행의 주된 알선 직종이 청소·간병·육아 직종인데, 노인일자리사업 중 사회서비스형이 보육지원, 가정서비스 지원, 취약계층(장애인 및 노인) 맞춤형돌봄서비스 지원 일자리를 제공하며, 취업알선형은 청소직, 간병인, 농어촌인력, 경비원 등의 일자리를 연계하고 있어 고령자인재은행의 알선직 종과 범위가 중복된다고 보인다.

2022년도 기획재정부에서 수행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도 고령자인재은

3) 세분류 기준으로 청소·방역 및 가사서비스원,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환경 감시원, 목욕시설 정리원 등)이 해당됨

4) 만 65세 이상(일부 유형 만 60세 이상)

행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직접일자리사업 등과 유사중복되며, 사업실적도 부진하므로 3년(2023-2025)간 일정 수준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과 비교]

구분	고령자인재은행	노인일자리사업
근거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지원목적	고령자 취업알선 기능 강화 및 직업 능력개발 훈련 실시	취약노인의 소득보충 및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활동 지원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고령자	만 65세 이상 초고령자 (사회서비스형 일부유형, 민간형 60세 이상)
지원내용	- 고령자 구인·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 직업상담 및 재취업상담 - 직업능력개발훈련	① 공익활동형: 공익 증진을 위한 노인 사회참여활동(공공시설 봉사 등) ②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 제공(보육시설 돌봄 지원, 공공행정업무 지원 등) ③ 민간형 - (시장형사업단) 실버카페, 택배운송, 식료품 제조판매 등 수익사업을 운영하며 노인을 채용하는 일자리 - (취업알선형) 관련 업무능력이 있는 고령자를 민간기업(경비원, 간병인, 청소원 등)으로 취업 알선
운영기관	YWCA, 사회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방자치단체, 시니어클럽, 노인복지회관, 대한노인회,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관
23년도 예산	3,522 백만원	1,418,076 백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및 보건복지부 제출자료(2-1)를 바탕으로 재작성

고령자인재은행은 취업희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및 재취업상담, 직업능력 개발훈련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현재와 같이 단기·한시 일자리 위주의 일용직 알선보다는 참여자의 취업역량 제고 및 다양한 구인처 발굴을 통해 상용직 등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을 차별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성고가 계속해서 저하되고 있는데, 성과평가를 강화하여 성과가 부진한 기관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성과가 우수한 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확대하는 등 기관 운영체계를 재구조화하여 사업성고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최근 3년간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목표 및 실적을 살펴보면, 목표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고, 목표건수가 감소되고 있음에도 실적도 계속해서 미달하고 있다.

[고령자인재은행 최근 4년간 사업 목표 및 실적 내역]

(단위: 건수)

연도	목표			실적		
	일용	상용	합계	일용	상용	합계
2019	219,530	7,211	226,741	217,585	7,780	225,365
2020	213,687	7,185	213,687	183,538	7,017	190,555
2021	196,288	6,663	202,951	182,337	7,403	189,740
2022.9.	196,268	6,683	202,951	154,547	6,290	160,837

자료: 고용노동부

현행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고시)에 따르면, 평가 결과 3년 연속하여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 사업평가 중 최하위등급 부여 비율이 10%로 운영되고 있으며, 성과가 부진하더라도 3년 연속 C등급을 받는 기관은 집계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부터 사업평가를 강화하여 성과가 부진한 기관을 지정 취소하는 한편, 상용직 목표 건수를 상향하는 등 사업을 내실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⁵⁾

5) 고용노동부는 23년도부터 C등급 범위를 15~20%로 확대하여 성과평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차별화된 사업운영계획 마련 및 국고보조비율 적정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지역혁신프로젝트지원 사업¹⁾은 지역의 핵심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종합적인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356억원이 증액된 650억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153,528	132,704	132,667	147,504	14,800	11.2
자치단체지원	142,623	122,075	122,075	135,875	13,800	11.3
지역혁신프로젝트 지원	24,255	29,400	29,400	65,000	35,600	121.1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2023년도 지역혁신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기존 운영 중인 사업 외에 중앙정부 일자리사업과 연계하는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이 추가 편성됨에 따라 356억원이 증액되었다.

[2023년도 지역혁신프로젝트 지원 사업 세부 편성내역]

* 지역혁신프로젝트(650억원) = (기존)지역혁신(294억원) + (신설)플러스사업(356억원)

주: 예산안에는 지역혁신프로젝트 지원 사업의 예산 규모가 2배 이상 확대되는 것으로 편성됨, 다만, 증액된 예산안에 해당하는 사업이 별도 공모를 통해 운영되며 목적 및 지원내용에 차이가 있는 바,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을 기존 지역혁신프로젝트라 하고, 신규로 증액된 예산안의 사업내용을 플러스사업이라고 함.

자료: 고용노동부

유다연 예산분석관(dayeonyoo@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056-317의 내내역사업

기존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및 신규 추진되는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이하 “플러스사업”)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조사업 및 공모사업으로 운영되며, 자치단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총사업비의 70-90%를 국비로 보조한다.

기존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은 광역자치단체별로 최대 3개 프로젝트까지 연 최대 50억원, 2-4년 한도로 지원하고 있는데, 신설되는 플러스사업은 선정되는 업종에 따라 관련 있는 지자체에 지원할 예정으로, 2022년 9월 말 기준 지원금액 한도 등은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기존 지역혁신프로젝트 및 플러스사업 비교]

구분	지역혁신프로젝트(2016~)	플러스사업(2023~)
주요 목적	지역 기반 고용창출 지원	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구인난 개선 지원 등)
지원 대상	(공통) 광역자치단체 (기초단체 컨소시엄 참여가능)	
지원 내용	중앙정부 일자리사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주도 고용서비스 (취업알선, 교육훈련 등) 지원	직업훈련, 근로자·기업장려금 등 중앙일자리사업과 연계·우대(PLUS) 지원
사업 프로세스	(공통) 자치단체 공모사업 사업설계(자치단체) → 심사·선정(고용부) → 사업수행(자치단체) → 평가(고용부)	
보조 비율	자치단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총사업비의 70-90%를 국고 보조	
지원 금액	지자체별 연 최대 50억원, 2-4년 한도로 지원	미정 총액 356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모두 기존 지역혁신프로젝트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신규 추진되는 플러스사업의 지원 내용이 기존 사업과 중복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을 차별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기존 지역혁신프로젝트는 광역자치단체의 일자리사업 프로젝트를 2~4년 기간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7개의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사업을 지원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지역혁신사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고용창출 지원 사업으로 중앙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영역을 지원내용으로 하며, 신규 추진되는 플러스사업은 지역주력 ‘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내용을 우대하는 것이므로 사업이 차별화된다는 설명이다.

신규 플러스사업 지원내용의 예시로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 연계한 훈련 인프라 확충 및 훈련수당 추가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취업성공수당 추가 지급,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가입요건 완화 등을 들고 있다.

그런데, 현재 기존 지역혁신사업으로 선정되어 운영되는 지역 기반 일자리사업이 대부분 지역 내 주력 산업과 연관되어 설계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에서는 중앙정부 일자리사업과 연계된 사업 또는 유사한 취지의 사업을 이미 운영 중에 있다.

예를 들어, 조선업 밀집지역의 경우 조선업 구인난 해소 지원을 위한 조선업 내일채움 공제사업을, 소재부품기업 밀집지역에서는 첨단모빌리티 소재부품산업을 위한 내일채움공제사업을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는 지역혁신프로젝트 신규사업 선정 및 계속사업 심사 시 ‘지역-산업 연계사업’, ‘중앙부처 산업, 경제정책 지원사업 등과 연계되는 사업’ 등을 평가항목에서 가산점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보이는데, 신규 추진되는 플러스사업의 지원 목적 및 사업내용과 중복될 소지가 있다고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신규로 추진하려는 플러스사업이 기존 지역혁신프로젝트사업에서 지원 중인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차별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역혁신프로젝트 지원 사업 심사표]

신규사업 심사표	
평 가 항 목	
총 계	
1. 지역 수요 대응성(30)	
◦지역 노동시장의 시급한 과제(현안) 해결 대응 정도 ◦지역 전략 및 주력 산업과의 대응 정도	
2. 사업수행능력, 파트너십(20)	
◦각 운영기관의 사업역량 ◦유사사업 수행경험 ◦관련사업 전문인력 확보 정도 ◦재원확보능력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 간의 파트너십 (협력·연계체계 구축) 정도	
3. 사업전략(30)	
◦사업목표의 적절성(목표가 지역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는지 여부 등)과 실현 가능성 ◦사업 내용의 적절성	
4. 기대효과(20)	
◦일자리 창출 또는 일자리 질 개선 ◦지원종료 후 사업의 지속가능성	
5. 가점(최대 15)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일자리사업(5)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취업지원사업(3) ◦중앙부처 산업·경제정책 지원사업 등과 연계 추진하는 일자리사업(3) ◦자치단체장 공약,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를 이행하기 위해,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지역고용심의회),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지역 거버넌스의 심의를 거쳐 제출한 사업(3) ◦지역-산업 연계 특화사업(3) ◦저탄소·디지털 등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동전환 일자리 사업(3)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둘째, 동 사업의 국고보조율은 매년 예산으로 정해서 운영되며 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70-90%로 지원되고 있는데, 유사한 사업과 비교할 때 국고보조율이 높다고 보이므로, 국고보조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²⁾ 및 동법 시행령 제4조³⁾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의 경우 별표 1에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범위와 기준보조율을 명시하여야 한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은 시행령 별표 1의 제122호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을 적용하여, 매년 예산으로 국고보조율을 정하고 있다.

동 사업의 국고보조율은 70-90%이며,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된다. 그런데, 플러스사업과 같이 중앙정부 사업으로 기 지원하고 있는 사업 내용에 지원 금액을 플러스 해서 지원하는 경우까지 국비 지원비율을 최대 90%까지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 중인 지자체 보조사업 중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1336-302) 세부사업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을 지역사회의 일자리로 연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국고보조비율을 50%(서울은 30%)로 운영하고 있다.

2)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류,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3)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자체 일자리 보조사업 보조율 및 예산액 비교]

(단위: %, 백만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내역사업명	국고보조율	예산액	내역사업명	국고보조율	예산액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70-90	51,290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50 (서울 30)	25,696
지역혁신프로젝트지원('23 플러스사업 포함)	70-90	65,000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2139-302) 세부 사업도 노인일자리 제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운영되는데, 국고보조비율이 서울 30%, 서울 외 지방은 50%로 운영되고 있다.

일자리사업은 국가사업이기도 하지만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하는 사업의 성격도 가지므로, 지역 내 일자리창출 목표 달성 및 지자체 책임감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부담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특히, 지역사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은 다양한 내역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수 사업이 지원되고 있는데⁴⁾, 고용노동부는 유사한 사업 지원 방지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감 강화 등을 위해 타 사업을 참고하여 지자체의 부담비율을 일부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4) 일부 지역의 경우 ① 고용위기지역지원 사업, ②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③지역혁신프로젝트 지원사업 등 모든 내역사업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기업직업훈련카드 사업 시범사업 효과를 면밀히 검토 후 사업 추진 필요

가. 현 황

기업직업훈련카드 사업¹⁾은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재직자 훈련 지원 관련 행정, 비용 부담 등을 완화하는 훈련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되었으며, 357억원이 반영되었다.

[2023년도 기업직업훈련카드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284,803	274,429	274,429	308,030	33,601	12.2
일반훈련	234,906	215,261	215,261	248,458	33,197	15.4
기업직업훈련카드	-	-	-	35,700	35,700	순증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기업직업훈련카드는 일반훈련 내역사업²⁾을 구성하는 사업으로,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기업훈련 여건 및 수요에 맞게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훈련바우처 형태의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참여율이 저조함에 따라 훈련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직업훈련카드라는 훈련제도 형태화를 추진하는 한편, 훈련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자부담 해소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은 위탁훈련시 10%의 자부담이 있는데, 기업직업훈련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부담이 면제되고, 기업이 훈련실시계획서 제출 시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 간소화된(현행 32개→16개).

유다연 예산분석관(dayeonyoo@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고용보험기금 1152-350의 내내역사업

2) 2023년도 일반훈련 내역사업은 ①일반직무훈련, ②기업직업훈련카드, ③고숙련·신기술 훈련, ④재직자 디지털융합훈련, ⑤장기유급휴가훈련으로 구성된다.

[2023년도 일반직무훈련 및 기업직업훈련카드 비교]

구분	(기존)일반직무훈련	기업직업훈련카드
목적	재직자 등의 직무능력 향상 지원	재직자 등의 직무능력 향상 지원 중소기업 직업훈련 참여 활성화
대상기업	모든 고용보험 가입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³⁾
주요내용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00% - 중소기업은 240%, 최소 5백만원 한도 내 훈련비 지원	최대 5백만원 한도 내 훈련비 지원
특징	기업 규모, 직무법정훈련 여부에 따라 자부담 부과 * 중소기업 위탁훈련 시 10% 자부담	1)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 제한 2) 행정절차 간소화 (훈련과정 인정 신청 시 전산입력 항목 32→16개) 3) 위탁훈련 시 자부담 10% 면제 * 직무법정훈련은 지원 자체가 제외
23 예산	1,479억	357억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고용노동부는 기업직업훈련카드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해 2022년도 1천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에 대한 수요 및 사업 효과성이 분석되지 않았음에도 2023년도 예산안에 대상물량을 15배 확대 편성하고 있어 예산 집행 및 사업 효과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시범사업의 집행실적 및 사업 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 기업직업훈련카드 사업 예산으로 357억원을 편성하고 있다. 대상기업 1만 5,000개 및 지원단가 238만원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별표1에서는 업종별로 상시근로자수를 100명이하~500명이하로 세부 분류하고 있다.

[기업직업훈련카드 예산안 산출내역]

(산출) 35,700백만원 (1.5만개소×2,380천원)

- 지원기업 신규(1.5만개소) 및 지원단가 2,380천원(기업당 일반직무 20명 훈련비)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기업직업훈련카드의 전면 도입 전에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해 2022년도 1,000개소를 목표로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2년 8월 19일 시범사업을 공고하였으며, '22년 9월 말 기준 285개 기업이 선정되어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에도 1,000개소를 대상으로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실제 훈련을 실시한 기관은 32개로 실적이 매우 부진하였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시범사업에서는 지원대상 요건이 '최근 3년간 훈련 관련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으로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었으며, 위탁 훈련시 자부담 10%가 그대로 적용되어 실적이 저조하였다는 설명이다. 2022년도 시범사업에서는 별도 요건 없이 '우선 지원대상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고, 자부담 10%가 면제되어 참여 유인이 제고되었기에 사업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2021년 및 2022년 시범사업 비교]

구분	2021	2022
목적	중소기업 직업훈련 참여 활성화	
대상기업	1)~3)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1) 최근 3년간 훈련 참여 이력 없음 2)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3) 우선지원대상기업	모든 우선지원대상기업
주요내용	최대 5백만원 한도 내 훈련비 지원	
차이점	- 위탁훈련시 자부담 10% 유지 - 행정절차 간소화 미제공	- 위탁훈련 시 자부담 10% 면제 - 행정절차 간소화 (훈련과정 인정 신청 시 전산업력 항목 32→16개)
목표물량	1,000개소	
실적	32개소 (3.2%)	285개소 (28.5%, 9.27. 기준)
예산액	69백만원 (집행액)	약 50억 (1천개소*5백만원 한도)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22년 시범사업을 설계함에 있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참여 기업 요건 완화·인센티브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였고, 목표물량 1,000개소를 선착순으로 모집·지원해주는 구조로 설계하였는데, '22년 9월 말 기준 참여기업은 285개소에 불과하다. 또한,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발급받은 기업이 실제 카드를 이용하여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아직 훈련실적, 훈련성과 등은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다.

고용노동부는 정부지원 훈련을 받은 중소기업 약 11만개소('21년 기준)의 10% 규모 및 3년간(2018-2020년) 정부지원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신규기업 약 2만 여개소를 감안하여 2023년도 기업직업훈련카드 대상 기업으로 1.5만개소를 편성하였으며, 기업직업훈련카드 사업이 현재 운영 중인 일반직무훈련과 동일한 목적과 취지를 가지는 사업으로서 별도의 신규 훈련사업이 아닌 기업훈련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해당하는바, 2023년도 목표물량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제도개선을 추진한 사업의 예산을 신규 반영한 것임에 따라 기존 훈련사업 예산은 일부 감액되었는데(일반직무훈련 1556억 9,600만원→1,479억 1,100만원, △77억 8,500만원), 기업직업훈련카드 예산은 357억원이 증액되었는바, 결과적으로 신규 직업훈련 예산비용은 279억원 증액되었다.

[2022년 및 2023년 일반훈련 내역사업 편성내역]

구분	일반직무훈련	기업직업훈련카드
목적	재직자 등의 직무능력 향상 지원	재직자 등의 직무능력 향상 지원 중소기업 직업훈련 참여 활성화
대상기업	모든 고용보험 가입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2022년 예산	155,696백만원 - 2,104천명*74천원	5,000백만원 - 1천개소*5백만원 * 일반직무훈련 예산에서 사용
2023년 예산(안)	147,911백만원 - 1,243천명*119천원	35,700백만원 - 15,000개소*2,380천원
증감	27,915백만원 증액(△7,785백만원+35,700백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현재 시범사업 참여기업 실적⁴⁾ 및 실제 훈련성과 등이 분석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3년도 15,000개소로 물량을 확대하고 있어 증액된 예산에 대한 집행 우려가 있다.

또한, 기존에 일반직무훈련으로 참여하였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자부담 10% 삭제, 행정 부담 완화 등의 이유로 기존 훈련방식이 아닌 기업직업훈련카드를 통해 훈련을 실시할 유인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신규기업의 직업훈련 참여 제고라는 기업직업훈련카드 발급 목적 또한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⁵⁾.

고용노동부는 신규기업 참여도가 높지 않으면 예산이 불용되거나 목적 외로 집행될 우려가 있으므로 2년간의 시범사업 실적 및 효과, 기존 일반직무훈련 내 중소기업의 참여실적 등을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4) 2022년 시범사업 대상은 상반기에 정부지원을 받은 기업도 추가로 참여 가능한바, 기존 정부지원 훈련 미실시 사업장의 신규 참여실적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5)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일반직무훈련 전체 예산집행액 대비 71.5%, 2021년 87%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직무훈련 집행내역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중]

(단위: 백만원, 명, %)

구분	예산액	실집행금액	지원인원
		우선지원대상기업(비중)	우선지원대상기업(비중)
2020	215,540	180,821	2,264,985
		129,369(71.5)	1,618,323(71.4)
2021	208,996	223,744	1,880,202
		181,917(81.3)	1,437,431(76.4)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가. 현 황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¹⁾은 중소기업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이 미흡한 위험기계 교체, 위험·공정장비 개선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561억 2,100만원이 증액된 5,069억 7,400만원 편성되었다.

[2023년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399,900	450,583	450,583	506,974	56,121	12.4
유해위험요인시설개선	121,304	119,707	119,707	119,707	0	0
안전투자혁신사업	272,528	327,100	327,100	319,880	△7,220	△2.2
건강ilter조성지원	-	-	-	38,117	38,117	순증
스마트안전장비 발굴·확산	-	-	-	25,000	25,000	순증
클린사업장 사후관리 및 사업수행경비	6,137	4,046	4,046	4,270	224	5.5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2023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에는 건강ilter 조성지원 내역사업 및 스마트 안전장비 발굴·확산 내역사업이 신규 반영되면서 전년 대비 예산액이 561억 2,100만원 증액되었다.

건강ilter 조성지원 사업은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한 국소배기장치 설치 지원사업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는바, 휴게시설 설치 이행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구성되며, 각각 158억 2,500만원, 222억 9,200만원이 반영되었다.

스마트안전장비 발굴·보급사업은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치·설비를 중소기업장에 보급·확산하려는 지원 사업으로, 250억원이 편성되었다.

유다연 예산분석관(dayeonyoo@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151-350

계속사업으로는 유해위험요인시설개선 사업(1,197억 7백만원), 안전투자혁신사업(3,198억 8,000만원), 클린사업장 사후관리 및 사업수행경비(42억 7,000만원)가 편성되고 있다.

[2023년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예산액	편 성 내 역
유해위험요인시설개선	119,707	-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개선 비용 보조 - (제조·서비스) 34,240, (건설) 71,467, (화재폭발 및 폭염) 14,000
안전투자혁신사업	319,880	- 위험기계·기구 개선지원 96,980 - 위험공정 개선지원 222,900
건강일터조성지원	38,117	- 휴게시설 설치지원 22,292 - 국소배기장치 재정지원 15,825
스마트안전장비 발굴·확산	25,000	- 스마트 안전장비 중소기업자 보급 지원비용(민간보조 80%)
클린사업장 사후관리 및 사업수행경비	4,270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수행을 위한 기본경비 및 사후관리 비용 등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7-1. 스마트 안전장비 발굴·확산 사업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가. 현 황

스마트 안전장비 발굴·확산 사업²⁾은 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가 있는 스마트 안전장치·설비를 발굴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장에 보급·확산하려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신규 반영되었으며, 총 250억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스마트 안전장비 발굴·확산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399,900	450,853	450,853	506,974	56,121	12.4
스마트안전장비 발굴·확산	-	-	-	25,000	25,000	순증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현재 중소기업장이 재정적 영세성, 신기술 정보습득 한계 및 기존 작업방식의 관성으로 스마트 안전장치·설비의 도입 수준이 낮으므로, 국가에서 민간에서 개발·활용중인 스마트 안전장비를 발굴하여 재해예방 효과를 확인한 후 재정지원 품목으로 포함하여 중소기업장에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동 사업은 민간 보조 80%로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시 대표품목으로 산업용로봇을 선정하고, 산업용로봇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3D 스캐너³⁾를 설치하는 비용을 계상하여 250억원을 편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용로봇 18,097대에 시장확산이 탄력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기준 16%⁴⁾를 적용하여

2) 코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151-350의 내역사업

3)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용로봇에 설치하는 3D스캐너는 기존 로봇에 설치하는 출입문 인터록장치, 안전매트 등의 단순 전원차단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센서와 제어기간의 실시간 통신을 통해 위험영역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동작을 제어하는 스마트 안전장비에 해당한다.

4) 고용노동부는 소비자 혁신 확산이론을 참고하여 제품 생산 후 16% 이상 판매되었을 때 사회적 파급 효과에 따라 대다수의 소비자가 사용을 시작하게 되므로, 국가에서 중소기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보

2,890대를 지원규모로 설정하였고, 현행 시장 가격을 고려한 3D 설치비용 단가를 865만원으로 책정하여 총 250억원을 산출하였다.

[스마트 안전장비 발굴·확산 사업 세부 산출내역]

- (산출내역) 2,890대 * 865만원 = 250억원
50인미만 사업장 보유 산업용로봇 2,890대*(18,097대의 16%**)에 3D스캐너 설치비용 (8.65백만원) 적용
* 19년 작업환경 실태조사 결과 18,097대, 사업장당 평균 6대 보유
- 지원한도(3천만원)를 고려하여 사업장당 최대 3개 지원을 전제로 산정
** 대다수의 소비자가 사용을 시작하는 범위 16% (소비자 혁신 확산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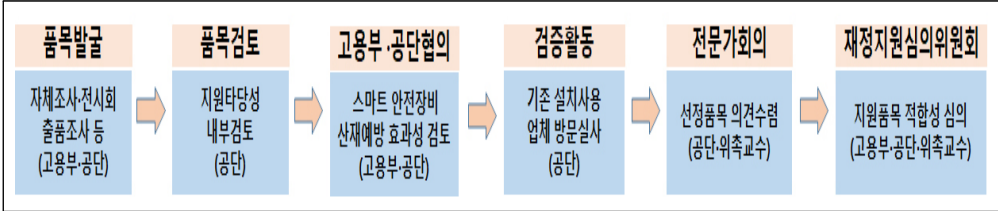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고용노동부는 스마트 안전장비 품목을 계속해서 조사·발굴하여 다양한 품목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인데,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과 실제 운영계획이 불일치하며, 민간사업장에 대한 수요조사를 선행하지 않고 예산안을 편성함에 따라 예산 집행 가능성이 우려되는바 2023년도 예산 집행을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산업용로봇 기준으로 16%의 보급률을 적용하여 편성하였는데, 실제 운영계획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전시회 참석 및 온라인자료 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품목을 발굴하고, 산재예방 효과성을 검토하여 여러 품목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스마트 안전장비 품목 발굴 절차]



자료: 고용노동부

급이 보편화 될 수 있도록 16%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신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검토 품목(안)]

구분	예방분야	세부품목
안전 품목 (15개)	끼임·충돌 위험예방 (5개 품목)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
		로봇작업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자동화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고정식 접근경보장치(안전레이저스캐너)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레이더센서)
	전도위험예방 (3개 품목)	지게차 전도방지장치(로드센서)
		이동식 크레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충돌위험예방 (3개 품목)	차량계 건설기계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지능형 충돌방지시스템
		지게차 운행 자동 충돌방지시스템
		이동식 접근경보장치(안전레이저스캐너)
	낙하위험예방 (2개 품목)	휴대용 와이어로프 비파괴 검사장비
		타워크레인 와이어로프 온라인 모니터링시스템
	추락위험예방 (1개 품목)	고소작업자 추락사망예방 착용형 추락보호에어백
	화재폭발위험예방 (1개 품목)	인화성가스 통합모니터링시스템
보건 품목 (3개)	근골격계질환예방 (2개 품목)	근력보조슈트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장치
	난청질환예방 (1개 품목)	스마트 귀마개 이어폰
기타 품목 (1개)	다형태예방 (1개 품목)	스마트 이동형 CCTV 모니터링시스템

자료: 고용노동부

각 사업장마다 필요한 스마트 안전장비가 다양할 수 있으므로, 여러 품목을 발굴하여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타당성이 있어 보이나,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시 대표

품목으로 산업용로봇을 선정하여 파급효과를 고려한 수준으로 보급률을 정의하고 단가를 정하였는데, 예산안 편성내역과 운영계획이 불일치하여 예산 집행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스마트안전장비가 국내 대기업을 통해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단계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등 스마트안전장비에 대한 관심이 낮아 수요조사를 선행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⁵⁾.

그러나,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위해서는 예산안 편성 이전에 지원 대상 품목을 검토·선정하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수요가 높은 품목 기준으로 집행 가능한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했다고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예산안 편성 시 수요조사 및 집행계획을 근거로 다양한 품목의 단가를 반영하는 한편, 동 사업의 국고보조비율이 80%로 민간 부담분이 20% 존재하는바, 사업장들이 현재 사용 중인 장비를 대체할 유인이 있도록 효과성이 높은 품목을 발굴하여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5) 다만, 신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검토 품목(안)이 1차적으로 선정됨에 따라 2022년 8월 22부터 11월 18일까지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았던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7-2. 휴게시설 설치지원 단년도 한시사업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가. 현 황

휴게시설 설치지원 사업⁶⁾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3년도에만 한시 운영된다. 2023년도 예산안에는 222억 9,20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다.

[2023년도 휴게시설 설치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399,900	450,853	450,853	506,974	56,121	12.4
건강일터조성지원	-	-	-	38,117	38,117	순증
휴게시설 설치지원	-	-	-	22,292	22,292	순증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개정('21.8.17.)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일부 사업장은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⁷⁾.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치 비용의 70%를 보조하는 단년도 한시사업을 편성하였으며, 한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6) 코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151-350의 내내역사업

7)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3. 제1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의2. 제1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예산안 지원사업장 수를 6,588개소로 추계하였는데,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이 되는 7개 취약직종⁸⁾의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수(①28,199개소)와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주요 국가산업단지의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수(②14,583개소)를 기준으로 50인 미만 휴게시설 미설치 비율인 15.4%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각 사업장당 지원단가로 설정한 338만 4,000원은, 휴게시설 설치 방식 중 조립식 사무실 설치 방식을 가정하여 9㎡ 기준 설치비용 421만 2,000원 및 휴게시설에 필요한 냉난방기·전기기구·의자 등 비품 비용 62만 2,500원을 합산한 총 483만 4,500원에 보조지원비율 70%를 적용해 산정하였다.

[휴게시설 설치지원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산출) **22,292백만원=6,588개소*3,384천원**

- **6,588개소** = (①28,199개소+②14,583개소)*15.4%*

*'22년 휴게시설 설치 실태조사 결과, 50인 미만 휴게시설 미설치 비율인 15.4% 적용

- **3,384천원** = [468,000원(한국부동산원 '21년 조립식사무실 신축단가)/㎡×9㎡ + 622,500원(냉·난방기, 전기기구, 의자 등 부대비용)] × 70%

*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은 기존 공간 재배치, 컨테이너·조립식 사무실(샌드위치 판넬) 설치, 임차, 공동 설치 등 매우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나, 이 중 조립식 사무실을 설치하는 방식을 가정하여 단가를 산정

** 휴게시설에 필요한 비품 비용은 냉난방기 477,000원, 전기기구 13,000원, 의자 132,500원 적용('21년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연구용역, 고용노동부 '21.12월)

자료: 고용노동부

8)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7개 직종

나. 분석의견

휴게시설 설치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동 사업은 법률에서 규정한 시행일을 하위법령에서 1년 연장하여 시행하면서 지원하려는 것인데, 향후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 시행일에 맞추어 필요한 지원사업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당시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부 사업장은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강화하여 규정하였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법률은 2021년 8월 17일 개정되었는데, 하위법령 제정 및 사업장의 설치 이행기간을 고려하여 법 시행일은 1년 이후로 설정하였다⁹⁾.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일인 2022년 8월 16일에 맞추어 시행령을 개정하였는데,¹⁰⁾ 5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령이 시행되도록 하였으나, 50명 미만 사업장 및 7개 취약직종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행일을 1년 유예하여 2023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9) 부칙<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다)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

가. 전화 상담원

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

다. 텔레마케터

라. 배달원

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바. 아파트 경비원

사. 건물 경비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22.8.16.개정)

부칙

제2조(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적용 사업장에 대한 적용례)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022년 8월 18일**
2.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023년 8월 18일**
3. 제96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 **2023년 8월 18일**

고용노동부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의 제정을 위해 노사 의견수렴, 연구용역, 정부 규제심사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장시간이 소요되었으며¹¹⁾, 50명 미만 및 7개 취약 직종의 사업장은 재정적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의무 이행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였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법률 개정 당시 소속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업장에 조속히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간 및 설치이행기간을 감안하여 1년을 유예기간으로 부여한 것인데, 하위법령 개정이 늦게 이루어짐에 따라 일부 사업장에서는 시행 준비기간이 부족하게 되었다.

50명 미만 사업장 및 7개 취약 직종의 사업장은 재정적 영세성 등을 감안하여 설치의무 이행기간을 보다 길게 부여할 현실적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나, 법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보다 빨리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법률 개정 취지에 맞추어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필요한 지원사업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11)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으로 위임된 제재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범위에 대하여 노사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연구용역 및 노사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입법예고를 2022.4.25-6.7.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둘째, 법률상 의무 이행 지원을 위해 비용보조사업을 편성함에 따라 미리 의무를 이행한 선의의 사업주는 비용보조를 받지 못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 가능하다고 보인다.

2023년도 예산안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비용 보조사업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 재정적 영세성에도 불구하고 미리 설치의무를 이행한 선의의 사업주는 비용보조 지원대상이 될 수 있었음에도 비용보조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9월 말 현재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요건 및 우선순위 등에 대한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인데¹²⁾, 지원대상 요건 등을 조속히 확정하여 보조사업 대상이 되는 사업장에 미리 안내할 필요가 있다.

셋째, 2023년 예산안 편성 당시 실시한 수요조사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철저한 계획 수립 및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특히,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장(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 및 기준에 미달되는 휴게시설 설치 사업장)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예산안 편성 시 2022년 실시한 휴게시설 설치 실태조사 자료의 미설치비율 15.4%를 적용하여 지원 기업 수를 추계하였다.

2022년 실시한 실태조사는 10인 이상 중소기업 250개소(이 중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은 214개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치/미설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미설치비율 15.4%를 도출하였다.

12) 고용노동부는 2022년 9월 말 현재 휴게시설 설치 대상기업 선정 세부계획을 수립 중이며, 근로자 수, 취약직종 종사여부, 뇌심혈관계질환 발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우선지원 선정기준을 검토 중에 있다는 입장이다.

[예산안 편성시 참고한 휴게시설 설치 실태조사 결과]

〈휴게시설 설치 실태조사(중소기업중앙회 및 경총, '22.1월)〉

- 대상: 10인 이상 중소기업체

구 분	사례수 (명)	설치	미설치
전체	(250)	86.4%	13.6%
10~20인	(118)	78.8%	21.2%
20~50인	(96)	91.7%	8.3%
50~100인	(24)	95.8%	4.2%
100인 이상	(12)	100.0%	-

자료: 고용노동부

그런데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전체 50인 미만 중소기업 중에서 7개 취약직종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종 및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주요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장으로 범위가 한정되는데, 실제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장 기준으로는 면밀한 사전수요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은 2023년 단년도 한시로만 운영될 예정이므로, 대상이 되는 사업장에 대한 수요를 조속히 파악하여 사업장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미설치 사업장 외에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장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 외에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장 등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요건 및 지원내용을 보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대상]

구분	과태료 1,500만원 이하 부과	과태료 1,000만원 이하 부과
대상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내용 재구성

가. 현 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¹⁾은 역량·재정 부족으로 자율적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이행이 어려운 중소기업 사업장에 컨설팅을 지원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현장 안착과 자율 안전보건관리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323억 7,600만원 증액된 381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업종별 재해예방	80,301	91,386	91,386	131,530	40,144	43.9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5,952	12,187	12,187	53,942	41,755	342.6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5,800	5,800	38,176	32,376	558.2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1.1.26.)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제외한 전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가 부여되었다.²⁾³⁾ 법률에서는 제도의 현장 안착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연기하

유다연 예산분석관(dayeonyoo@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152-350의 내내역사업

2)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 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고 있는데, 2022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2024년 1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전 사업장에 의무가 부여된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전 사업장에 의무가 부과되므로, 중대재해 처벌법 요구사항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50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구축 컨설팅 등 정 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2022년도 50인 이상 사업장 대상 목표물량 2,000개를 2023년도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16,000개로 확대하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접수행 5,500 개소, 민간위탁 수행 10,500개로 구분하여 편성하였다. 공단은 고위험 업종 및 고 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방침 설정, 안전보건업무 총괄하는 전담 조직 설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 안전보건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할 수행,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 배치 등

[2022년 및 2023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내용 비교]

구분	2022	2023
사업대상 (업종/규모)	(제조업 등) 근로자수 50인~299인 (건설업) 해당사항 없음	(제조업 등) 근로자수 5~50인 미만 고위험·중위험군 사업장 (건설업) 시공능력 200위 또는 1000위 초과 등 고위험·중위험군 사업장
목표개소	2,000개소	16,000개소
지원횟수	(공단직접) 해당사항 없음 (민간위탁) 4회 이내	(공단직접) 3회 (고위험업종) (민간위탁) (제조업 등) 5회 (건설업) 7회
지원단가	400천원 ¹⁾ /회	600천원/회
예산	5,800백만원	38,176백만원
지원내용	현장중심의 안전보건조치 준수여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7가지 핵심요소* 이행여부를 현장방문을 통해 단계별 기술지도 실시 * ①경영자리더십, ②근로자 참여, ③위험요인 파악, ④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⑤비상조치계획 수립, ⑥도급관리, ⑦평가 및 개선	

주: 2022년 예산안 편성시에는 단가를 4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실제 운용시에는 시장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60만원으로 집행됨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확대되고 있는 민간위탁 방문 횟수(현행 4회→제조업 등 5회, 건설업 7회)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다 많은 사업장이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운영방식을 재설계하는 한편, 2022년 대비 5배 이상 확대된 물량에 대응하여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기관을 조기에 확보하는 등 사업의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 공단이 직접 수행하는 고위험업종 및 고위험 사업장 대상 방문 횟수를 3회로, 민간위탁으로 수행하는 컨설팅 방문 횟수는 제조업·기타사업 5회, 건설업 7회로 설정하고 있다.

[컨설팅 사업대상 및 지원횟수 비교]

구분	2022	2023
사업대상	(민간위탁) 산재발생 등 위험도 순을 우선 순위로 적용하여 고위험·중위험 사업장 * 건설업은 미지원	(공단직접) 고위험 사업장 (민간위탁) 중위험 사업장
지원횟수	(민간위탁) 4회 이내	(공단직접) 3회 (민간위탁) 제조업 등 5회, 건설업 7회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22년 컨설팅 사업 대상은 50~299인의 중규모 사업장으로서 대부분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등 안전보건업무 담당자가 있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시 비교적 용이했던 반면, 2023년 사업대상인 5~49인의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등 선임의무가 없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시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원횟수를 늘렸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2023년도는 공단에서 고위험업종 및 고위험사업장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지원에 필요한 횟수를 3회 방문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의 지원대상은 중위험업종으로 위험도가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방문횟수를 5회 및 7회로 공단 방문횟수의 약 2배 가량으로 설정하고 있어, 방문횟수 등이 적절하게 설계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먼저, 고용노동부에서 설계하고 있는 단계별 컨설팅 내용을 살펴보면, ① 제조업 등 대상인 경우 컨설팅 4회차·5회차에서 수행할 기술지도 사항이 미개선 사항에 대한 확인·점검인데, 2회차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2023년도 제조업 등 기준 단계별 기술지도 사항]

단계(회차)별 컨설팅 내용	기술지도 회차	
	민간	공단
(1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기본사항 설명, 사업장 현황 파악 및 안전관리 상태 점검	1회	1회
(2단계) 현장의 위험요인 파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현황 점검, 개선방안 제시	2회	
(3단계)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및 구축결과 피드백(근로자 교육)	3회	2회
(4단계) 3단계까지 미개선 사항 확인·점검 개선 상태 불량 등 추가 개선사항 확인 지도	4회	
(5단계) 4단계까지 미개선 사항 확인·점검, 경영책임자 면담을 통한 구축결과 설명 및 강평	5회	3회

자료: 고용노동부

② 건설업 대상인 경우는 현장 4회, 본사 3회 등으로 총 7회를 설정하고 있는데, 2단계 중 본사 CEO 면담·강평을 별도 1회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는지, 3단계 중 본사 담당자와 함께 현장에 방문하여 이행내역을 점검하는데, 회차를 나누어 본사 담당자와 미팅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도 건설업 기준 단계별 기술지도 사항]

단계(회차)별 컨설팅 내용		기술지도 회차	
		민간	공단
1단계	(문제점 파악)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실태 점검 현장 1차 컨설팅 실시	1회	1회
	①(매뉴얼 적용) '건설업 자율점검표' 내용을 반영하여 본사 및 현장의 안전 보건관리체계를 점검·평가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컨설팅 매뉴얼 적용		
	②(핵심 점검사항) 건설업체에서 제출한 자율점검표 중 현장 중심의 핵심점검 사항 위주로 확인*(공정진행에 따른 위험요인별 안전보건조치, 개선 등) * 현장소장의 개선의지가 없거나, 중대한 위험 발견 시 노동부 감독 요청		
	③(본사컨설팅 연계) 점검결과 안전시설 미흡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현장 분야 체계 부적정 항목은 전산에 입력하여 본사 컨설팅 시 활용	2회	
2단계	(맞춤식 컨설팅 지원) 본사에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7가지 핵심요소 이행을 위한 해당업체 현장과 연계한 컨설팅(필요시 2회) 지원	3회	2회
	①(본사컨설팅 및 조치) 자율점검표 중 본사 점검항목(안전보건관리체계)과 1차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지적 사항을 종합하여 컨설팅 결과서 작성	4회	(필요 시 1회 추가)
	②(CEO 면담강령) 본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확인 결과에 대해 CEO와 면담하여 체계 핵심요소에 대한 강령*(필요시 지방관서 참여) * 가급적 CEO 면담 가능일자에 컨설팅을 실시하고, 면담 회피 등 비협조 업체의 경우 노동부 감독과 연계하여 현장 작동성 강화	5회	
3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해당업체 본사 담당자와 함께 2차 현장 컨설팅 지원을 통해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장작동성이 확보되도록 컨설팅	6회	3회
	①(본사컨설팅 결과 반영) 본사 담당자와 현장에 방문하여 그간 컨설팅 실시 결과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 개선 유도	7회	
	②(현장작동성 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별 현장의 중점 이행 및 위험요인 확인·개선을 본사 담당자에게 컨설팅(2차)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컨설팅 사업대상인 5~49인 규모 사업장 수('24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는 약 70만 개소이며, 2023년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 대상업체 16,000개소는 동 사업장수 대비 2.3% 수준인바, 단계별 기술지도 사항을 보다 내실 있게 구성하여 방문횟수를 조정하는 경우 보다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수행하여 예산 투입 대비 사업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⁴⁾.

또한, 민간위탁기관은 컨설팅 대상업종이 중위험업종에 해당하여 단계별 기술지도 사항이 공단 수행 내용보다 용이할 수 있다고 보이고, 민간위탁기관 컨설팅 수행 인력이 고급기술자 수준에 준하는 자격요건⁵⁾을 요하고 있는바 전문성이 높은 인력이 컨설팅을 진행하게 됨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2022년 민간위탁기관의 컨설팅 대상 업종은 고위험·중위험군(고위험군 우선순위로 배정)이었는데, 사업장당 평균 방문횟수가 3.9회로 이루어졌다.

[2022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추진실적(9월말)]

구분	사업목표	추진실적	진도율	평균 지원횟수
사업장수	2,240개소	2,249개소	100.4%	3.94회
지원횟수	8,960회	8,868회	98.97%	-

자료: 고용노동부

한편, 2022년 2,000개소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 추진 시 운영기관 모집 미달이 발생하여 추가 공모를 진행하였는데⁶⁾, 2023년도에는 민간에서 지원해야 하는 물량이 5배 이상 확대(2,000개소→10,500개소) 및 방문지원횟수가 상향되고 있으므로, 동 업무를 수행할 수행기관 모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4) 원칙 횟수를 5회/7회로 경직적으로 설계하는 경우 각 방문화차별 기술지도 사항이 부실하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원칙과 예외 회차를 구분하여 방문화차별로 내실있게 기술지도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5) '22년 컨설팅 사업 참여 수행요원 자격을 '기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9년 이상 실무경력자 등'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조에 따른 고급기술자 기준과 유사하다(①기사 취득 후 7년이상 실무경력, ②산업기사 취득 후 10년 이상 실무경력)

6)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광역본부의 경우 목표 대비 신청물량 미달로 기관 추가 공모를 실시하였다.
- 서울광역본부 외에 인천, 광주광역본부도 목표 물량대비 수행기관의 신청물량이 부족(인천 100개소, 광주 80개소)하였으나, 협상에 의해 타 기관에 추가 배정을 의뢰하는 등 기관선정 및 물량 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사업 집행을 제고를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가. 현 황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¹⁾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사업출연금을 교부받아 운영한다.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3억 3,800만원이 증액된 69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3,065	2,610	2,610	6,948	4,338	166.2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은 2022년도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²⁾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2023년도부터는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 및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한다. 이에 따라 목표 지원인원이 2022년도 3,850명에서 2023년도 15,440명으로 약 4배 확대된다.³⁾

유다연 예산분석관(dayeonyoo@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452-318

2)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및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비교대상 근로자와 평균작업능력을 비교하여 70%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인가한다.

3) 고용노동부는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자로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근로자 10,220명,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근로자 1,920명을 추가 지원대상으로 추계하였다.

나. 분석의견

2021년 불용액 비율 58%, 2022년 9월 말 기준 실집행률 40.0%로 집행 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황인데, 2023년도 목표인원이 약 4배 확대되므로 집행을 제고를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은 2021년부터 신규로 추진되었는데, 2021년도 실집행률이 41%에 불과하였고, 2022년 9월 말 기준 실집행률 또한 40.0%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2021				2022. 9월 말		
계획액	실집행액	불용액	실집행률	계획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3,065	1,265	1,800	41.3	2,610	1,043	40.0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업운영비를 제외한 중증장애인근로자에 지원된 출퇴근비용지원금 집행내역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1년도 실집행금액은 2억 7,900만원에 불과하여 실집행률은 14.1%이었고, 2022년도 9월 말 기준으로 실집행률이 40.9%인 상태로 전년 대비 일부 개선은 되고 있으나, 여전히 집행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출퇴근비용지원금(사업비) 집행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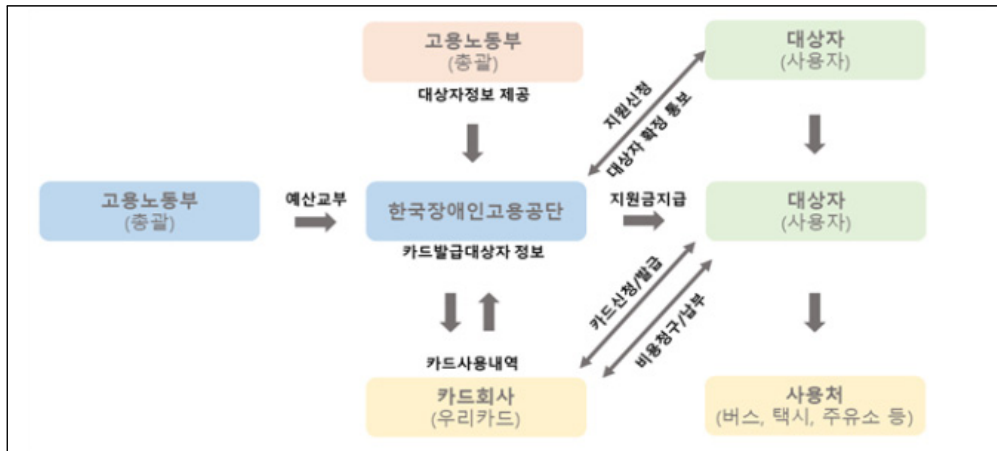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2021				2022. 9월 말		
교부액	실집행액	불용액	실집행률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1,985	279	1,706	14.1	2,278	933	40.9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의 사업운영체계를 살펴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중증장애인 근로자로부터 개별 신청을 받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 후 사후적으로 비용 청구(월 5만원 이내)를 하는 방식이다.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지원 체계도]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사업 집행이 부진했던 이유에 대해 2021년도는 최저임금적용제 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중위소득 100% 미만에 해당되어야 했는데, 중위소득 판단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과다하여 신청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사업 지원을 위해 업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으나⁴⁾, 시스템 구축 용역이 2022년 4월 말에 종료됨에 따라 2022년 상반기 집행실적이 부진하였다는 설명이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시스템 구축이 4월 말 종료되었으므로, 5월부터는 집행실적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9월 말 기준 실집행액은 9억 3,300만원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는 대상자 대부분이 카드를 발급받았더라도 카드 사용에 익숙치 않아 실제 이용금액이 크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동 사업 예산의 집행을 위해서는 카드를 발급받은 이용자의 이용률이 제고되어야 하므로, 고용노동부는 카드 이용 방법 등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강화하는 등 집행을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4) 외부 전산망 연계를 통한 지원대상자 선정, 카드사용내역을 기반으로 지원금 결정 및 지급, 과오지급 환수 등을 위한 시스템으로, 용역 계약기간은 2021. 10. 1. ~ 2022. 4. 25.이었다.

특히, 2023년도는 대상인원이 약 4배 가까이 확대되어 예산액이 2배 이상 증액 편성되고 있으므로, 신규로 대상자가 되는 중증장애인근로자의 지원 신청 및 카드 발급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목표지원인원 및 예산액 비교]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2022	2023 (증감률)
목표인원	3,850	15,440 (301)
예산	2,610	6,948 (166.2)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령, 현재는 교통카드 발급을 위해 당사자가 직접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대상자가 카드 발급이 익숙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단에서 온라인 카드 신청을 지도하거나 오프라인 카드 발급 시 공단에서 은행 지점에 동행하는 등 대상자가 보다 편리하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 집행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노동전환지원금 사업¹⁾은 산업구조 전환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대해 자체 또는 위탁하여 직무전환 교육 훈련,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52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다.²⁾

[2023년도 노동전환지원금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노동전환지원금	-	5,260	5,260	5,260	0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노동전환지원금 사업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21.7.22.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저탄소, 디지털 전환에 따른 위기기업 및 소속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신규 편성된 사업이다.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 1개 기업당 교육시작 전월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한도(최대 100명)까지 지원 가능하여 1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나. 분석의견

2022년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0.2%에 불과하므로, 유사 목적의 타 사업과 같이 집행가능성을 고려해 예산액을 감축하는 한편, 사업운영방안을 개선하여 집행실

유다연 예산분석관(dayeonyoo@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기후대응기금 6332-301

2) 기후대응기금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서, 기후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계획안 심의는 기획재정부위원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 기후대응기금 사업 중 지원금 사업으로 노동전환지원금(6332-301) 및 사업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6332-302) 사업이 있다. 두 사업은 저탄소·디지털 전환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장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며, 교육비 지원, 임차비 지원 등 지원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다.

[노동전환지원금 및 사업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 비교]

구분	노동전환지원금 (6332-301)	사업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 (6332-302)
사업개요	산업구조 전환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자체 또는 위탁하여 전직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지원	저탄소·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위기산업 노·사가 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
지원대상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전환 승인기업 및 노동전환 컨설팅 참여기업 등 저탄소·디지털 전환 기업	
지원내용	직무심화전환 교육훈련·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교육비 지원	근로자 교육 및 복리후생 관련 시설* 등 임차비 지원
지원금액	1인당 최대 300만원, 피보험자수의 50% 한도(최대 100명) 내로 최대 3억원 지원	임차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 지원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노동전환지원금 사업은 2022년 9월 말 기준 집행액이 1,200만원이고, 사업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집행금액이 전무한 상황으로, 두 지원금 사업의 집행이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두 사업은 2022년 예산액 대비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용액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사업수요 저조 및 2023년도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2023년도 예산액을 50%로 감축하여 편성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전환지원금 사업은 2023년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예산액을 편성하고 있다.

[노동전환지원금 및 사업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 예산 내역 비교]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2023	증감액 (증감률)
	계획액	집행액(9월 말)	불용예상액	예산안	
노동전환지원금	5,260	12	3,640	5,260	0
사업전환고용안정 협약지원금	5,000	0	3,500	2,500	△2,500 (△50%)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지원금 사업이 2022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현장에서 인지도가 낮으며,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후불 정산 받는 구조여서 신청 이후 집행까지 시차가 발생해 집행실적이 부진하다는 설명이다.

사업 초기임에 따라 집행실적이 저조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동 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 및 컨설팅 실적 등을 감안 시 현장에서 동 사업에 대한 수요 자체가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집행이 부진한 측면이 크다고 보인다.

노동전환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사업전환 승인기업³⁾ 및 노동전환 컨설팅 참여기업 등 저탄소·디지털 전환 기업으로, 2022년 9월 말 기준 사업재편·전환 승인기업 506개사, 컨설팅 참여기업 831개사 등을 고려할 시 최소 1,337개사 기업 중 훈련수요가 있는 기업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2022년 9월 말 기준 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수는 15개사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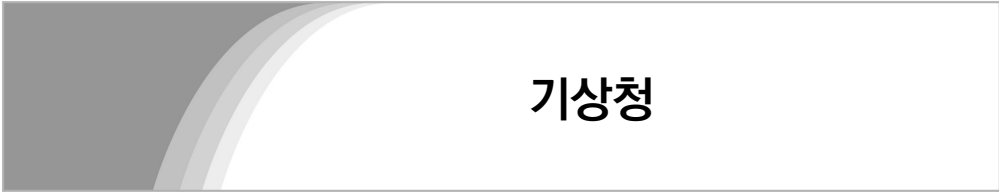
[노동전환지원금 신청 현황]

구분	사업재편전환 승인기업	노동전환 지원센터 컨설팅 참여기업
대상기업 수 (22.9.말 기준)	사업재편 승인기업 314개사 사업전환 승인기업 192개사	진단 컨설팅 831개사 전문 컨설팅 449개사
지원금 신청 기업 수	총 15개사	

자료: 고용노동부

3) 사업재편 승인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업전환 승인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행한다.

이와 같이 현장에서 노동전환지원금에 대한 수요가 매우 저조한데, 이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전직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필요성이 낮음에도 사업주가 스스로 수행하는 경우 지원금을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사업구조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 사업의 사례를 참고하여 동 사업 또한 집행가능한 금액으로 예산액을 감액하는 한편, 사업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집행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

1

현황

기상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다.

기상청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81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32억원(△62.0%) 감소하였다.

[2023년도 예산안 기상청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7,445	21,419	21,419	8,133	△13,286	△62.0

주: 1) 추경의 경우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기상청

기상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은 4,677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56억원 (3.5%)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647억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0억원 이다.

[2023년도 예산안 기상청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401,543	452,737	451,142	464,654	13,512	3.0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945	945	3,044	2,099	222.1
합 계	401,543	453,682	452,087	467,698	15,611	3.5

주: 1) 추경의 경우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기상청

2023년도 기상청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세입은 전년 대비 133억원이 감소한 81억원으로 주요 원인은 기상항공기 도입 위약금의 2021년 납부 완료(△142억원)에 기인한다. 세출은 전년대비 140억원이 증가한 4,677억원으로, ① 호우·대설·강풍 예측 활용기술 개발과 태풍 강도·진로 분석기술 등을 개발하기 위해 위험기상 선제대응 기술개발(R&D) 사업이 신규로 1개 32억원 편성되었다. ② 주요 증액으로 기상측기의 안정적 형식승인을 위한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2022년 80억원 → 2023년 191억원) 사업이 3차년도 공사비와 형식승인을 위한 기준장비 도입을 위한 예산이 증액 반영되었으며, ③ 예·특보 생산 및 방재관련 유관기관의 위험기상 대응 지원을 위한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2022년 61억원 → 2023년 99억원) 사업에 지역별 맞춤형 및 방재소통 중심으로 예·특보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 등이 반영되어 편성되었다.

2023년도 기상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기상청은 국가기상센터 신축 사업의 추진상황 및 관련 예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023년 예산안을 조정하고, 연도 내에 추진 가능한 기본설계비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등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로기상관측망 구축 및 운영 사업은 도로살얼음 및 안개로 인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현안으로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기상청은 동 사업에 대한 성과와 효과성을 평가·환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향후 점진적인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도로기상관측 장비별 단가 및 설치비 현황화로 예산 규모가 확대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최근 기상예보의 정확도가 하락하면서 동 사업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상청의 기상예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수준도 낮은 수준이므로, 기상청은 정확한 사전예측을 바탕으로 강수예보의 신뢰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상청의 2023년도 신규사업은 총 1개 사업(일반회계 1개) 32억원 규모이다.

신규사업인 위험기상 선제대응 기술개발(R&D) 사업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기상재해 대응을 위해 선행시간 확보 및 예측력 향상을 위해 호우·대설·강풍 예측 활용 기술 개발 및 태풍 강도·진로 분석기술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기상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1개)	위험기상 선제대응 기술개발(R&D)	3,150
합 계		3,150

자료: 기상청

2023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등이 있다.

①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은 기상측기의 안정적 형식승인을 위한 것으로, 인증센터 3차년도 공사비와 형식승인을 위한 기준장비 도입이 반영되어 큰 폭으로 증액(+112억원, +139.7%) 되었고, ②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은 예·특보 생산 및 방재관련 유관기관의 위험기상 대응지원을 위한 것으로, 예·특보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가 반영되어 증액(38억원, +62.4%)되었으며, ③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 기술개발(R&D)’ 사업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토교통부 ‘국가항행계획 2.0(NARAE)’에 따라 수요자인 항공관제기관 및 항공사 등에 비행단계별 항공운항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서비스 기술 개발을 위한 것으로, 항공기상 자동 감시·분석기술, 항공위험기술 상세 예측·검증 기술, 항공운항 의사결정 지원기술 등 개발이 반영되어 증액(+25억원, 147.1%) 되었다.

[기상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2 ¹⁾		2023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6개)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6,091	6,078	9,872	3,794	62.4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7,984	7,984	19,136	11,152	139.7
	기상관측선 건조 및 운영	1,614	1,614	2,408	794	49.2
	해양기상기지 구축 및 운영	2,556	2,556	5,114	2,558	100.1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개발(II)(R&D)	2,155	2,155	3,225	1,070	49.7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 기상 기술개발(R&D)	1,700	1,700	4,200	2,500	147.1
혁특회계 (1개)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신축	945	945	3,044	2,099	222.1

주: 1) 추경의 경우 제3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기상청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신축 사업 지연에 따른 예산 조정 검토 필요

가. 현 황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신축 사업¹⁾은 기상청 본청의 대전 이전이 결정('21.2.9. 국무회의)됨에 따라 중앙관서 공공청사의 차질 없는 이전을 추진하고 다양한 위험 기상·재난 징후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대전청사 부지 내에 기상청 국가기상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신규 추진되었다.

기상청은 2023년도 예산안에서 기본설계비 잔액과 실시설계비 전액을 반영하여 2022년 예산 9억 4,500만원 대비 20억 9,900만원 증액(222.1%)된 30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신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신축 사업	-	945	945	3,044	2,099	222.1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함

자료: 기상청

기상청은 당초 본청에 위치한 국가기상센터(1998년 준공)의 물리적 공간 부족과 현업부서의 분산배치 등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상청 청사 옥외 주차장 부지에 국가기상통합운영센터를 별동으로 증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2021년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었다.²⁾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7141-301

2) <국가기상통합운영센터 구축사업 추진 경과>

◦ 2018. 4월: '19년 청사수급관리계획 반영

그러나 2021년 2월 기상청의 대전 이전이 국무회의('21.2.9)에서 의결됨에 따라 기상청은 해당 정책부서는 정부대전청사로 2022년 2월까지 1차 이전하고, 현업 부서 및 현업 지원부서는 정부대전청사 내 유희부지에 기상청 국가기상센터를 신축한 후 2차 이전하는 2단계 이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기상청 이전 계획(안)]

- 예보시스템 신규구축 전 현 청사 전산시스템과의 연동차단이 불가하므로 이전에 따른 예보공백 리스크가 없도록 2단계 이전 추진
- 이전 고시 후 우선 1차 이전
 - 장소 : 중기부 이전에 따른 정부대전청사 공실
 - 대상 : 이전 대상부서* 중 현업 연계성이 낮은 정책부서
 - * 기상청 본부 및 1개 소속기관(수치모델링센터)
 - 인원 : 정원 343명(공무원 288명, 공무원·계약직 55명)
- 국가기상센터 신축 완료 후 2차 이전
 - 장소 : 정부대전청사 부지 내 신축
 - 대상 : 이전 대상부서 중 현업 및 현업 직접지원부서
 - 인원 : 정원 317명(공무원 226명, 공무원·계약직 91명)

'21.7월	→	'21.10월	→	'21.10월	→	'22. 2월	→	'26. 7월
지방이전계획 국토부 제출		지방이전계획 균형위 의결		고시		1차 이전		2차 이전

자료: 기상청

이에 따라, 기존의 국가기상통합운영센터 별동 증축 사업은 종료되었으며, 기상청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675억원을 투입하여 기상청 이전 계획을 반영한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신축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³⁾

* 본청 본관(2층, 554㎡, 1998년 준공)은 물리적 공간 부족, 협업부서간 분산배치로 유기적 협업 제한

- 2018. 12월: 국가기상통합운영센터 '19년 사업비(설계비) 반영
- 2019. 12월: 설계공모(제안공모) 및 계약 체결
- 2020. 1월: 기본설계용역 착수
- 2020. 9월: 기본설계용역 완료, 서울시교통영향평가심의 사전검토

3) 또한, 동 사업은 2022년도 예산 편성 시,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1호에 따라 공공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으로 선정되었다('21.8.24.).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신축 사업 연도별 투자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67,515	945	3,044	19,069	25,388	19,069
기본설계비	2,435	945	1,490	-	-	-
실시설계비	1,554		1,554	-	-	-
공사비	60,107	-	-	18,032	24,043	18,032
감리비	3,281	-	-	987	1,307	987
시설부대비	138	-	-	50	38	50

자료: 기상청

나. 분석의견

기상청은 국가기상센터 신축 사업 추진 지연 상황 및 관련 예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023년 예산안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은 기상청 대전이전이 2021년 2월 9일 결정된 후 2021년 5월부터 7월 까지 국가기상센터 신축방안 컨설팅 용역 및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건축기획용역 등을 수행하였고, 청사수급관리계획이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추진하였다.

또한, 2022년 예산에는 국가기상센터 신축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설계비 일부인 9억 4,5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도 예산안에서는 기본설계 잔액분과 실시설계비 전액을 반영하여 총 30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신축 사업 예산안 세부 편성내역]

구분	예산액	산출내역
2022년 예산	945	- 기본설계비(일부) 730 - 설계공모비 및 보상비 등 215
2023년 예산안	3,044	- 기본설계비 잔액 및 부가용역비 1,490 - 실시설계비 1,554

자료: 기상청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 추진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절차로 인해 2022년도에 계획하였던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관련 예산의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2023년도 예산안 심의과정 중 동 사업 예산의 규모 및 집행가능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동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호4)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선정(‘21.8.24.)되었으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3조5)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대상에 해당하는바, 기획재정부는 2021년 8월 동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였으며, 2021년 11월부터 해당 절차에 착수하여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상청은 동 사업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비한 기상·기후변화를 감시하는 기상청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청사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나, 이는 과거 국내에서 추진한 사례가 드물어 적정한 사업비를 산출하는 데에 제약이 따르는 관계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절차가 장기화되어 2022년 10월 현재까지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다.⁶⁾

이로 인해, 2022년 예산에 반영된 국가기상센터 신축 사업의 기본설계 용역 발주 절차를 비롯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10월 현재 기본설계비 예산 9억 4,500만원의 집행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2022년 11월 중에 최종 완료되더라도 총사업비 조정 절차와 공공건축계획 사전검토 절차, 공공건축 심의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에 3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2년에

4)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5)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3조(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획재정부장은 필요한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검토(사업계획 적정성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은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 대안을 분석한다.

- 6) 기상청에 따르면, 2022년 10월 20일 제3차 검토회의를 거쳐 11월 중에 적정성 검토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편성된 기본설계비(일부) 예산은 전액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2022년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신축 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22	945	945	945	0	0.0	미정	미정

자료: 기상청

특히, 기상청이 제출한 향후 추진일정에 따르면, 동 사업의 설계는 국제공모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앞서 제시한 각종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국제설계공모 공고절차를 추진하여 2023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사업 추진계획 대비 변경(안)]

구분	당초계획	변경(안)
'21	① 부지선정 완료	
	② 건축기획용역 수행('21.8월~'21.12월 완료 계획)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2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	① 건축기획용역 착수('21.8월 계약)
	③ 에너지기획용역 수행('21.9월~'21.12월 완료 계획) * 사업특수성(탄소중립청사)에 따라 수행	② 에너지기획용역 착수('21.9월 계약)
'22	④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지침 제23조에 따른 의무사항	③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착수('21.11월)
	⑤ 공공건축계획 사전검토(공공건축지원센터)('22.5월~'22.6월 완료계획)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2조의3에 따른 의무사항	④ 부지선정 완료('22.7월)
		⑤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완료('22.11월 중)
		⑥ 총사업비 변경 및 사업일정 조정('22.12월 중)
	⑥ 공공건축 심의(기상청 자체)('22.6월 완료계획)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2조의3에 따른 의무사항 ⑦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신축사업 기본계획 최종 수립('22. 6월 완료계획)	⑦ 건축기획용역 완료('22.11월 중)

구분	당초계획	변경(안)
	⑧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업체 선정 ('22.5월~'22.6월) * 협상에의한계약(조달) ⑨ 국제설계공모('22.7월~'22.10월)	⑧ 에너지기획용역 완료('22.11월 중)
'23	⑩ 기본설계('22.11월~'23.5월) ⑪ 실시설계 및 건축 인·허가 완료 ('23.5월~'23.12월)	⑨ 공공건축계획 사전검토(공공건축지원 센터)('23.1월~'23.2월) ⑩ 공공건축 심의(기상청 자체) ('23.2월 완료) ⑪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신축사업 기본계 획 최종 수립('23.2월 완료계획) ⑫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업체 선정 ('23.1월~'23.2월) * 협상에 의한 계약(조달) ⑬ 국제설계공모('23.3월~'23.6월) ⑭ 기본설계('23.7월~'24.2월)
'24	⑫ 건설공사 착수('24.1월~'26.6월/30개 월) * 적정공사기간 산정 시 30개월 소요(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의함)	⑮ 실시설계 및 건축 인·허가 완료 ('24.3월~'24.12월)
'25	⑭ 예보시스템 설치사업(인테리어 포함) 발주 및 업체선정('25.1월~'25.6월) ⑮ 예보시스템 설치사업 등 설계('25.7 월~'25.9월) ⑯ 예보시스템 설치사업 착수('25.10월)	⑯ 건설공사 착수 ('24.1월~'26.6월/30개월)
'26	⑰ 예보시스템 설치사업 완료('26.6월) ⑱ 건설공사 준공('26.6월) ⑲ 기상청 후속 이전 실시('26.7월~'26.9 월) 및 사업종료	⑰ 예보시스템 설치사업(인테리어 포함) 발주 및 업체선정('26.1월~'26.6월) ⑲ 예보시스템 설치사업 등 설계 ('26.7월~'26.9월) ⑳ 예보시스템 설치사업 착수('26.10월)
'27		㉑ 예보시스템 설치사업 완료('27.6월) ㉒ 건설공사 준공('27.6월) ㉓ 기상청 후속 이전 실시('27.7월~ '27.9월) 및 사업종료

자료: 기상청

하지만 기상청이 제시한 일정대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가정하더라도 2023년 연도 내에는 기본설계 용역 추진을 위한 예산만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23년 예산안을 통해 기본설계 잔액과 실시설계비 전액을 확대 편성할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를 묶어 하나의 사업으로 발주하더라도 연내 전액 집행이 어려워 예산의 이월이 예상되는바, 국가기상센터 신축 사업 추진지연으로 인한 집행 실적 부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상청은 동 사업의 추진상황 및 관련 예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023년 예산안을 조정하고, 연도 내에 추진 가능한 기본설계비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등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도로기상관측망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¹⁾의 내역사업으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도로살얼음, 안개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기상관측망과 도로기상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상청은 2023년도 예산안에서 2022년 예산 9억 2,400만원 대비 17억 9,900만원 증액(194.7%)된 27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20,680	19,262	19,262	21,749	2,487	12.9
도로기상관측망 구축 및 운영	-	924	924	2,723	1,799	194.7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함

자료: 기상청

도로교통사고 중 안개, 노면상태(살얼음, 빙판, 적설 등)로 인한 사고는 치사율이 높으나,²⁾ 현재의 교통정보 체계에서는 도로상 위험기상에 대한 관측 인프라가 부족하여 관련 기상정보가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2020년 5월 대규모 교통사고의 원인인 ‘도로살얼음 기상정보’ 제공을 위한 범부처 TF3)를 구성하였으며, 국민생활안전과 관련한 긴급대응연구사업(“도로살얼음 관련 발생 위험도 예측기술 및 정보 전달 서비스 개발”, ’20.3.2.~’22.3.1.)을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일반회계 1231-301

2) 교통사고 원인별 치사율: 도로노면(습윤, 적설, 빙판 등)이 평시에 비해 2.9배 높음(’1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개는 맑은 날 대비 4.5배 높음(’15,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3) 참여기관: (주관) 기상청, (협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국립기상과학원

추진하는 한편, 한국도로공사와 협업을 통해 겨울철 도로기상에 대한 집중 관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살얼음,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실시간 관측에 기반한 고품질의 기상관측정보를 확보·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바, 기상청은 2022년 예산을 통해 도로기상관측망 구축 및 운영 내역사업을 신규 편성하고 안개와 도로살얼음으로 인한 사고 다발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도로기상관측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3년 예산안에서는 거점관측소, 기본관측소, 목표관측소 등 설치 지점을 확대하고 예산을 현행화하는 한편, 설치된 관측소로부터 수집된 정보의 실시간 수집·저장·배분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관련 예산 및 도로기상관측장비 운영 관련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었다.

[2023년도 도로기상관측망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2023(안)	
			개소	예산	개소	예산
소계			24	924	31	2,403
도로기상 관측망 구축	거점관측소		2	289	3	433
	기본관측소		11	451	13	828
	목표 관측소	안개	4	44	6	183
		결빙	7	140	9	414
	관측센서 추가		-	-	16	545
	도로기상정보시스템		-	-	-	170
도로기상관측장비 운영			-	-	-	150
합 계			924		2,723	

자료: 기상청

나. 분석의견

도로기상관측망 구축 및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하는 2022년 중부내륙선(도로살얼음)과 2023년 서해안선(안개) 도로기상관측망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성과와 효과성을 평가하고 환류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통하여 전국 노선으로 효율적·점진적인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와의 연관성이 높은 안개, 도로살얼음은 발생 지역이 좁고, 지속시간이 짧아 예측정보를 생산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도로기상 관측망 현황을 살펴보면, 국립기상과학원에서 도로살얼음 발생 위험 예측 연구 수행을 위해 2020년 11월부터 설치·운영 중인 6대⁴⁾에 더해, 도로관리기관인 한국도로공사에서 5개소,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11개소를 운영 중으로, 양질의 도로기상관측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 동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기상청에 따르면, 중부내륙선('22, 도로살얼음)과 서해안선('23, 안개)의 도로기상관측망 구축은 겨울철 도로살얼음과 안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현안으로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된 사업이므로, 동 사업의 효과성 및 성과를 환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상청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약 264억원의 예산(장비 설치)을 투입하여 총 26개 노선의 500개 지점에 도로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로기상관측망 중심 관측소인 거점관측소는 100km 간격으로 27개소를 설치하고, 거점관측소 사이의 관측 수행을 위해 20km 간격으로 기본관측소 138개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거점 및 기본관측소로는 감시가 어려운 안개·결빙 상습구간에 시정, 노면센서 등 목표 관측을 수행할 수 있는 관측소 335개소(안개 113개소, 결빙 222개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4) · 도로기상관측시스템(5소): 합지교차로, 살피재터널, 논공교, 대성1교, 풍산대교
· 광학식노면상태센서(1소): 죽령터널

[도로기상관측망 구축 세부계획]

(단위: 개소)

구분		총 설치계획	세부내용
거점관측소		27	- 도로기상관측망 중심 관측소로 100km 간격으로 RWS(road weather system) 설치 · 대기상태 관측: 온·습도, 기압, 바람, 강수, 시정, 하늘상태, 복사 등 · 노면상태 관측(매립식+광학식): 노면·지중온도, 상태감지(젖음, 결빙, 눈 등)
기본관측소		138	- 거점관측소 사이의 관측을 위해 20km 간격으로 관측지점 설치 · 대기상태 관측: 온·습도, 기압, 바람, 시정, 강수 등 · 노면상태 관측(광학식): 노면온도, 상태감지(젖음, 결빙, 눈 등)
목표 관측소	안개	113	- 거점·기본관측으로 감시가 어려운 안개·결빙 상습구간에 시정, 노면센서 등 목표 관측을 위해 단일장비 설치 · 안개: 시정 · 결빙: 노면온도, 상태감지(젖음, 결빙, 눈 등)
	결빙	222	

자료: 기상청

[연도별 도로기상관측망 구축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합계
노선	중부내륙선	서해안선	당진·영덕선, 남해선 등 10개 노선	순천·완주선, 평택·제천선 등 14개 노선	26개 노선
예산	955	2,723	20,115	8,285	32,077

자료: 기상청

하지만 동 사업은 시범사업 성격으로 2022년 신규 추진된 사업으로, 실효성 있는 도로기상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도로기상관측장비의 기능, 장비로부터 도출되는 정보의 품질이나 정확도, 교통사고 예방 효과 등 도로기상관측망 구축의 효과성 및 성과에 대한 분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상청은 동 사업의 성과 및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

황에서 2023년 예산안을 통해 도로기상관측망 설치 지점을 확대 추진하는 한편, 향후 전반적인 사업 규모 또한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므로, 기상청은 사업 규모를 확대하기 이전에 시범사업에 따른 성과 및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성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상청은 도로기상관측장비별 단가 및 설치비 현행화로 예산 규모가 확대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로기상관측망 구축 및 운영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상청은 도로기상관측망 구축 및 운영 사업을 통해 거점관측소와 기본관측소에 온도·습도, 기압, 바람, 강수, 시정, 하늘상태, 복사 등 대기상태와, 노면·지중 온도, 젖음, 결빙, 눈 등 노면상태를 관측·감지할 수 있는 도로기상관측장비(RWS: Road Weather System)를 설치하고, 안개·결빙 상습구간에 설치되는 목표관측소에는 시정, 노면센서 등을 위한 단일 장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관측소별 도로기상관측망 설치 예시]

거점관측소(예시)	기본관측소(예시)	목표관측소(예시)
		

자료: 기상청

하지만 동 사업을 신규 추진한 2022년 예산 대비 2023년 예산안은 설치비 및 센서 단가 현행화에 따른 도입 장비별 단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기상청은 2022년 예산 편성 시 거점관측소에 설치되는 장비 단가는 1억 4,450만원, 기본관측소 장비 단가는 4,100만원, 목표관측소 중 시정(안개) 관측장비는 1,100만원, 노면센서(결빙)는 2,000만원의 단가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2023년 예산안에서는 거점관측소의 장비 단가는 유지하되, 기본관측소 설치 장비의 단가를 6,400만원으로, 시정(안개) 관측장비는 3,100만원으로, 노면센서(결빙)는 4,600만원으로 장비별 단가를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

[도로기상관측망 구축 및 운영 사업 장비별 단가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2023(안)	증감률
			장비별 단가		장비별 단가	
			예산상	집행상 ¹⁾		
도로기상 관측망 구축	거점관측소		144.5	144.5	144	△0.3
	기본관측소		41	41	64	56.1
	목표 관측소	안개	11	11	31	181.8
		결빙	20	20	46	130.0

주: 1) 사업비 범위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관측장비의 단가를 참고하여 전체 관측소에 대한 물량을 조정
자료: 기상청

기상청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통제비, 노무비, 도로 설치를 위한 부대설비 구매비용 등의 소요를 반영하여 도로기상관측 장비 설치비를 현행화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22.1.27. 시행)은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 및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바, 도로 갓길에서 장비를 설치하는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통제비, 부대설비 구매비용 현행화는 일정 부분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

다만, 기상청은 도로기상관측 장비별 단가 및 설치비 현행화에 따라 예산 규모가 확대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기상법」 제2조제9항에 따르면, 기상예보란 기상관측 결과를 기초로 장래의 기상상태를 예측하여 발표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상청은 「기상법 시행령」 제8조¹⁾에 근거하여 예보기간에 따라 초단기(6시간 이내), 단기(5일 이내), 중기예보(10일 이내) 및 장기예보(11일 이상)를 발표하고 있다.²⁾

[기상예보 유형별 운영 현황]

종 류	예보기간	예보 단위	발표횟수	발표대상
초단기 예보	발표시점부터 6시간 이내	1시간	일24회	읍면동별 (5km×5km)
단기 예보	초단기 예보 기간 이후부터 5일 이내	1시간	일8회	읍면동별 (5km×5km)
중기 예보	단기 예보 기간 이후부터 10일 이내	~7일: 12시간	일2회	광역예보 구역
		8일~10일: 하루		
장기예보	1개월 전망	(예보 내용) - 주별 기온 및 강수량 전망	매주 목요일	전국 평균 및 12개 지역
	3개월 전망	(예보 내용) - 월별 기온 및 강수량 전망 - 기압계 동향 및 전망	매월 23일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예보는 기온·강수 등에 관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예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1. 초단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6시간 이내
2. 단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5일 이내
3. 중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10일 이내
4. 장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11일 이상

2) 일반적으로, 기상예보는 ① 기상관측→② 수치예보모델 입력, 일기도 생산→③ 일기도, 기상상황 분석→④ 예보 토의→⑤ 기상예보 생산→⑥ 홈페이지, 언론 등에 대한 통보 과정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종 류	예보기간	예보 단위	발표횟수	발표대상
	기후 전망	(예보 내용) - 엘니뇨/라니냐 전망 - 기온 및 강수량 전망	2·5·8·11 · 12월 23일	전국 평균
태풍 예보 ¹⁾	발표시점부터 120시간 이내	- ~48시간: 12시간 - 48시간~120시간: 24시간	일4회	북서 태평양

주: 1. 기상청 「예보업무규정」을 정리한 내용으로, 장기예보에 대한 사항은 「기후업무규정」 제20조 및 제21조를 통해 규정되고 있음

1) 한반도 영향 예상 시 예보단위 12시간 이하, 발표횟수 4회 이상 추가 발표 가능

자료: 기상청

이에 따라, 기상청은 초단기·단기·중기·장기예보 및 태풍예보 등에 대한 예보 역량을 강화하고, 기상 관측데이터를 활용하여 앞으로의 대기 움직임과 날씨를 시간대별로 예측하는 수치예보모델의 성능을 개선하며, 기상 관측지점 및 관측장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기상관측 강화 사업, 대국민 기상정보 및 국가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과학적 정보를 생산하는 필수 전산 인프라인 기상용 슈퍼컴퓨터 도입 및 운영 등 예보의 정확도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상청은 기상예보 정확도 개선을 위해 국가태풍센터 운영, 선진 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및 운영, 해양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기상관측선 건조 및 운영, 해양기상기지 구축 및 운영, 기상레이더 운영, 기상용슈퍼컴운영(정보화), 선진기상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10개 사업(2022년 기준)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3년 총 684억원의 재정을 투입한 이래 최근 10년간(2013~2022년) 약 700억원 수준에서 증감을 보이고 있으나, 2019년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의 예산 규모가 확대되어 2023년도 예산안 기준 93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상청 소관 예보 정확도 개선 관련 사업의 연도별 재정규모(2013~2023년)]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예산안
합계	68,408	65,275	76,403	69,742	70,703	69,521	72,864	79,271	86,906	88,557	93,741
국가태풍센터 운영	795	1,050	1,090	1,184	1,093	970	891	874	1,036	1,083	1,001
수치예보시스템 개선(정보화)	798	916	916	916	828	708	661	661	661	- ¹⁾	-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8,001	7,277	6,863	6,411	6,452	5,883	5,189	5,370	5,735	6,091	9,872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13,100	11,581	12,384	12,113	12,500	12,035	12,209	16,396	17,793	19,262	21,749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및 운영	5,469	4,433	7,690	2,782	2,371	2,580	2,425	2,372	2,370	2,136	2,604
해양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6,434	6,404	10,024	8,697	9,366	8,649	10,917	12,435	12,915	15,513	13,843
기상관측선 건조 및 운영	1,781	1,781	1,692	1,476	1,402	1,396	1,428	1,528	1,614	1,614	2,408
해양기상기지 구축 및 운영	763	763	616	616	740	740	882	2,043	4,660	2,556	5,114
기상레이더 운영	8,820	9,327	8,550	9,304	8,374	9,409	9,882	9,518	10,147	9,164	8,065
기상용슈퍼컴운영 (정보화)	21,727	20,973	25,658	25,323	26,710	26,198	27,427	27,171	28,985	30,280	28,227
선진기상 전문인력 양성	720	770	920	920	867	953	953	903	990	858	858

주: 1. 연도별 예산은 본예산 기준임

1) '수치예보시스템 개선' 사업은 2022년 예산 과목구조개편으로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으로 통합되었음

자료: 기상청

이와 같이, 기상청이 수행하고 있는 예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기상용 슈퍼컴퓨터와 각종 기상 관측장비 등 인프라 확충, 수치예보모델 및 예보시스템 개선, 예보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상청 예보의 정확도 및 신뢰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기상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분석의견

강수예보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상정보이므로, 기상청은 정확한 사전예측을 바탕으로 강수예보의 신뢰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상청은 ① 신속·정확한 태풍정보 생산을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② 한국형 스마트예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예·특보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하며, ③ 유관기관 공동 활용 및 맞춤형 방재기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④ 효율적인 예보 지원을 위한 현업 수치예보모델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기상예보 품질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상예보에 관한 성과지표로 단기예보 정확도를 의미하는 ‘강수유무 정확도(ACC: Accuracy)’를 활용하고 있다.

강수유무 정확도는 강수 여부(강수 있음 또는 무강수)와 관련하여 예보한 사항과 실제 관측간의 평균적인 일치 정도를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3시간 간격의 예보 구간 내에 0.1mm 이상(적설 0.1cm 이상)의 강수가 기록되었을 경우 “강수 있음”으로 판정하고 있다.

[강수유무 정확도(ACC) 지표 산출 방식]

$ACC(\%) = \frac{\text{강수있음 맞힘 건수}(H) + \text{무강수 맞힘 건수}(C)}{\text{강수있음 또는 없음에 대한 전체 예보건수}(H+F+M+C)}$				
		예보		
		강수있음	강수없음	소계
관측(실황)	강수있음	강수 맞힘(H)	강수 놓침(M)	발생 관측
	강수없음	강수 빗나감(F)	무강수 맞힘(C)	미발생 관측
	소계	발생 예보	미발생 예보	

자료: 기상청

하지만 동 성과지표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9년간(2013~2021년) 92% 수준에서 등락을 지속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³⁾ 프로그램 성과목표를 달성한 2019년 이후 2020년은 91.4%, 2021년 90.9%로 예보 정확도가 하락하면서 각

3) [우리나라 단기예보 정확도에 관한 지표별 비교자료(2013~2022.8)]

각 92.4%로 설정하였던 프로그램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22년의 경우에도 8월말 기준 예보 정확도가 91.5%로 당초 계획한 목표 실적 달성에도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강수유무 정확도 성과지표의 연도별 목표 대비 실적 현황]

(단위: %)

성과지표	목표대비 달성률	2019	2020	2021	2022	2023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강수유무 정확도 (%)	목표	92.2	92.4	92.4	92.4	91.7	강수유무정확도(%) = {(예보맞은횟수/전 체예보횟수)} × 100
	실적	92.7	91.4	90.9	91.5	-	
	달성률(%)	100.5	98.9	98.4	미정	-	

주: 2022년은 8월말 기준

자료: 기상청

또한, 기상청은 강수유무 정확도와 함께 강수맞힘률(POD: Probability of Detection)⁴⁾을 공식적인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데,⁵⁾ 강수맞힘률 지표 또한 2019년

(단위: %)

구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8월
강수유무 정확도(ACC)	92.8	91.5	92.2	92.0	91.8	92.8	92.7	91.4	90.9	91.5

자료: 기상청

4) 강수맞힘률(POD: Probability of Detection)은 강수유무 정확도 산정 시 계상되었던 무강수 현상 관련 예보 건수와 맞힘 건수를 제외하고 실제로 관측된 강수현상만을 가지고 예보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지수이다.

[강수맞힘률(POD) 지표 산출 방식]

$POD = \frac{\text{강수있음 맞힘 건수(H)}}{\text{강수있음에 대한 전체 예보건수(H+M)}}$		
※ POD값의 범위는 0부터 1까지이며, 1에 가까울수록 정확한 예보를 의미함		
관측(실황)	예보	
	강수있음	강수없음
강수있음	강수 맞힘(H)	강수 놓침(M)
강수없음	강수 빗나감(F)	무강수 맞힘(C)

자료: 기상청

5) 강수유무 정확도와 강수맞힘률 지표는 각 지표별로 산출방식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예보정확도 결과값이 다르게 산출된다. 이에 기상청은 두 지표를 모두 활용하여 각 지표가 지닌 단점을 상호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0.70에서 2022년 8월 기준 0.62로 감소하는 등 기상청이 제공하는 기상예보의 정확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강수맞힘률(POD) 지표의 연도별 추이(2013~2022.8)]

(단위: %)

구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8	평균
강수맞힘률(POD)	0.65	0.64	0.64	0.65	0.62	0.66	0.70	0.69	0.65	0.62	0.65

자료: 기상청

이에 따라, 예보를 접하는 일반 국민들은 기상예보 등 기상청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으로, 기상청이 매년 수행하고 있는 ‘기상업무 국민 신뢰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⁶⁾ 최근 4년간(2018~2021년) 일반 국민들의 기상서비스 만족도 점수는 평균 71.7점, 신뢰도 점수는 70.1점으로 확인되는 등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기상청의 기상예보에 대한 신뢰성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2018~2021년 기상업무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점)

대상	지표	'18년	'19년	'20년	'21년	평균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일반 국민	기상서비스 만족도	71.2	70.9	72.2	72.4	71.7	-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여(3,000명) - 시기/방법: 상·하반기(연 2회)/전화, 이메일 조사 - 산출방법: 7점 척도에 의한 조사(상·하반기 결과 평균값)
	기상서비스 신뢰도	70.3	69.3	69.9	70.7	70.1	

주: 동 설문조사는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동 표에서는 일반국민 대상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하였음

자료: 각 연도별 기상업무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6) 기상청은 ‘대국민 기상인식 제고’ 사업을 통해 매년 기상업무 국민 신뢰도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신뢰도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3,000명)과 기상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 종사자 등(800명)을 대상으로 연 2회(상·하반기)에 걸쳐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응답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심층면접조사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강수유무(단기예보)의 정확도는 예보의 품질 측면과도 관련이 있으나 해마다 날씨 상황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나며,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고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극한기상의 출현 빈도 또한 잦아지고 있어 예보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수예보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상정보이므로, 기상청은 정확한 사전예측과 신속한 예보를 바탕으로 강수예보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예보지원 시스템과 기상예측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기상예보 평가 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기상예보 전달방식을 개선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⁷⁾

7) 참고로, 국회는 국정감사와 예·결산 심사과정에서 기상청의 기상예보 정확도 및 신뢰도 제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합리적 목표 설정 및 사용료 인상 시기 구체화 필요

가. 현 황

기상청은 기상업무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 수수료, 공채 응시료·정보공개 수수료 및 항공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항공기상정보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를 면허 및 수수료¹⁾로 징수하고 있으며, 2023년도 세입 예산안으로 2022년 추경예산 29억 200만원 대비 9억 4,600만원 증액(32.6%)된 38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면허 및 수수료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면허 및 수수료	1,817	2,902	2,902	3,848	946	32.6
항공기상정보제공사용료		2,173	2,173	2,941	768	35.3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함
자료: 기상청

기상청의 면허 및 수수료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는 「기상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와 기상청고시(제2018-6호)²⁾에 근거하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일반회계 65-651

2) 「기상법」

제37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항공 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착륙하는 항공기와 외교상의 목적으로 착륙하는 항공기,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 기상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상법 시행령」

제21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항공기가 대한민국 공항에 착륙하거나 인천비행정보구역에 통과하는 경우 매 운항 시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여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기상청이 항공기상정보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로, 징수된 사용료는 전액 국고 반납 조치되고 있다.

항공기상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제항공에 취항하는 항공기가 대한민국 공항에 착륙하거나 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비행하는 경우, 매 운항 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다.³⁾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어 있던 항공수요가 2023~2024년경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⁴⁾에 따라 기상청은 2023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산출 시 코로나19 이전 시기인 2019년의 착륙 및 영공통과 징수 편수를 감안하여 사용료 세입예산안을 산출하였다.

[2023년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세입예산 산출근거]

$$\begin{aligned} \text{○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 (\text{① 착륙료} + \text{② 영공통과료}) - \text{③ 위탁수수료} \\ &= \mathbf{2,941,000\text{천원}^1)} \end{aligned}$$

$$\text{① 착륙료} = \text{착륙횟수(예상치)} \times 11,400\text{원}$$

(단위: 만회)

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실측값 (예상)	21.9	21.7	24.9	26.4	10.5	8.2	(18.5)	(26.4)

$$\text{② 영공통과료} = \text{영공통과횟수(예상치)} \times 4,820\text{원}$$

(단위: 만회)

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실측값 (예상)	4.6	4.4	4.8	5.4	2.4	1.9	(3.9)	(5.4)

$$\text{③ 위탁수수료} = \text{징수액(착륙료+영공통과료)} \times 5.38\%(\text{수수료})$$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산정내역 및 그 징수방법을 관보에 고시하고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항공기상정보사용료와 그 징수방법」(기상청고시 제2018-6호)

1. 부과 기준

항공기상청은 국제항공에 취항하는 항공기가 항공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서비스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공항에 착륙 또는 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비행하는 각각의 경우에 1회의 운항마다 항공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의 항공기상정보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한다.

3) 실제 사용료 징수업무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에 위탁하여 항공사로부터 매월 징수하고 있다.

4) 국토교통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년)」(‘21.9)

※ 착륙횟수와 영공통과횟수 예상치 산출 방법

- 기존에는 '전년도 착륙 또는 영공통과 횟수 + 최근 5년('17~'21)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5년 연평균 증가율이 마이너스(착륙: -21.4%, 영공통과: -18.9%)인 관계로 기존 산출식을 적용하지 않고 2019년 착륙 또는 영공통과 횟수 적용

주: 1) 항공수요가 2023~2024년에 걸쳐 회복됨을 고려하여 2023년은 2019년 징수액의 약 95% 수준으로 산정

자료: 기상청

나. 분석의견

기상청은 적정 수준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가 징수될 수 있도록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항공수요 회복 시점을 고려하여 사용료 인상 시기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은 생산원가 대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원가대비 회수율 59.4% 수준⁵⁾으로 인상하기 위하여 관·학계·항공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⁶⁾하였으며, 법적 절차에 따른 국토교통부와 협의, 국무조정실의 조정 및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거쳐 2018년 6월부로 고시를 개정하였다.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고시 변경 현황]

(단위: 원/편)

구 분	2005. 6. 1. (최초 결정액)	2010. 5. 1. (1차 인상)	2014. 3. 1. (2차 인상)	2018. 6. 1. (3차 인상)
국제선 착륙	4,850	5,820	6,170	11,400
영공통과	1,650	1,980	2,210	4,820

자료: 기상청

하지만 착륙시 편당 11,400원, 영공통과는 편당 4,820원을 부과하는 등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인상한 고시 개정과 관련하여 대한항공 등 8개 국내항공사와 인

5) 국토교통부 항행안전시설 사용료의 원가 회수율 수준(2016년 기준 추정치)

6) 기상청은 사용료 인상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2016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항공업계, 항공협회, 국토교통부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체 회의를 3차례 개최하였다.

천국제공항 항공사운영협의회는 사용료 인상이 과도하다는 점 등의 사유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2018.6.26.)하였고, 이후 제1심에서 제3심 및 파기환송심을 거쳐 2021년 3월 31일 최종적으로 기상청의 사용료 인상이 적법한 것으로 판결⁷⁾됨에 따라 우리나라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는 국제선 착륙시 11,400원, 영공통과시 4,820원으로 인상되는 것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내외 여객수요 급감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항공업계를 대상으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인상할 경우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정부는 한국항공협회(21.4.) 및 국토교통부(21.6.)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항공수요 회복 시까지 사용료 인상을 유보한 상황이다.

다만, 기상청은 점차 회복되고 있는 항공수요 현황 및 항공기상정보 원가산정 결과를 고려하여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최근 3년간 월별 항공운항 편수(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징수 편수 기준)를 살펴보면, 2020년 5월부터 코로나19 악화로 운항 편수가 급감하여 2021년 10월까지 평균 약 6,000~7,000편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1년 말부터 항공수요가 점차 회복되어 2022년 8월 기준 14,770편으로 항공운항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제항공수송협회(IATA)와 국제공항협의회(ACI) 등 관련 국제기구 또한 2023~2024년경부터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항공수요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⁸⁾

7)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관련 소송 추진경과]

구 분	기 간	판결 및 주요사항
제1심	'18.6.26. ~ '19.5.10.	-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 - 사용료 인상은 기상법령에 근거하였으며, 행정절차 적법성과 처분 당위성 인정
제2심(항소심)	'19.6.12. ~ '19.12.13.	- 제1심 판결을 취소 - 사용료 인상 필요성과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원가 회수 필요성 등은 인정 - 다만, 사용료 85% 인상은 사회적 통념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판단
제3심(상고심)	'20.1.15. ~ '20.7.9.	- 제2심 판결 파기 및 환송 - 원심(제2심)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판단
파기환송심	'20.7.13. ~ '21.3.3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자료: 기상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월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징수 편수(2020~2022.8)]

(단위: 편)

년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	착륙	22,806	22,787	18,949	11,832	1,391	1,269	2,441	5,270	4,318	4,614	4,832	4,877	105,386
	영공 통과	4,981	4,868	3,831	1,789	1,262	859	1,606	740	964	959	1,150	1,068	24,077
	계	27,787	27,655	22,780	13,621	2,653	2,128	4,047	6,010	5,282	5,573	5,982	5,945	129,463
'21	착륙	5,073	9,225	9,269	9,315	6,085	6,015	6,725	6,045	6,015	5,692	6,952	6,435	82,846
	영공 통과	1,021	1,380	867	1,228	1,124	1,179	1,197	1,082	866	1,162	2,378	5,625	19,109
	계	6,094	10,605	10,136	10,543	7,209	7,194	7,922	7,127	6,881	6,854	9,330	12,060	101,955
'22	착륙	7,352	6,451	6,485	5,742	6,795	5,747	6,792	7,690					53,054
	영공 통과	5,626	4,300	5,782	4,285	6,601	3,955	5,440	7,080					43,069
	계	12,978	10,751	12,267	10,027	13,396	9,702	12,232	14,770					96,123

주: 착륙 및 영공통과 편수 대상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징수 현황 기준임

자료: 기상청

다음으로, 항공기상서비스 생산원가 산정을 위해 2021년 기상청이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⁹⁾ 항공기상서비스 생산원가는 직접비와 간접비 등을 합하여 총 236억 6,345만원, 항공기 1편당 생산원가(국제선 착륙 기준)는 48,907원으로 생산원가에 비해 실제 징수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11,400원)가 23.3% 수준인 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국가의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 대비 회수율에 비해 우리나라의 생산원가 대비 회수율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¹⁰⁾

8) 국제항공수송협회(IATA)는 전 세계 항공 여객 수요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2022년은 88%, 2023년에는 105%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21.4)하였으며, 국제공항협의회(ACI)의 경우, 2023년 하반기~2024년경 각국의 여객수송량이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21.3)하였다.

9) 기상청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교통량 감소에 따른 원가산정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2019회계연도 기상청 결산서 및 2019년도 항공교통량을 기준으로 생산원가를 산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10) [유럽 주요국가의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 대비 회수 현황]

[항공기상정보 서비스 생산원가 추정결과]

(단위: 백만원)

직접비				간접비			공정보수	계	편당 생산원가 (원/편)
인건비	경비	감가 상각비	소계	연구 개발비	감가 상각비	소계			
7,520	5,133	2,043	14,696	1,191	6,672	7,863	1,104	23,663	48,907

자료: (재)한국종합경제연구원, 항공기상정보의 새로운 원가산정을 위한 분석(2021)

비록,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항공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을 유보한 것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항공기상정보 서비스는 일반 국민이 아닌 국내 및 국제항공사 등 특정 집단에게 혜택이 제공되는 서비스이므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실제 사용자인 항공사로부터 적정 수준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항공기상정보제공에 소요되는 국가재정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기상청은 우리나라의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 대비 회수율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가 징수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항공운항 증가 추세 및 2023년 이후 항공수요 회복 시점을 고려하여 항공업계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용료 인상 시기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위: 백만€, %)

국 가 명	생산비용	사용료 회수액	회수비율
프랑스	71.2	71.2	100.0
독 일	64.5	55.3	85.7
이탈리아	52.7	50.1	95.1
영 국	37.6	37.1	98.7
오스트리아	23.0	23.0	100.0
스페인	27.6	27.6	100.0

주: 주요국가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생산원가 대비 회수 현황은 동 자료가 비교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임

자료: EUROCONTROL, Report on Aeronautical MET Costs(2004)

예산안분석시리즈 II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22년 10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 · 2070 · 3114)
인쇄처	(주)케이에스센세이션 (tel 02 · 761 · 0031)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9-11-6799-097-6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2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60-001506-10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